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

- ▶ 책임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현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안지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발 간 사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수행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생산하여 왔습니다.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6년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계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환경을 모니터링 함에 있어서 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분야의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를 이론적 또는 실용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8차 회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 정부의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통계의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보다 엄밀한 자세로 과학적인 통계자료와 연구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성과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고,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기존의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로 수정하였다. 정기보고서 작성지침의 클러스터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의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으로 삼았으며,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과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의 2권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에서는 새로운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지표의 하위영역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에서는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모니터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주로 중앙부처의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책들이며, 이를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음.
- 이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기존의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른 지표체계로 수정하고,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과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의 2권으로 구성하였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에서는 새로운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지표의 하위영역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음.

2. 연구내용

-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적합성, 타당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체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 제시

-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9,29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실시
- 객관적 지표는 행정통계 결과를 활용하고 주관적 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 및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방안 및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 추진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 새로운 지표체계는 정책적 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으로 삼았음.
- 이 연구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 연구로, 홀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영역 지표,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 영역 지표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음¹⁾. 따라서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구)생존권·보호권 영역의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특별보호조치」의 4개 영역에 관한 66개 지표임.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용모 및 복장 검사, 교사나 동료 및 선후배들에 의한 체벌, 폭력, 모욕이나 욕설 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과 관련하여, 학대 및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요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의 보호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가정 내 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1) 주관적 지표 산출에 자료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는 통계작성 승인 내용에 따라 홀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비율은 20% 미만이었으며, 장애아동·청소년특수학교와 일반학교는 취업률에서 큰 격차를 보임. 장애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문제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통합교육의 의무화가 요구되며, 졸업을 앞둔 장애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장애아동 지원 전담기구 마련이 요구됨. 또한 전체 아동·청소년의 2~3명 중 1명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3~4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 스크리닝 사업의 보급·내실화가 요구됨.
-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초과근무나 최저임금 미보장 등의 경제적 착취로 인하여 근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피해를 입었을 시 보호자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혼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지도 점검 및 성범죄자 엄중 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착취 및 성적 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구호해 줄 수 있는 상담 및 보호체계 강화가 요구됨.

4. 정책제언

- 정책제언에서는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모니터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음. 주로 중앙부처의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책들이며, 이를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는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온라인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지원, △학부모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단의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전담부서 설치가 제시되었음.
-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는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의 수립,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지역거점의 운영, △옴부즈퍼슨 제도의 개선, △아

동·청소년 친화지수의 개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의 연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연계가 제시되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의 방법	7
4.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1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관계성	13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정립	19
3.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의 대상 규정	23
III.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7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의 필요성	29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비판적 검토	30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개발 연구	30
2) 기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문제점	37
3. 새로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47
IV.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55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57
1) 사생활의 보호	57
2) 정보접근권	63
3)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74
4) 소결	98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99
1)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100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14
3) 소결	122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23
1) 장애	123
2) 생존 및 발달	133
3) 보건서비스	153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164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186
6) 약물남용방지 대책	192
7)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206
8) 소결	221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23
5. 특별보호조치	223
1) 소년사법	223
2) 경제적 착취	229
3) 성적착취 및 학대	239
4) 소결	246
V. 정책제언	249
1. 정책과제	251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체계도	257
3. 정책의 우선순위	258
참고문헌	263
부록	273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275

표 목 차

〈표 II-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리	16
〈표 II-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주제 일람	17
〈표 II-3〉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적용 연령 기준	24
〈표 III-1〉 국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	32
〈표 III-2〉 국내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	36
〈표 III-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생존권·보호권)	40
〈표 III-4〉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클러스터 구분과 하위내용	47
〈표 III-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실린 통계자료	49
〈표 III-6〉 새로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52
〈표 IV-1〉 청소년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 및 빈도	59
〈표 IV-2〉 학교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	61
〈표 IV-3〉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 (성인용 잡지, 영화, 인터넷 사이트)	66
〈표 IV-4〉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 (TV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 폭력물)	67
〈표 IV-5〉 최근 1년간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70
〈표 IV-6〉 유해매체 예방교육 효과	71
〈표 IV-7〉 최근 1년간의 체벌 경험 여부 및 빈도	76
〈표 IV-8〉 아동·청소년의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78
〈표 IV-9〉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유무 및 빈도	80
〈표 IV-10〉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83
〈표 IV-11〉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욕설·모욕, 폭행·구타)	85
〈표 IV-12〉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따돌림, 금품갈취, 협박)	86
〈표 IV-13〉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90
〈표 IV-14〉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욕설, 협박, 성희롱)	92

〈표 IV-15〉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 (사생활 유포, 허위사실 유포)	94
〈표 IV-16〉 사이버 상에서 피해 시, 대처방법	96
〈표 IV-17〉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101
〈표 IV-18〉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102
〈표 IV-19〉 소년소녀가정 현황	104
〈표 IV-20〉 국내·외 입양 현황	105
〈표 IV-21〉 가출인 발생 현황	106
〈표 IV-22〉 최근 1년간 가출경험 유무	107
〈표 IV-23〉 가출인 처리 현황	108
〈표 IV-24〉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	109
〈표 IV-25〉 청소년쉼터 시설 수 및 보호청소년현황	111
〈표 IV-26〉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115
〈표 IV-27〉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116
〈표 IV-28〉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118
〈표 IV-28〉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계속)	119
〈표 IV-2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124
〈표 IV-30〉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장현원	125
〈표 IV-31〉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통합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126
〈표 IV-32〉 2010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128
〈표 IV-33〉 2010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129
〈표 IV-34〉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131
〈표 IV-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135
〈표 IV-36〉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136
〈표 IV-37〉 0세의 기대여명	137
〈표 IV-38〉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	138

〈표 IV-3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140
〈표 IV-40〉 자살률 추이	141
〈표 IV-41〉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142
〈표 IV-42〉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144
〈표 IV-43〉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145
〈표 IV-44〉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146
〈표 IV-45〉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147
〈표 IV-46〉 거주지 및 학교주변의 범죄 위협에 대한 안전성 인식률	149
〈표 IV-47〉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55
〈표 IV-48〉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155
〈표 IV-49〉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156
〈표 IV-50〉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아동·청소년)	158
〈표 IV-51〉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	159
〈표 IV-52〉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보호자)	161
〈표 IV-53〉 의료급여 대상자 수	162
〈표 IV-5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165
〈표 IV-55〉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166
〈표 IV-56〉 아동·청소년의 비만도	168
〈표 IV-57〉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률	170
〈표 IV-58〉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학교 체육시간 제외)	172
〈표 IV-59〉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174
〈표 IV-60〉 평일 평균 수면 시간	176
〈표 IV-61〉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78
〈표 IV-6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교급별)	180
〈표 IV-63〉 행복도	182
〈표 IV-64〉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183

〈표 IV-65〉 최근 1년간 성교육 경험 여부	188
〈표 IV-66〉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횟수	188
〈표 IV-67〉 성교육 도움 정도	190
〈표 IV-68〉 현재 흡연을 추이	193
〈표 IV-69〉 현재 음주율 추이	193
〈표 IV-70〉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여부	195
〈표 IV-71〉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여부	197
〈표 IV-72〉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여부	199
〈표 IV-73〉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 여부	201
〈표 IV-74〉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횟수	202
〈표 IV-75〉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도움 정도	204
〈표 IV-76〉 절대빈곤율 변화 추이	207
〈표 IV-77〉 지역별 아동청소년 빈곤율 현황	208
〈표 IV-7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9
〈표 IV-7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10
〈표 IV-80〉 최근 1년간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 여부와 빈도	211
〈표 IV-81〉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교급별)	214
〈표 IV-82〉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교급별)	216
〈표 IV-83〉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	218
〈표 IV-84〉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225
〈표 IV-85〉 소년범죄 처리 현황	226
〈표 IV-86〉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230
〈표 IV-8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231
〈표 IV-88〉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232
〈표 IV-89〉 근로여건 만족도	234
〈표 IV-90〉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35

〈표 IV-91〉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교급별)	237
〈표 IV-92〉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240
〈표 IV-93〉 조건만남 경험	241
〈표 IV-94〉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 유무	242
〈표 IV-95〉 성피해 보호자 인지율 및 경찰 신고율	243
〈표 V-1〉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정책 일람	262

그림 목 차

【그림 IV-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58
【그림 IV-2】 학교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61
【그림 IV-3】 유해매체 이용률	64
【그림 IV-4】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률	68
【그림 IV-5】 청소년 유해매체물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	73
【그림 IV-6】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77
【그림 IV-7】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82
【그림 IV-8】 학교에서의 비행 및 일탈 행동 피해 경험률	84
【그림 IV-9】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89
【그림 IV-1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91
【그림 IV-11】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95
【그림 IV-12】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103
【그림 IV-13】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	108
【그림 IV-14】 가출 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 혹은 기관	110
【그림 IV-15】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113
【그림 IV-16】 방임 경험률	117
【그림 IV-17】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130
【그림 IV-18】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139
【그림 IV-19】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	143
【그림 IV-2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148
【그림 IV-21】 영아 사망률 추이(2005-2010)	154
【그림 IV-22】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아동·청소년)	157
【그림 IV-23】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	159
【그림 IV-24】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보호자)	160
【그림 IV-25】 주관적 건강평가	164
【그림 IV-26】 비만을	167

【그림 IV-27】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률	169
【그림 IV-28】 아침식사 결식률	173
【그림 IV-2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175
【그림 IV-30】 평일 수면시간	176
【그림 IV-31】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	178
【그림 IV-32】 행복하지 않은 이유	182
【그림 IV-33】 행복의 조건	185
【그림 IV-34】 최초의 성교육 시기	187
【그림 IV-35】 성교육 도움 정도	189
【그림 IV-36】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195
【그림 IV-37】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198
【그림 IV-38】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200
【그림 IV-39】 약물남용예방교육 도움 정도	203
【그림 IV-40】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212
【그림 IV-41】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215
【그림 IV-42】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217
【그림 IV-43】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237
【그림 IV-44】 성피해 의논 대상	244
【그림 V-1】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25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²⁾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국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민간보고서를 함께 심사하여 권고의견을 채택한다. 협약 비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 2차 국가보고서(1994년, 1999년)와 NGO보고서(1995년, 2003년)를 각각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의견을 1996년 2월에 10여개,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의견을 2003년 1월에 60여개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최초의 이행보고서에 대한 1996년 2월의 권고문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이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 즉 아동에 대해 한국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진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 고 우려하고 “협약이 다루고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약이행의 진전 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체계를 발전시키도록” 권고하였다. 협약 이행에 관한 2차

2) 현재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중 미국과 소말리아 뿐임.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2003년 1월)에서도 “아동에 관한 통계를 협약의 전 분야에 걸쳐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의 무³⁾를 다하는 것을 돕는 예외적 조치로서, 3·4차 통합보고서를 4차 보고서 제출시한인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2008년 12월에 제출⁴⁾하였고, 2011년 9월 21일에 심의⁵⁾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배경별 데이터가 없어, 제시된 통계가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심의 의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수집체계와 인권지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추진하였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5개 대분류, 20개 관심영역, 56개 세부관심영역, 152개 개별지표의 청소년인권지표 체계를 개발하였고(최창욱 외, 2006),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전체 4개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63개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이종원 외, 2007). 사업 3차년도인 2008년에는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외국(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하는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김영지 외, 2008). 이상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생존권·보호권, 발달권·참여권의 설문도구를 개발⁶⁾하여 실태조사⁷⁾를 실시하였다(모상현·김희진, 2009; 모상현 외,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I)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실시된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선행연구인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

3) 협약 상 보고서 제출시한은 1차 1993년 12월 19일, 2차 1998년 12월 19일, 3차 2003년 12월 19일, 4차 2008년 12월 19일임.
4)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관련 통계수집체계로 아동청소년통계집, 청소년패널조사, 교육통계 One-Stop서비스, 청소년백서 등을 언급하고 있음.
5) 위원회는 1년에 3회기 즉 1월, 5월, 9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데, 한 회기는 3주 동안 열려 9개 나라를 심의함.
6) 초등학교생용, 중·고등학교생용으로 개발
7)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1호)임. 홀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조사,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 조사

고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의 기준이 되는 인권지표체계의 개발과 지표 산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발된 지표체계가 이론적 또는 실용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국제기준 어디를 찾아보아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가지 영역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영역구분과 지표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재검토를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1차년도)에서는 우선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체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흡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현 체계를 개선하여, 3차년도(2013년)에 아동·청소년 인권의 모든 영역의 지표를 통합하여 산출할 것이다. 통합 전 단계인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에는 각각 기존의 생존권·보호권과 발달권·참여권에 해당하는 지표를 새로운 지표체계에 재배치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⁸⁾. 이러한 작업과 지속적인 지표 산출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권리 양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과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의 2권으로 구성된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에서는 새로운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모니터링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정리하였다.

8) 이 연구(1차년도)에서 산출하는 지표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기준으로 (구)생존권·보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구)발달권·참여권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는 2차년도(2012년)에 산출함.

2. 연구의 내용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적합성, 타당성,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⁹⁾ 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체계와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한다.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주관적 인권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¹⁰⁾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객관적 지표와 상호 보완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

객관적 지표는 행정통계 및 국가승인통계 결과를 활용하고, 주관적 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인권지표 결과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과거 지표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4)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인권지표의 결과 및 관련 정책의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정부에 2017년 6월 19일까지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음.

10) 통계작성 승인 내용에 따라 홀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 조사를 실시함.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권고문, 일반논평 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문서 및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인권실태조사와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3회 실시하였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속의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회의를 4회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의의 정책적 의미,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3)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정책 전문가 등 27명을 대상으로 인권지표 및 설문문항의 적합성, 타당성,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의뢰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1년 4월 20일-4월 27일에 이메일에 의해 실시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표 및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4) 설문 조사

2011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8,5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0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모집단을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으로 분류하고 16개 지역으로 집락화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 단위를 학생으로 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11년 6월 1일-7월 4일 기간 중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 및 표본설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와 함께 발간되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연구보고 11-R11-1) 자료집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을 주제로 2011년 5월 25일에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존 인권지표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새로운 지표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안전사고 예방, 기초생활보장, 학교폭력 예방,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약물남용 예방, 비행 및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안 및 다문화, 장애, 빈곤, 요보호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 논의되었다.

6) 연구방법 콜로키움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을 주제로 2011년 4월 14일에 연구방법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주관적 지표 산출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7) 국외출장

2011년 9월 19일 - 10월 7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8차 회기 심의에 참가하였다. 9월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2008년 12월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심의를 참관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심의 관련 내용은 지표의 분석과 해석에 활용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행정통계를 수집하여 객관적 지표를 산출하고, 행정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통계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1차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일부만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 연구로, 홀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영역 지표,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 영역 지표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기존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으나, 연구 설계의 제한으로 지표 산출은 (구)생존권·보호권 영역에 대해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2차년도인 2012년에 (구)발달권·참여권 영역의 지표를 산출하면 3차년도인 2013년부터는 전체 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관적 지표 산출을 위해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인권 취약 계층인 장애 아동·청소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교밖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못하다.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은 해당 지표와 관련된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정책제언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니터링에 국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관계성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정립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상
규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관계성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선상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을 발달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모와 기타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라 함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http://unicef.or.kr/crc>). 아동권리협약의 제1조에는 아동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출생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생애발달 선상에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아동·청소년 들은 부모 및 양육자의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생아기부터 유아기까지는 아동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아직 모든 신체 기관들이 미숙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부모나 기타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신의 신체 기능들을 빠르게 습득하게 되고 감각기관들을 이용하여 주변의 다양한 것들을 탐색해봄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신생아기에서 유아기의 아동 주변의 성인들, 즉 아동의 주 양육자들은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더욱 더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양육, 감독과 지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다.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회적 미소 짓기 등을 통하여 성인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므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 혹은 양육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존재인 것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아동들은 가정과 더불어 학교라는 더 큰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면서 유아기까지 발달된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전에 형성된 신체적 능력을 더욱 더 정교화 시켜 나가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또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폭넓은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아동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새로운 책임감을 수반해야 하는 성인의 행동과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기르며,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해보고자 위험한 행동도 서슴없이 도전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그들의 특성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좀 더 발달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큰 부상을 입거나 흡연, 음주, 약물 복용과 같은 일탈행동을 이끔으로써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Unicef, 2011).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들 또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 균형 잡힌 발달을 하며, 보다 넓게는 성인이 되어 그들의 사회와 공동체 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증진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89년의 유엔총회 이전에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동구호기금세계연맹(The 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 Union)」의 창립자인 애글랜타인 잭(Eglantyne Jebb) 여사가 1922년에 초안을 작성한 「아동권리선언」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가지 기본 권리로 명시하며,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초안은 이후 1924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The Geneva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아동이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을 최초로 인정한 국제적 문서로,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을 천명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5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네바 선언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신체상·정신상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굶주린 아동에게는 음식물을, 병든 아동에게는 치료를, 비행에는 교정을, 그리고 고아와 집 없는 아동에게는 보호와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

3. 아동은 재난 시에 최우선적으로 구조되어야 한다.
4. 아동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아동은 그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자라나야 한다.

이 선언은 1959년 국제연합에서 선포한 「세계아동권리선언」에서 1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생존권의 최저 보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발달권에 대한 보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권리선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무차별 평등의 보장
2. 성장·발달의 권리
3.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장애아의 사회적 필요의 충족권
6.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랄 권리
7. 교육을 받을 권리와 놀 수 있는 권리
8.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9. 학대·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평화롭게 살 권리

이러한 선언들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있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선언은 선언에 그칠 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선언만으로는 국제연합이 각국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 및 보장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제연합은 1989년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각국이 이에 비준하고 협약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국가들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총3부, 총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제1부(제1조~제41조)는 비차별의 원칙(제12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이행 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제1부는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과 4가지 기본 권리를 기초로 하며, 세부적으로 이러한 원칙과 권리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원칙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 및 발달보장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며, 4가지 기본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리

구 분	내 용
기본 원칙	무차별의 원칙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존 및 발달보장의 원칙 생애시기에서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참여의 원칙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본 권리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게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http://unicef.or.kr/crc/crc>) (검색일: 2011. 5. 16)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아동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들은 자국의 협약 이행의 진행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양적, 질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반논평¹¹⁾에서도 광범위하게 드러나 있다.

표 II-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주제 일람

	주 제	연도
제13호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2011
제12호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2009
제11호	Indigenous children and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2009
제10호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2007
제9호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06
제8호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2006
제7호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2005
제6호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2005
제5호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제4호	Adolescent Health	2003
제3호	HIV/AID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제2호	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2002
제1호	The aims of education	2001

일반논평 제5호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동 협약의 정기보고에 관한 보고지침은 동 협약 전 분야에 대한 자세하게 분류된 통계적 및 기타 정보를 요구한다.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설립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수집된 자료가 문제를 확인하며,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개발에 정보를 주도록, 그 자료를 평가하고 이행에 있어 진행정도를 측정하도록

11) 일반논평은 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조약위원회(소위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 해석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음.

사용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료의 평가에는 동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p.78).” 또한, 일반논평 제7호인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에서도 “정책의 형성, 달성된 진전사항의 감독 및 평가, 그리고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모든 측면에 관한 종합적이고, 최신의 다량의 양질의 자료의 중요성을 반복한다. …(중략)…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동 협약에 일치하고 성, 연령, 가족 구조, 도시 및 근교의 거주 및 기타의 관련 범주에 따라 분류한 자료수집의 체제와 지표를 개발하도록 촉구한다. 이 체제에서는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p.150).” 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권리위원회는 체계적인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위원회는 1, 2차 심의 모두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수집체계의 구축과 지표의 개발을 권고하였고, 지난 9월 21일에 개최된 3·4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제시된 통계 자료가 충분치 못함을 여전히 우려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각국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통해 파악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는 단지 현황파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앞으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며,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는 아동·청소년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것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향후 발전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김윤나, 2011).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정립

모상현·김희진(2009)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다양한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통계치”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러한 인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와 변동추세를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수준과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회지표 중의 하나이다(김신영, 2011).

사회지표는 그 목적이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정의내릴 수 있다. Bauer(1966)는 사회지표란 우리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Moore와 Sheldon(1968)은 사회지표를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어떤 규범적 지향에 의하여 전체 사회적 영역의 한 국면이 현재 상태 또는 과거 및 미래의 경향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고 있는 통계청(2010)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지표란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을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 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사회구조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규범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통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지표는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지만, 그 정의 속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사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를 나타낸다. 사회지표는 그 사회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치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복지 수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사회지표는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성을 띤다. 사회지표는 구축된 지표를 통해 다년간의 지속적인 조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비교를 통해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앞으로의 사회경향 및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다. 셋째,

그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 역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변경에 기초를 제공해준다. 넷째, 사회지표는 규범적 지향성을 가진다. 사회지표에 나타난 자료들은 단순한 현상의 기술을 넘어서 규범적 정향성 혹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지표 속의 수치들은 그것의 증감이 사회현상이나 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느냐, 부정적으로 흘러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사회지표의 속성을 담고 있는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여기에는 사회지표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지와 지표 영역별 측정 수준을 만드는 데 있어 객관적 수준만을 측정할 것인지, 주관적 수준의 측정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문제가 포함된다.

먼저, 사회지표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길은배 외, 2001; 김신영,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첫째, 지표는 타당성(validity)이 있어야 한다. 이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같은 의미로, 주어진 통계수치가 사회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수치가 내보이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표가 어떠한 현상들을 나타내고자 하는가를 개념화하고 정의내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정보가 이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표는 질적(quality)이면서도 특수성(specificity)과 민감성(sensitivity)을 가져야 한다. 사회지표는 실제 사용하는 자료가 지표의 내용을 변화시킬 정도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여서는 안 되며, 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현상의 변화만을 반영하여야 할 뿐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변화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변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지표는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을 가져야 한다. 제시된 사회지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해 가능해야 한다. 지표의 이론적인 근거나 기술적인 작업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이용자와 대중들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지표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있어야 한다. 생산된 지표를 통해 집단 간, 시계열적, 국제적 비교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회지표를 생산하는 데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으로 지표의 측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설정된 영역별 사회적 조건의 수준에 있어서 객관적 수준만을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 수준의 측정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사회지표는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 지표라 함은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외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주관적 지표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만족감, 안녕, 행복감 등이 여기에 속한다(조명한·차경호, 1998; Dalkey & Roureke, 1973).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비교해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객관적 지표는 기존의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들며, 정부와 지방단위의 통계 상호 간에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 간의 비교분석이 용이하다. 게다가 대체로 시계열 자료를 구함으로써 사회적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주관적 지표는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자원이 국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원하고 만족스러워 하는지를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경제적 성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등을 다루는 것이며, 이러한 주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에서 나타난 수치들이 각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봄으로써 좀 더 개인에게 필요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회지표 개발은 아동 및 청소년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라는 현상과 그 현상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나타내는 개념에 대한 정의의 산물로, 앞에서 언급한 지표들이 갖는 속성이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문희 외, 2003). 즉,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인권이라는 가치지향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수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열적,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양적 판단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권지표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어왔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 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살펴보면(대한민국정부, 2008),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통계집(인구와 가족, 교육, 노동, 보건, 복지, 교통과 정보화, 문화와

여가·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통계치들로 구성), 청소년패널조사(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참여 등의 생활 실태 조사), 교육통계 One-Stop 서비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소년사법통계자료(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 소년보호통계, 보호관찰통계연보), 아동청소년백서(아동·청소년의 주요정책, 추진실적, 향후 계획 정리), 아동권리지표(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8개 영역 참고,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로 구성), 40개 주요아동지표(Key Indicators)(아동발달 단계별 조기개입, 양육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 아동정책 수립과 각종 아동복지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청소년인권지표(유엔 등의 권고내용과 국내·외 지표 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영역으로 함)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및 자료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자료원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자료를 수집한 목적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수준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개선 사항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인 것이다.

이에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가 가져야 할 기본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배경 요인들을 포함하면서 그들의 인권과 관련된 삶의 특성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인구 구성비, 위생, 사망, 장애, 질병, 건강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과 관계되는 일반 현황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 가족내외의 아동학대 및 방임, 시민의 권리와 자유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황 또한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길은배 외, 2001). 둘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지표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수립, 실행 및 평가를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서문희·안현애, 2003).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의 질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권리의 주체로서, 이들이 현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활용 가능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가용한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환경적 측면은 국가통계시스템 등에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더 신뢰로우면서도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의 대상 규정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지표의 대상을 규정지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정의, 부모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관점, 국가 역할에 관한 관점 등을 기초로 하여 관련법과 정책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권지표의 대상 연령에 대한 문제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2008; 송주미, 200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연령은 출생부터 만 18세 미만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만을 따로 규정한 규약이나 협약은 별도로 없고 청소년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개념에는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청소년’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송주미, 2003). 그러나 현실적 상황에서 볼 때 청소년의 시기를 18세 미만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제화시대에 맞춰 점점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들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성인기로 이행하기까지 학업이나 취업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18세 이후에도 청소년기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일본의 경우 청소년기의 시기를 29세까지로 규정짓는 등 선진국들은 청소년기의 연령 상한선을 24세 내지는 29세까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김승권, 2008; 이광호, 2008). 또한, 유엔총회에서 1985년에 「세계청소년의 해」를 맞아 청소년을 15세-24세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범위를 규정짓는 데 있어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법의 목적 및 정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규정은 제34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는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헌법에는 ‘청소년’ 이란 단어는 있지만, ‘아동’ 이란 단어는 없으므로 헌법상 청소년은 아동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용교, 2008).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이 연령 구분이 법률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4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 II-3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적용 연령 기준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 미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19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18세미만의 장애인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입양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모자보건법	영유아	6세 미만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1. 9. 26)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률에서의 연령 기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아동을 청소년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청소년을 아동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는 산출된 지표를 통해 국가의 인권정책 및 법안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지표의 대상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짓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생애 전반기인 의존의 시기로 아동·청소년기를 인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연령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용교,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표의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을 통합하여 출생부터 24세까지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고, 연령에 따른 인권 수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방안을 구체화·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인권 정책과 법률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의 필요성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비판적 검토
3. 새로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제 3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의 필요성

이 연구의 선행연구인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모상현·김희진, 2009; 모상현 외, 2010)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각 개념의 범주와 경계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권내용이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모상현·김희진(2009)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개 영역으로 나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협약 자체에 4개 영역의 분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고, 협약 비준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에도 이러한 분류의 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모상현 외(2010)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향후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기존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영역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개념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영역에 속해있는 개별지표들이 상호 배타적일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존권과 보호권의 경계, 생존권과 발달권의 경계, 발달권과 보호권의 경계, 발달권과 참여권의 경계 등에 있어서의 모호성 문제는 하위 영역의 개별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존권 영역의 세부관심영역인 빈곤, 건강, 질병, 영양, 안전, 사회보장 등에서 선정된 생존권 지표들은 보호권이나 발달권의 개별 지표 항목들로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율이나 음주율의 개별 지표는 청소년이 흡연이나 음주로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흡연이나 음주의 일탈행위로부터 보호 또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모상현·김희진, 2009).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비판적 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 자국 상황에 맞는 아동인권지표를 개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다. 아동인권지표의 개발은 아동·청소년 상황의 파악과 모니터링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며, 아동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이행 상황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설정된 지표를 통해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산출하여 아동·청소년의 실제 생활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어느 특정 상황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맞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론적인 도구이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분야를 찾아내는 도구이기도 하다(김승권 외, 2007). 이 절에서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지표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개발 연구

(1) 국외의 인권 관련 지표개발 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연구 중 하나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아동보호기구(Child Watch International, CWI)와 캠브리지 대학 가족연구센터에 의해 행해진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이다. 이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인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니카라과, 세네갈,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의 5개 국가에서 아동권리지표 개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단계인 1997년부터 1998년에는 이러한 지표를 각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표개발 및 적용에 대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각국 관계자들에게 훈련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들은 웹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세네갈과 짐바브웨에서 개발된 아동권리지표는 웹에 공개되어 있다.

이 중 짐바브웨 아동권리지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Chinyangara et al., 1997). 짐바브웨 아동권리지표는 CWI가 제시한 아동권리지표 개발 과정에서의 6가지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본원칙은 첫째, 아동 권리에 관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회지표와 아동지표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존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아동기에 대한 관점과 아동 관련 통계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표의 측정과 산출 전에 각 나라의 실정에 따른 개념과 정의에 대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실제로 지표들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넷째,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통계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아동권리지표들은 수집된 자료를 성별, 인종별, 종교별, 지역별 등으로 적절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권리지표는 아동이 측정단위가 되어야 하며, 아동기가 분석 단위가 되는 아동 중심의 자료들이어야 한다. 여섯째, 아동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서 수집되어 제시된 각기 다른 출처를 가진 통계 자료들은 최소한 연령 집단을 맞춰서라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CWI는 1996년에 짐바브웨 아동에 대한 국가 사례 연구를 의뢰하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짐바브웨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짐바브웨의 아동권리지표는 크게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경제적 착취, 보호와 생존, 청소년범죄예방·재활·이행, 교육과 발달, 감시와 기록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을 다시 29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고, 하위 영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초안이 구성되어 있다. CWI의 연구는 1단계 연구인 지표개발 과정에서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과,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 연령집단 구분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이혜연 외, 2009).

이러한 지표개발 연구는 국제단체, 각 국가, 아동관련 단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지표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표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들을 <표 III-1>에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에 관한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애니 E. 케이스 재단(The Annie E. Casey Foundation)과 아동구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 CDF)에서 생산한 아동권리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 전문 비영리단체인 애니 E. 케이스 재단은 취약한 가정과 아동들의 욕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공공 정책과 서비스 혁신, 공동체의 지지를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단체에서는 매년 국가기관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통계자료집(Kids Count Data Book)」을 발간하여 미국 아동들의 상태를 범국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입안자나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웰빙(well-being)이 증진되도록 노력한다. 「아동통계자료집」에 수록된 아동 관련 자료들은 아동 웰빙 프로파일이라는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체중

아동 비율, 영아 사망률, 아동 사망률, 10대 사망률, 10대 출산율,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고등학교 중퇴자의 비율, 학교와 직장에 다니지 않는 10대 비율, 비정규직이거나 직장이 없는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 비율, 아동 빈곤 비율,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 웰빙 프로파일에서 사용된 지표의 선택 기준은 자료의 신뢰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관성, 시계열적 비교가능성이다. 또한 범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미국 전역에서 조사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아동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이어야 한다(The Annie E. Casey Foundation, 2010).

표 III-1 국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

지표명	지표체계 및 부문 내용
짐바브웨 아동권리지표 (1997)	-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경제적 착취, 보호와 생존, 청소년범죄예방·재활·이행, 교육과 발달, 감시와 기록의 6개 영역으로 구성
미국의 아동 웰빙 프로파일 (Annie E. Casey Foundation, 2010)	- 10개 부분 - 저체중 아동 비율, 영아 사망률, 아동 사망률, 10대 사망률, 10대 출산율,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고등학교 중퇴자의 비율, 학교와 직장에 다니지 않는 10대 비율, 비정규직이거나 직장이 없는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 비율, 아동 빈곤 비율,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비율로 구성
미국의 아동지표 2010 (CDF, 2010)	- 9개 부분, 133개 지표 - 아동 인구, 아동 빈곤, 가족 구조, 가족 수입, 아동 건강, 유아기 발달, 교육, 기타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총기 사고로 구성
미국의 아동지표 2011 (CDF, 2011)	- 11개 부분, 142개 지표 - 아동 인구, 아동 빈곤, 가족 구조, 가족 수입, 아동 건강, 아동 기아와 영양, 유아기, 교육, 아동 복지, 소년사법, 총기 사고로 구성
독일의 아동·청소년 권리 지표 (AGJ, 2010)	- 6개 부분, 56개 지표 - 가족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 거주 지역에서의 아동의 권리, 학교 혹은 기관에서의 아동의 권리, 여가 활동에서의 아동의 권리, 발달과 건강, 기타 주제로 구성
아이슬란드의 아동권리지표 (The Children's Alliance, 2011)	- 4개 부분, 19개 지표 - 교육, 건강, 물질적 행복, 아동보호 부분으로 구성
어머니지표 (세이브더칠드런, 2011)	- 2개 부분, 5개 하위 영역, 15개 지표 - 부분은 여성지표(여성의 건강상태, 교육상태,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 아동지표(아동의 안녕감)로 구성

아동구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에서는 매년 「미국의 아동 상황(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Children's Defense

Fund, 2010; Children's Defense Fund, 2011). 이 단체는 미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모든 아동들이 조기에, 공평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안정된 출발선상에서 삶을 시작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투표권이 없고 스스로에 대해 로비를 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국의 모든 아동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학대와 유기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한 양육과 양질의 교육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빈곤층, 소수민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욕구에 주목하면서, 국가에 아동들의 욕구를 알려주고, 그들이 아프거나 학교에서 탈락되거나 가족의 해체로 인한 문제를 갖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투자를 하도록 국가에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미국의 아동들」은 국가의 다양한 통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종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연도별·국가별로 비교함으로써, 각 영역에서 향상된 부분, 퇴보된 부분, 지체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공표된 국가 통계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실린 조사 영역과 지표들이 매년 조금씩 바뀐다. 2010년 보고서는 아동 인구, 아동 빈곤, 가족 구조, 가족 수입, 아동 건강, 유아기 발달, 교육, 기타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총기 사고의 9개 영역, 133개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보고서는 아동 인구, 아동 빈곤, 가족 구조, 가족 수입, 아동 건강, 아동 기아와 영양, 유아기, 교육, 아동 복지, 소년사범, 총기 사고의 11개 영역, 14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독일의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독일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을 설명할 목적으로 2010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다(Child and Youth Welfare Association, 2010). 이 보고서는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담당하는 비정부기관인 아동·청소년 복지 연합(Child and Youth Welfare Association, AGJ)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권리 지표는 설문조사, 전국적인 워크숍과 지역 프로젝트, 과거의 아동 권리 관련 프로젝트 결과 분석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환경인 가족, 학교, 여가 환경 등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지, 침해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두 차례의 전국적인 워크숍과 지역 프로젝트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 아동·청소년 워크숍, 프로젝트의 결과 분석을 근거로 지표체계들이 만들어졌으나, 이 지표체계가 기존의 아동 권리

관련 국가 자료들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설문지, 워크숍과 프로젝트, 과거의 프로젝트 결과들을 요약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권리지표는 6개 영역, 56개 지표이며, 6개의 영역은 가족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 거주 지역에서의 아동의 권리, 학교 혹은 기관에서의 아동의 권리, 여가 활동에서의 아동의 권리, 발달과 건강, 기타 주제이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지표는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킴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아동 권리의 이행과 그들의 삶을 주도하는 전문가로서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비정부조직의 연합인 아동권리연합(The Children's Rights Alliance)의 주도 하에 아동의 권리지표를 생산하고 그 지표를 토대로 매년 리포트 카드(report card)를 산출해내고 있다(The Children's Alliance, 2011). 아동권리연합은 1995년에 설립된 단체로, 아동권리지표조사를 통해 아이슬란드의 법, 정책, 서비스 등을 개선하여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리포트 카드 내의 아동권리지표는 아이슬란드의 「국가 어린이 정책 2000-2001(National Children's Strategy 2000-2001)」, 「2016년을 향해: 사회적 파트너십 협정 10년 계획 2006-2015(Towards 2016: Ten-Year Framework Social Partnership Agreement 2006-2015)」,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 행동 강령 2007-2012(National Action Plan for Social Inclusion 2007-2012)」, 「정부 프로그램 2007-2012 & 정부 프로그램 수정안(Programme for Government 2007-2012 and Renewed Programme for Government)」, 「라이언 보고서 실행 계획 (Ryan Report Implementation Plan)」 등 정부의 주요 기록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2011년까지 3회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교육, 건강, 물질적 행복, 아동 보호의 4개 영역, 19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아이슬란드 내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으로, 매년 지표 조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아동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2011)에서는 다년도의 현장 경험 결과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그들 어머니의 건강, 안전 및 안녕감에 달려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2000년부터 어머니지표 산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첫 해에 문헌 조사 및 세이브더칠드런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크게 여성지표와 아동지표로 나뉜다. 어머니지표에는 어머니의 안녕감과 관련된 핵심 요인들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 교육 상태,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의 총 4개 영역,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지표는 아동의 안녕감(well-being)이라는 1개 영역,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2011년까지 세계 각국의 어머니지표를 조사하여 12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포괄성과 변화성을 중시한다.

(2) 국내의 인권 관련 지표개발 연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들을 정리해 보면, <표 Ⅲ-2>와 같다. 우선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개발된 지표로는 정영순(1997)의 「아동복지지표」와 아동권리학회(2001)의 「한국의 아동지표」, 서문희 외(2003)의 「아동권리지표」가 있다. 「아동복지지표」(정영순, 1997)는 미국 아동복지지표체계에 준거하고 있으나, 기존의 분산된 영역을 한 데 모았다는 점 이외에도 아동의 기본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문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아동지표」(한국아동권리학회, 2001)는 1994년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1996년 2월)에 따라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것이다. 아동권리학회가 1998-2000년에 실시한 아동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개별지표들이 협약의 각 조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부지표마다 협약의 관련 조항을 제시하였다(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아동권리지표」(서문희 외, 2003)는 아동권리협약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1년에 제시한 당사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체계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아동권리지표」의 분야는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의 8개이며, 16개 관심영역, 41개 세부관심영역, 112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 분야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지표」(이종원 외, 1997), 「청소년 복지지표」(이소희 외, 1999), 「청소년 문화복지지표」(이소희·김민정, 2000), 「청소년 인권지표」(길은배 외, 2001) 연구가 실시되었다. 「청소년복지지표」(이소희 외, 1999)는 13-18세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개발한 지표로 인구·가족·지역, 경제적 안정, 부모상황, 보건, 교육, 문화, 정보·통신, 사회복지의 8개 부문, 36개 영역, 207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문화복지지표」(이소희·김민정, 2000) 또한 13-18세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개발한 지표로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후버의 문화권 등을 기초로 5개 부문에 대하여 22개 영역, 46개 세부영역, 186개 개별지표를 구성하였다. 한편, 「청소년 인권지표」(길은배 외, 2001)에서는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아동권리를 염두에 두면서 청소년의 인권 특성이 드러나도록 지표를 개발하였다(서문희 외, 2003).

표 III-2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

지표명	지표체계 및 부문 내용
아동복지지표 (정영순, 1997)	- 6개 부문, 25개 영역, 111개 개별지표 - 부문은 인구·가족·지역, 경제적 상황, 부모 상황, 보건, 교육, 사회복지로 구성
한국의 청소년지표 (이종원 외, 1997)	- 7개 부문, 26개 영역, 104개 개별지표 - 부문은 인구, 가족, 교육, 건강, 문화, 복지, 비행으로 구성
청소년 복지지표 (이소희 외 1999)	- 8개 부문, 36개 영역, 207개 개별지표 - 부문은 인구·가족·지역, 경제적 안정, 부모 상황, 보건, 교육, 문화, 정보·통신, 사회복지
청소년 문화복지지표 (이소희·김민정, 2000)	- 5개 부문, 22개 영역, 46개 세부영역, 186개 개별지표 - 부문은 배경, 여가 및 사회참여, 공연관람 및 예술활동, 정보통신·미디어, 유해환경으로 구성
청소년인권지표 (길은배 외, 2001)	- 8개 분야, 15개 관심영역, 36개 세부관심영역, 142개 개별지표 - 분야는 인구, 건강과 생존, 가족, 교육, 문화와 여가, 사회보장, 시민권과 자유,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인권으로 구성
한국의 아동지표 (아동권리학회, 2001)	- 10개 부문, 277개 개별지표 - 분야를 인구, 생명 및 생존, 보건, 보육, 교육, 가족, 사회성 발달, 사회보장, 경제적 안정,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의 10개 영역으로 구분 - 영역별 3개씩 30개의 대표지표 선정
아동권리지표 (서문희 외, 2003)	- 8개 분야, 16개 관심영역, 41개 세부관심영역, 112개 개별지표 - 분야는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로 구성
청소년 인권지표 (최창욱 외, 2006)	- 5개 대분류, 20개 관심영역, 56개 세부관심영역, 152개 개별지표(정량지표 77개, 정성지표 75개) ¹²⁾ - 대분류는 청소년생존권, 청소년보호권, 청소년발달권, 청소년참여권, 청소년 인권인프라로 구성

자료: 서문희 외(2003) 재구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인권지표」(최창욱 외, 2006)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 2차 국가보고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원을 구축하고자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의 1차년도에 개발되었다. 인권지표의 분류체계와 개별지표를 개발하

12) 정량지표는 행정통계를 활용한 객관적 지표, 정성지표는 실태조사를 통한 주관적 지표를 의미함.

는 데 있어서는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였다. 「청소년 인권지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프라 등의 5개 하위영역, 20개의 관심영역, 56개의 세부관심영역, 총152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개발되었다.

2) 기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은 1991년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으로 1994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심의 결과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수집체계의 구축과 아동지표의 개발을 권고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인권지표를 개발한 것들도 있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통합하여 지표화한 것들도 있다. 여기서는 인권지표 개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한국아동권리학회(2001)의 「한국의 아동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2001)의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지속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들을 개괄하면서 각 연구들에서 개발한 인권지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 발표한 2001년의 「한국의 아동지표」는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아동의 인권지표 체계이다. 이 지표체계는 각종 사회지표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사회지표를 참조하였다. 특히 1994년 11월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휴즈센터(Hughes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된 「아동복지지표(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에 관한 학술회의의 내용을 담은 동명 문헌을 참고하고, 지표 개발 시 포괄성, 타당성, 기존자료의 가용성과 선정과정의 용이성, 질적 안정성, 현실성과 실제성, 이용의 광범위성, 해석의 용이성,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한국의 아동지표」는 아동의 인권을 인구, 생명 및 생존, 보건, 보육, 교육, 가족, 사회성 발달, 사회 보장, 경제적 안정,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의 10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각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277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각 영역에서 3개씩 선별하여 30개의 대표지표를 별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지표는 그동안 한국의 사회지표, 여성사회지표,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의 교육지표 등의 일부 자료로서만 제시되었던 아동 관련 자료를 체계화시킨 최초의 아동 고유 지표체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아동지표라고 명명하였음에도 그 내용적인 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표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높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선별한 지표들이 지표의 포괄성을 중시한 나머지 소수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을 간과함으로써,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삶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지표개발 자체가 아동권리협약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될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아동권리협약에서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를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0개 영역에서 30개의 주요 아동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이 때 각 영역에서 동수의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제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지표에 사용된 항목들이 대다수 객관적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넷째, 기존 지표체계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기존 통계자료들에 의존한 나머지 통계자료들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정보 누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미국 아동복지지표를 답습한 분야 분류로 인하여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 인권지표」(길은배 외, 2001)는 인권조약과 아동권리협약 구성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이행 노력과 인권정책 평가를 위한 척도로 활용하고자 개발되었다.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발의 준거로, 청소년과 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충족성, 청소년 인권지표의 목적 및 기초자료로서의 적합성, 청소년 인권 관련 항목 및 성별, 지역, 계층 간의 균형성, 계량화의 수월성, 내용 및 활용의 다양성, 시계열적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들고 있다. 「청소년 인권지표」는 인구, 건강과 생존, 가족, 교육, 문화와 여가, 사회보장, 시민권과 자유,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의 8개 분야, 15개 관심영역, 36개 세부관심영역, 142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인권조약이나 아동권리협약 구성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시민권과 자유를 독립적인 분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기타의 청소년 인권지표와 차별화되지만, 인권지표 개발보다는 인권지표체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정의가 부족하고,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지표들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객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김신영, 2011). 그리고 청소년 인권을 중심으로 제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항목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예를 들어, 월별 음반구입량이나 월별 청소년관련 잡지 구입량 등), 이는 지표 개발의 충족 요건인 질적 안정성과 상반되는 것으로 항목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지표」(서문희 외, 2003)는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의 8개 분야, 16개 관심영역, 41개 세부관심영역, 112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 개발 시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지표의 기본 요구 조건인 타당성, 객관성, 민감성, 비교성, 정확성, 분해성이 충족되도록 하였다. 이 지표는 아동권리협약에 이론적 근거를 두어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인 자료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아동권리학회(2001)의 「아동권리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통계자료만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기존 통계치들 중 아동 중심의 가족이나 부모 통계, 교육 결과, 여가활동 등은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것들이어서 실태 파악을 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자료원이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특정 시점의 자료로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없고 시계열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년도(2006)에 「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체계이론(system theory)에 근거하여 하위구성영역을 먼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영역에 속하는 지표항목들을 개발하였다. 「청소년 인권지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프라 등의 5개 하위영역, 20개 관심영역, 56개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152개의 개별지표 항목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2007년)와 3차년도(2008년)에는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실태 조사 및 국제적인 인권실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과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 분석’ 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2006년도에 개발된 지표항목 중 공식 행정통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주관적 지표(정성지표) 항목들에 대한 검토와 선별작업을 통해 국제비교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 분석’에서는 2006년도에 개발된 지표 중 ‘국제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는 지표를 선별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인권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8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청소년의 인권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4차년도(2009년)와 5차년도(2010년)에는 각각 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을 둘로 나누어(2009년에는 생존권·보호권, 2010년에는 발달권·참여권)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를 검토·보완하고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도구에 의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에서 개발·수정·보완되어 온 아동·청소년 생존권·보호권의 지표체계는 <표 III-3>과 같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크게 기존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정량지표)와 인권의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 주관적 지표(정성지표)로 나뉘고 연구보고서도 「실태조사」와 「정량지표」의 두 종류로 출간되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지표를 산출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한 것은 기존 연구들이 객관적 지표만으로 인권실태를 파악하였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 지표의 산출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 생각률,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현황,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유형과 인식, 청소년 유해 업소 아르바이트 유형,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유형 및 빈도, 담배·주류 구입 및 유해시설 이용 성공 빈도, 청소년 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소 이용 예방교육과 만족도 등의 지표항목을 제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청소년 인권지표가 가지는 연령의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주관적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 조사 응답자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관적 지표 항목들에 대한 수정 및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생존권·보호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개발 ¹³⁾	조사 ¹⁴⁾	조사 ¹⁵⁾	조사 ¹⁶⁾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1-1-1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	○			
	1-1-2 생명	1-1-2-1 청소년 인공 임신중절을	○			○
		1-1-2-2 청소년 타살률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¹³⁾	2007년 조사 ¹⁴⁾	2008년 조사 ¹⁵⁾	2009년 조사 ¹⁶⁾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1-2 신체적 생존권		1-1-2-3 0세의 기대여명		○		○	
	1-1-3 사망	1-1-3-1 청소년 사망률	○	○		○	
	1-2-1 수명	1-2-1-1 15세 청소년 기대여명	○	○			
	1-2-2 빈곤	1-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	급식비나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1-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	○	○		○
		1-2-2-3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				●
		1-2-2-4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2-3 질병	1-2-3-1	청소년 유병률	○	신체적 질병을 앓은 경험		질병 발병 여부와 종류
		1-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	○		○
		1-2-3-3	청소년 HIV/AIDS 감염률	○	○		
	1-2-4 영양	1-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비율	○	○		
		1-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	지난 1주일간 아침식사를 거른 날	아침식사 결식 빈도와 그 이유(2)	아침식사 여부와 결식 이유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지의 여부		
					패스트푸드로 식사하는 빈도		
		1-2-4-3	학교 급식 만족도				●
	1-2-5 신체 총실도	1-2-5-1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저체중률	○	○		신체질량지수
		1-2-5-2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비만을	○	○		(신체총실도)
		1-2-5-3	신체총실에 대한 자기평가		자신의 비만수준에 대한 평가		●
	1-2-6 건강	1-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	○			
		1-2-6-2	청소년 흡연율	●	지난 1년간 흡연경험/빈도	흡연경험	○
1-2-6-3		청소년 음주율	●	지난 1년간 음주경험/빈도	음주경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¹³⁾	2007년 조사 ¹⁴⁾	2008년 조사 ¹⁵⁾	2009년 조사 ¹⁶⁾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1-2-6-4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
		1-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		●
		1-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	학교공부, 학교친구로 인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도 (가족관계, 친구, 학업, 외모, 빈곤)
		1-2-6-7 수면시간		평일날 하루 평균 수면시간	평일 평균 기상 및 취침시간	기상 및 취침시간 (총 수면시간)
		1-2-6-8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
		1-2-6-9 건강 검진율			건강검진 여부	건강검진 여부
		1-2-6-10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의식			건강에 대한 의식(4)	건강, 음식, 수면, 운동에 대한 의식
		1-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	○			
		1-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	○			
		1-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	○			
1-2-7 치료		1-2-7-4 질병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의 대처 방식		몸이 아플 때 등교 여부, 검진/치료 여부		질병에 대한 본인과 부모님의 대처방식 (치료받지 않는 이유 포함)
		1-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	●	○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
1-2-8 안전		1-2-8-2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범죄피해로 부터 안전정도(2)	범죄피해로 부터 안전정도(2)	
		1-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			●
		1-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	○	○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¹³⁾	2007년 조사 ¹⁴⁾	2008년 조사 ¹⁵⁾	2009년 조사 ¹⁶⁾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1-2-9-2 청소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
		1-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	○			
		1-2-9-4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	○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3-1-1 청소년 자살률	○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청소년 자살 생각여부 및 이유*
	1-3-2 가족	1-3-2-1 소년소녀가정 비율	○	○		
		1-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	○		
		1-3-2-3 가출청소년 비율	○			
		1-3-2-4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비율				○
	1-3-3 사회보장	1-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	○		국민 기초생활수급 자 수혜비율
		1-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			
		1-3-3-3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과 만족도				●
		1-3-3-4 정부의 어려운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
	1-3-4 행복감	1-3-4-1 행복한 정도와 행복한 이유				행복감 정도
1-3-4-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하지 않은 이유	
2-1. 학대 및 착취로 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1-1-1 학교폭력발생률	○			○
		2-1-1-2 체벌경험률	●	지난 1년간 체벌경험(2)	지난 1년간 체벌경험(2)	신체적 체벌경험
		2-1-1-3 신체적 체벌에 대한 인식		체벌에 대한 의견		●
	2-1-2 정서적 학대	2-1-2-1 정서적 체벌경험				●
		2-1-2-2 정서적 체벌에 대한 인식				●
	2-1-3 부모의 방임	2-1-3-1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 유형과 정도				●
	성매매 및 성착취	2-1-4-1 청소년의 성폭행피해발생률	○			○
		2-1-4-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			○
2-1-4-3 미혼부모의 발생률		○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개발 ¹³⁾	조사 ¹⁴⁾	조사 ¹⁵⁾	조사 ¹⁶⁾		
		2-1-4-4 청소년의 성피해 경험 현황				●		
		2-1-4-5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현황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현황*		
		2-1-4-6 성교육 시점과 그 효과				●		
	2-1-5 경제적 착취	2-1-5-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사업취업률	○				○	
		2-1-5-2 평균근로시간	○				○	
		2-1-5-3 성인 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청소년 임금비율	○				○	
		2-1-5-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비율	○				○	
		2-1-5-5 근로여건 만족도	●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2-1-5-6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유형과 인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차별을 당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차별을 당한 경험(6)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유형과 인식*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2-2-1-1 양성평등의식지수	●					
		2-2-1-2 성적 차별경험				●		
	2-2-2 민족차별	2-2-2-1 인종별 취학률	○				○	
		2-2-2-2 혼혈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2-2-2-3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태도		인종차별 경험	
	2-2-3 지역차별	2-2-3-1 지역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2-2-3-2 지역·거주지로 인한 차별경험					●	
	2-2-4 연령차별	2-2-4-1 연령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2-2-4-2 연령으로 인한 차별경험					●	
	2-2-5 고용차별	2-2-5-1 청소년의 직종별 취업 인구	○					
	2-2-6 장애차별	2-2-6-1 장애 청소년의 취학률	○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¹³⁾	2007년 조사 ¹⁴⁾	2008년 조사 ¹⁵⁾	2009년 조사 ¹⁶⁾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2-3. 위기· 응급상황 으로부터 의 보호	2-2-7 기타 유형의 차별	2-2-6-2 장애청소년취업률	○			○		
		2-2-6-3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	●			장애아동·청 소년에 대한 인식도		
		2-2-6-4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		
		2-2-7-1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경험		일상생활 에서의 차별경험(6)	일상생활 에서의 차별경험(4)	●		
		2-2-7-2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차별경험	●					
	2-2-7-3 신체·외모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경험	●						
	2-2-7-4 종교로 인한 차별경험	●						
	2-2-7-5 가정 결손으로 인한 차별경험	●						
	2-3-1 대안적 양육	2-3-1-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	○				○	
		2-3-1-2 대안적 양육시설 운영예산	○					
		2-3-2 범죄로부 터의 보호	2-3-2-1 청소년 범죄율: 유형별/연령별/동기별/교육수준별	○				○
			2-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				
			2-3-2-3 누범률	○	비행/일탈 행동 피해경험(4)	비행/일탈 행동 피해경험(7)		
			2-3-2-4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접수건수 대비 처리율	○				○
			2-3-2-5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2-3-2-6 범죄청소년 1인당 교정예산액	○				
			2-3-2-7 학교에서의 비행 및 일탈 행동 피해 경험과 (대처)		비행/일탈 행동 경험(5)	비행/일탈 행동 경험		●
		2-3-3 가출로부 터의 보호	2-3-3-1 가출청소년 비율	○				○
			2-3-3-2 가출청소년보호시설수	○				○
2-3-3-3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 수용비율			○				○	
2-3-3-4 가출원인과 서비스 시설 이용 유형							●	
				고민/걱정거 리의 유무 및 내용, 상담상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¹³⁾	2007년 조사 ¹⁴⁾	2008년 조사 ¹⁵⁾	2009년 조사 ¹⁶⁾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비행/일탈행 등에 대한 의식 ¹⁵⁾		
					인터넷, 이메일에서의 피해경험 ²⁾		
2-4. 청소년 유해환경 으로 부터의 보호	2-4-1 청소년 유해 시설로부 터의 보호	2-4-1-1 학교주변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 수	○			○	
		2-4-1-2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			○	
		2-4-1-3 청소년 유해업체 아르바이트 유형				●*	
		2-4-1-4 청소년 유해업체 이용유형 및 빈도				●*	
		2-4-1-5 담배, 주류 구입 및 유해시설 이용 성공률				●*	
		2-4-1-6 청소년 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체 예방교육과 효과				●*	
	2-4-2 청소년 유해매체 로부터의 보호	2-4-2-1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실적	○				
		2-4-2-2 청소년의 유해 매체 이용 현황				●	
		2-4-2-3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2-4-2-4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경험 종류·대처				●	
2-5 청소년 사생활침 해로부터 의 보호	2-5-1 교내 인권침해 로부터의 보호	2-5-1-1 학교 내에서 청소년 인권침해 유형과 인식				●*	

1) ○는 객관적 지표, ● 또는 텍스트는 주관적 지표

2) ()안의 수치는 세부문항 수임.

3) * 초등학교용 설문지에서 제외된 개별지표항목

13) 2006년 지표 개발 기준: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

14) 2007년 지표 선정 기준: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

15) 2008년 지표 선정 기준: 국가별 비교조사라는 목적에 따라 2007년도에 개발된 설문조사 도구 재검토, 조사대상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비교가능한 공통지표 및 조사도구 확정,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법·제도적 특성에 따라 문항 보완 및 선별 작업 실시

16) 2009년 지표 선정 기준: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관심영역별 대표항목을 선별·추가, 보호권 관심영역에서 1개, 생존권 세부관심영역 1개, 보호권 세부관심영역에 5개, 생존권 개별지표 13개, 보호권 개별지표 15개 등 총 34개의 새로운 지표항목 추가

3. 새로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은 인과관계의 중첩성, 상호 배타성 미확보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와도 체계가 부합하지 않아 정책적 활용에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지표체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과 UNICEF(2007)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체크리스트,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은 협약의 각 조항을 클러스터별로 분류하고 있는데(〈표 III-4〉), 이러한 방식은 협약이 취하고 있는 아동권리의 전반적인 시점, 즉 아동의 권리영역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아동의 권리는 공평하게 중시되어야 함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체계는 〈표 III-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표체계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이 세부 영역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¹⁷⁾. UNICEF(2007)도 협약은 분리할 수 없고 각 조항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등은 일반원칙으로 기타 모든 조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III-4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클러스터 구분과 하위내용

구 분	하 위 내 용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 당사국의 이행의무(제4조) ○ 협약 홍보(제42조) ○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2. 아동의 정의	○ 국내법령상의 아동의 정의에 관한 최신의 정보(제1조)
3. 일반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제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이름과 국적(제7조)

17) 김영지(201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 전문가 워크숍 토론 자료

구 분	하 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의 유지(제8조) ○ 표현의 자유(제13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 사생활의 보호(제16조) ○ 정보접근권(제17조) ○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1항)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4항) ○ 가정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 입양(제21조) ○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지(제19조 및 제39조) ○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제25조)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제23조) ○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 보건서비스(제24조)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 약물남용방지 대책(제33조)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 생활수준(제27조 1항, 2항, 3항)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의 권리(제28조) ○ 교육의 목표(제29조) ○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8. 특별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분쟁상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아동(제22조) -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 소년사법(제40조) -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2항, 4항) - 사회복지지원(제39조) ○ 착취 상황하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제33조) - 성적착취 및 학대(제34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와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2010) 재구성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른 지표체계는 정책적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근간으로 하되 8개 클러스터(cluster)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등 모든 조항에 적용되어야 하는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한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 영역으로 삼고자 한다.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모상현 외(2010)가 제안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개별지표들을 각각의 텍스트로 보고 이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지표체계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위해 각 클러스터의 하위내용을 담고 있는 각 조항을 해석하여 지표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금까지 제출된 국가보고서의 통계자료도 참고하였다(〈표 III-5〉).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보고서에 담겨 있는 통계자료는 충분하지 않고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표 III-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실린 통계자료

구 분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 아동관련 예산
2. 아동의 정의	- 아동인구	- 아동인구	- 아동인구
3. 일반 원칙		- 연령대별 사망원인 분포: 1997	-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 징계절차 -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 학교폭력 유형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 아동 익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체벌금지 학교 수 -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증가율 -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구 분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1993년,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 1958-1993년 입양 추이 - 국외 입양 현황과 분포, 1993 - 아동 복지 시설 현황, 1993 - 연도별 영·유아 보호 시설수 및 육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1990-1998 - 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 추이: 1958-1998 - 1998년도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 아동복지시설 현황 - 연도별 영·유아 보호시설 및 아동현황: 1975-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결과 -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 현황 - 국내·외 입양 현황 - 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6. 기초보전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예방접종률(1989) - 전국 재가장애 아동의 연령별·성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 - 시설별 보육 현황 -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예방접종률: 1994 - 교통사고 사망자: 1990-1998 - 2주간 유병률 및 외래이용률: 1995 - 장애아의 연령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 - 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아동 수: 1997 - 시설별 보육현황: 1990-1997 - 결연사업 실적: 1998 -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1985-1998 - 사회개발 및 사회보장 예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 다문화 아동 현황 - 특수학교 학생 통학 현황 - 영아사망률 - 모성사망률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출생아 산전수진율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중 산전 수진 횟수 - 저체중아 발생률 - BCG신생아 예방접종 실적 - 예방 접종률 -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생의 현황(1993) - 사립학교 현황(1993) - 교육 예산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황: 1998 -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1995-1998 - 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1인당 공공교육비 - 남·녀 고등교육 진학 비율 - 학교 현황 - 학급당 학생수

구 분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1988-1996 - 학교급별 진학률 - 만5세아 유치원 취원율: 1981-1999 - 특수학교 개황: 1995-1999 - 특수교육현황: 1999 - 사립학교 현황 -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1998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기관 진학추이: 1995-1997 - 교육예산의 규모 -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990-1997 - 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현황: 1992-1996 - 아동도서관 및 소도서관 현황: 1991-1997 - 전국 문화공간 현황: 1997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교급별 진학률 -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 중·고등학생 학업중단률 - 특수학교 현황 -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 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문화기반시설 수 -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 시간
8. 특별 보호 조치	- 청소년 범죄 구성비	- 총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 1993-1997	-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률 - 소년범죄 처리 현황 - 마약류사법 연령별 현황 - 환각물질 흡입사법 연령별 현황 -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른 영역, 하위영역과 개별지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연구의 제한점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홀수년도(생존권·보호권)와 짝수년도(발달권·참여권)¹⁸⁾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1차년도) 연구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의 상당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다. 1차년도에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개별지표의 재배치 및 지표 산출을 수행할 것이다.

표 III-6 새로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영역	하위영역	지표
시민적 권리와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과 국적(제7조) ○ 신분의 유지(제8조) ○ 표현의 자유(제13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차년도(2012년) 산출
	○ 사생활의 보호(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정보접근권(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매체 이용률 -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 경험률 -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 -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2차년도(2012년) 산출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18)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전 영역을 통합할 예정이다.

영 표	하 위 영 역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4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정 현황 - 국내·외 입양 현황 - 가출청소년 비율 -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 방임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제25조)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 장애 청소년 취업률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임신중절률 - 15-19세 출산율 - 0세의 기대여명 - 사고 사망률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자살률 -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 - 범죄 피해건수 -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2차년도 (2012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서비스(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사망률 - 아동·청소년 사망률 - 건강검진율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 의료급여 대상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평가 -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영 표	하 위 영 역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율 - 운동실천율 - 아침식사 결식률 - 수면시간 - 스트레스 인지율 - 행복도 	
	○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 성교육 경험률	
	○ 약물남용방지 대책(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율 - 음주율 -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 -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 -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 -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차년도 (2012년) 보완
○ 생활수준(제27조 1항, 2항,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의 권리(제28조) ○ 교육의 목표(제29조) ○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2차년도(2012년) 산출	
특별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분쟁상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아동(제22조) -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 소년사법(제40조) -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2항, 4항) - 사회복지지원(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2차년도 (2012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취 상황하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근로 시간 -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 - 근로여건 만족도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착취 및 학대(제34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 - 성매매 경험률 - 성피해 경험률 	

제 4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특별 보호 조치

제 4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하위내용은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유지(제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보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1항)이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지표체계에서 생존권·보호권 영역에 속해 있었던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일부 지표만을 다루고, 그 외의 하위내용에 대해서는 2차년도(2012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1) 사생활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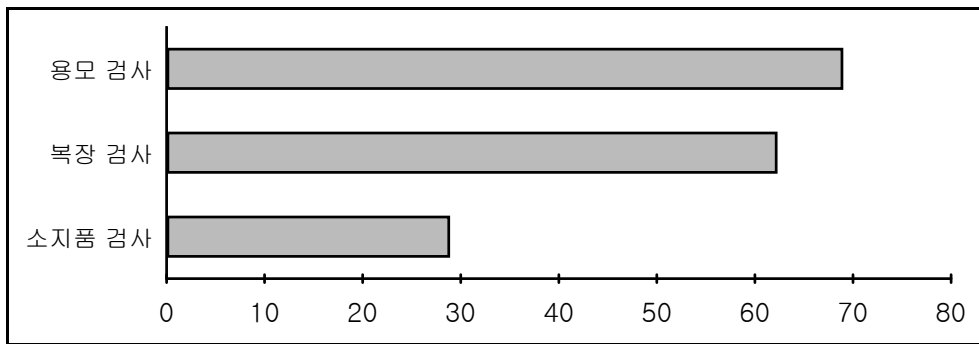
(1) 지표의 의미

사생활의 보호에 대해서는 협약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에서는 아동이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한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것과 명예 및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이들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사생활의 보호 관련 통계는 제시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과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을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학교에서의 용모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그림 IV-1] 과 같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용모 검사는 69.0%, 복장 검사는 62.3%, 소지품 검사는 28.9%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및 통제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모와 복장에 대한 검사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IV-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이러한 청소년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의 경험 유무와 빈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검사의 경험 빈도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은 용모 검사와 복장 검사의 경우 한 달에 1-2회 정도 실시한다는 응답을 각각 26.1%와 21.7%로 가장 많이 하였으며, 소지품 검사의 경우 일 년에 1-2회 정도 실시한다는 응답(19.2%)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를 다시, 학생들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 수준의 경험 유무와 경험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용모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의 경험 유무와 빈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5.238, p<.001, \chi^2=451.218, p<.001, \chi^2=24.202, p<.001$). 용모 검사와 복장 검사의 경우, 여학생의 71.7%와 76.8%가 각각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66.8%, 50.3%가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용모 및 복장에 대한 검사 및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빈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용모검사와 복장검사를 한 달에 1-2회 받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여학생은 일 년에 1-2회 받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학교 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용모 및 복장검사를 더 많이 경험하긴 하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남학생의 29.6%와 여학생의 27.8%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일 년에 1-2회의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표 IV-1 청소년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 및 빈도

(단위: %, 명)

구 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용모 검사	성 별	남	33.2	22.6	28.3	5.0	100(3246)	65.238***	
		여	28.3	27.2	23.5	8.2	100(2665)		
		전체	31.0	24.7	26.1	6.4	100(5911)		
	교 급	중	41.8	22.8	20.4	5.2	9.7	100(3088)	386.915***
		일반계고	18.2	26.8	33.3	7.1	14.6	100(2146)	
		전문계고	22.2	26.9	29.3	9.8	11.8	100 (676)	
		전체	31.0	24.7	26.1	6.4	11.7	100(5910)	
복장 검사	성 별	남	49.7	15.7	19.0	4.9	10.8	100(3248)	451.218***
		여	23.2	26.7	25.1	8.8	16.2	100(2664)	
		전체	37.7	20.7	21.7	6.6	13.2	100(5912)	
	교 급	중	45.2	19.2	18.6	6.4	10.6	100(3087)	190.960***
		일반계고	27.1	23.2	26.3	7.3	16.1	100(2149)	
		전문계고	37.7	19.2	21.3	5.8	16.0	100 (676)	
		전체	37.7	20.7	21.7	6.6	13.2	100(5912)	
소지품 검사	성 별	남	70.4	18.7	7.0	1.5	2.4	100(3248)	24.202***
		여	72.2	19.7	6.3	0.9	0.9	100(2663)	
		전체	71.2	19.2	6.7	1.2	1.7	100(5911)	
	교 급	중	76.5	16.6	4.5	1.0	1.3	100(3086)	159.366***
		일반계고	68.0	21.7	7.3	1.0	2.0	100(2147)	
		전문계고	57.6	22.7	14.4	2.8	2.5	100 (675)	
		전체	71.3	19.1	6.7	1.2	1.7	100(5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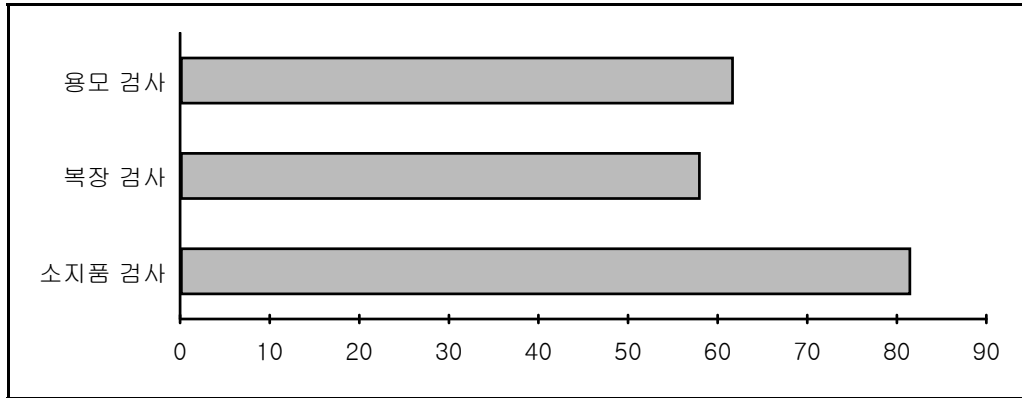
* α 0.05, ** α 0.01, *** α 0.001

교급에 따른 용모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의 경험 유무와 빈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86.915, p<.001, \chi^2=190.960, p<.001, \chi^2=159.366, p<.001$). 용모 검사와 복장 검사의 경우, 각각 중학생의 58.2%와 54.8%가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81.8%와 72.9%, 전문계 고등학생의 77.8%와 62.3%가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용모와 복장에 대한 검사 및 통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들보다 용모 및 복장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사의 빈도에서도 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한 달에 1-2회 정도 검사를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일 년에 1-2회 정도 검사를 받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는 학교 내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더 자주 용모 및 복장 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중학생의 23.5%, 일반계 고등학생의 32.0%, 전문계 고등학생의 42.4%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검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모 및 복장 검사와 마찬가지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소지품에 대한 검사 및 통제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소지품 검사의 빈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상관없이 일 년에 1-2회를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청소년들의 용모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의 경험 유무와 빈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용모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의 경험 유무와 빈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4.372, p<.001, \chi^2=40.618, p<.001, \chi^2=32.846, p<.001$). 용모 검사와 소지품 검사의 경우,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읍·면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았고, 복장 검사의 경우 대도시나 읍·면지역의 청소년들이 중소도시의 청소년들보다 검사 경험이 더 많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용모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의 경험 유무와 빈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27.403, p<.01, \chi^2=28.656, p<.001, \chi^2=34.932, p<.001$), 가정의 경제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중이나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들보다 검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모 및 복장, 소지품 검사가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2] 와 같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용모 검사는 61.8%, 복장 검사는 58.1%, 소지품 검사는 81.6%가 인권침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개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을 가장 인권침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학교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표 IV-2 학교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

(단위: %, 명)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용모 검사	성별	남	18.0	21.3	30.8	30.0	100(3247)	169.548***
		여	8.7	28.3	39.2	23.8	100(2665)	
		전체	13.8	24.4	34.6	27.2	100(5912)	
	교급	중	17.9	23.7	33.2	25.2	100(3088)	91.935***
		일반계고	9.1	25.4	36.2	29.3	100(2149)	
		전문계고	10.2	24.6	35.7	29.6	100 (676)	
전체		13.8	24.4	34.6	27.2	100(5913)		
복장 검사	성별	남	18.9	24.0	27.9	29.1	100(3246)	178.736***
		여	9.6	31.0	37.2	22.3	100(2664)	
		전체	14.7	27.2	32.1	26.0	100(5910)	
	교급	중	19.1	25.8	30.3	24.8	100(3086)	102.212***
		일반계고	9.7	28.5	33.8	28.0	100(2148)	
		전문계고	10.5	29.3	34.8	25.4	100 (676)	
전체		14.7	27.2	32.1	26.0	100(5910)		
소지품 검사	성별	남	12.8	11.3	28.7	47.1	100(3246)	176.634***
		여	4.4	6.9	31.9	56.8	100(2662)	
		전체	9.1	9.3	30.1	51.5	100(5908)	
	교급	중	12.0	10.1	31.2	46.7	100(3085)	106.137***
		일반계고	5.2	8.1	28.7	58.0	100(2147)	
		전문계고	8.0	9.5	30.0	52.5	100 (676)	
전체		9.1	9.3	30.1	51.5	100(5908)		

* $p < 0.05$, ** $p < 0.01$, *** $p < 0.001$

학교에서의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를 인권침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성별, 교급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169.548, p<.001, \chi^2=178.736, p<.001, \chi^2=176.634, p<.001$),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내에서의 검사 및 통제를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교급별로도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91.935, p<.001, \chi^2=102.212, p<.001, \chi^2=106.137, p<.001$),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를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3) 관련 정책 및 대안

학교 내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은 소위 ‘학생인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진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학생’이라는 어떠한 역할로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이양희, 2011), 그 속에는 학생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규율이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의 규율과 규칙은 학교 내의 질서 유지 내지는 수업 분위기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 문제,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느냐가 교육 활동 영역 내외에서 자주 쟁점이 되곤 한다(표시열, 2008).

그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¹⁹⁾을 통해,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2008. 3. 21),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각 학교에서 강제이발 금지, 과도한 복장검사 지양, 모든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도한 소지품 검사를 지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빈번하게 행하고 있다. 최근의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 등을 조사한 자료에서도(국가인권위원회, 2011),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의 사생활 침해 항목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19) 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487&page=2

2008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며,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 소지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검사와 통제가 아닌,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여 당시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의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 정보접근권

(1) 지표의 의미

정보접근권은 협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다양한 국내외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아동이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심신의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대중매체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협약 제29조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일반토론의 주제로 ‘아동과 매체(The child and the media)’²⁰⁾에 대해서 논의하고, 매체교육, 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행동계획, 아동 학대 보도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권고를 채택했다.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는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증가율’ 과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가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 과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등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지표만을 산출하였다. 발달·참여와 관련된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증가율’ 과 같은 긍정적 지표들은 2차년도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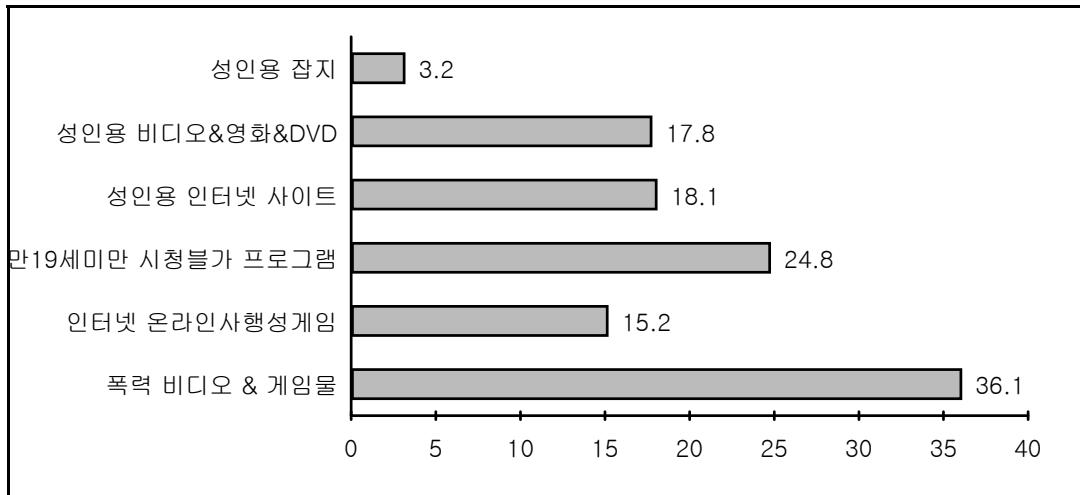
20)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child_and_media.pdf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유해매체 이용률

아동·청소년이 성인용 잡지, 성인용 비디오·영화·DVD,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 19세 미만 시청 불가 방송 프로그램(일반 TV 방송과 케이블 방송 모두 포함), 인터넷 온라인 사행성(도박) 게임(고스톱, 포커, 경마, 복권), 폭력 비디오나 폭력 게임물 등의 유해매체를 최근 1년간 이용한 비율은 [그림 IV-3] 과 같다.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해매체는 폭력 비디오나 폭력 게임물로 전체의 36.1%가 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 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 등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 경험 및 빈도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 IV-3>과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접촉 경험 및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성인용 잡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chi^2=92.848, p<.001, \chi^2=635.950, p<.001, \chi^2=978.751, p<.001, \chi^2=259.154, p<.001, \chi^2=204.593, p<.001, \chi^2=1657.627, p<.001$). 특이한 사항은 만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과 인터넷 온라인 사행성 게임, 폭력 비디오·게임물의 경우는 여학생들도 10% 내외의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폭력 비디오·게임물의 경험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남학생 2명 중 1명은 폭력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유해매체 이용률(%)

또한, 유해매체를 접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일 년에 1-2회 정도 본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 접속의 경우는 남학생은 한 달에 1-2회, 여학생은 일 년에 1-2회 본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교급별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 경험 및 빈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인용 매체에 대한 접촉 경험 및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9.366, p<.001, \chi^2=918.402, p<.001, \chi^2=1042.708, p<.001, \chi^2=984.921, p<.001, \chi^2=434.530, p<.001, \chi^2=523.902, p<.001$). 특히, 성인용 비디오·영화·DVD,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온라인 사행성 게임 접촉 경험의 경우, 초등학생은 5% 내외인데 반해, 중학생은 10% 후반이나 20% 초반, 고등학생은 30% 초·중반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교급에 따라 급격하게 접촉 경험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만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과 폭력 비디오·게임물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접촉 빈도가 각각 11.1%, 22.9%, 고등학생의 경우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이 어린 시기부터 무방비적으로 폭력물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해매체 접촉 빈도에서는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와 폭력 비디오·게임물에서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월 1-2회 접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교급에서 연 1-2회 정도 접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 경험 및 빈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96.789, p<.001, \chi^2=184.353, p<.001, \chi^2=149.775, p<.001, \chi^2=193.449, p<.001, \chi^2=132.019, p<.001, \chi^2=87.171, p<.001$). 즉,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하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이 유해매체의 접촉 경험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성인용 비디오·영화·DVD,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경우, 접촉 경험 빈도가 상위층이 10% 내외, 중위층이 10% 후반, 하위층이 20% 후반에서 30% 초반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접촉 경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 비디오·게임물의 경우도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접촉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층은 29.4%, 중위층은 37.4%, 하위층은 44.6%가 이러한 폭력물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폭력물에 대한 노출은 모든 계층에서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IV-3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성인용 잡지, 영화, 인터넷 사이트)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성인용 잡지	성별	남	95.3	2.6	0.9	0.4	100(5016)	92.848***
		여	98.6	1.1	0.2	0	100(4277)	
		전체	96.8	1.9	0.6	0.2	100(9293)	
	교급	초	97.8	1.8	0.4	0	100(3381)	49.366***
		중	96.7	1.8	0.8	0.2	100(3088)	
		일반계고	96.0	2.1	0.7	0.3	100(2148)	
		전문계고	94.9	2.7	0.8	0.6	100 (676)	
	전체	전체	96.8	1.9	0.6	0.2	100(9293)	96.789***
		상	96.8	2.2	0.3	0.1	100(1947)	
		중	97.1	1.9	0.6	0.1	100(6831)	
		하	92.5	1.7	1.6	1.2	100 (447)	
	전체	전체	96.8	1.9	0.6	0.2	100(9225)	96.789***
남		73.9	9.6	8.7	4.4	100(5013)	635.950***	
여		91.9	6.2	1.3	0.3	100(4277)		
성인용 비디오 & 영화 & DVD	성별	전체	82.2	8.0	5.3	2.6		100(9290)
		초	94.2	4.0	1.2	0.1	100(3381)	
		중	83.9	7.0	5.1	1.9	100(3085)	
	교급	일반계고	64.8	13.7	11.1	6.5	100(2147)	184.353***
		전문계고	69.7	15.1	8.0	4.9	100 (676)	
		전체	82.2	8.0	5.3	2.6	100(9290)	
경제 수준	상	87.7	5.3	3.1	1.8	100(1944)	184.353***	
	중	81.9	8.4	5.7	2.6	100(6831)		
	하	65.1	13.6	8.9	5.0	100 (446)		
	전체	82.3	8.0	5.3	2.5	100(9221)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	성별	남	70.6	9.8	10.6	5.7	100(5010)	978.751***
		여	95.1	3.4	0.9	0.3	100(4275)	
		전체	81.9	6.9	6.1	3.2	100(9285)	
	교급	초	97.6	1.5	0.4	0.2	100(3377)	1042.708***
		중	78.1	8.9	6.5	4.0	100(3086)	
		일반계고	67.1	10.3	13.0	6.3	100(2147)	
		전문계고	67.8	13.1	10.9	4.7	100 (675)	
		전체	81.9	6.9	6.1	3.2	100(9285)	
	경제 수준	상	88.4	4.0	3.5	2.1	100(1945)	149.775***
		중	80.9	7.4	6.7	3.4	100(6825)	
		하	67.5	12.6	9.6	4.8	100 (447)	
		전체	81.8	6.9	6.1	3.2	100(9216)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I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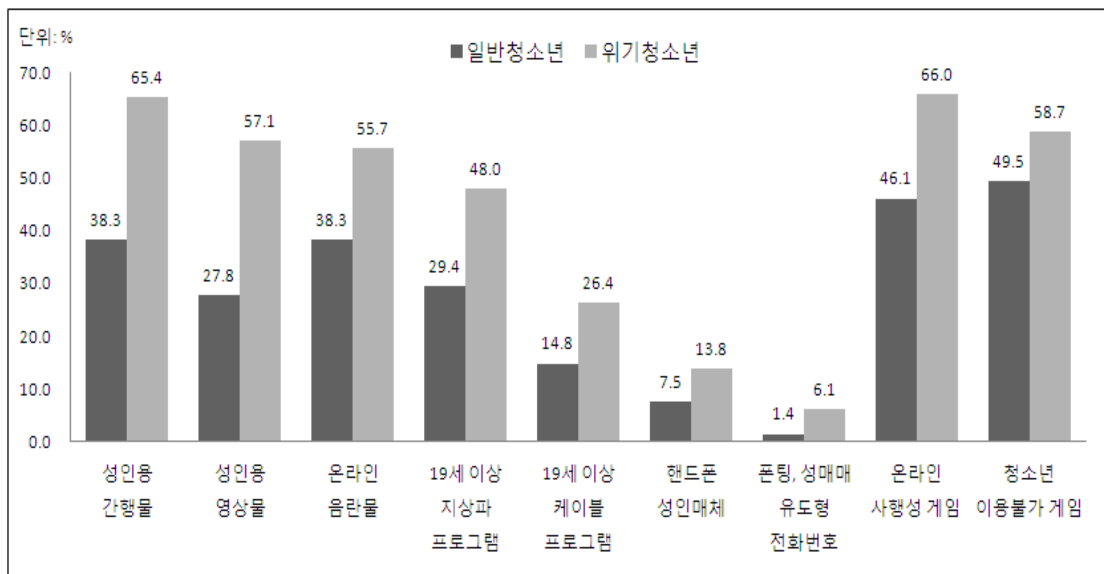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TV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 폭력물)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만 19세 미만 시청 불가 프로그램	성별	남	69.7	13.0	9.7	4.4	3.3	100(5007)	259.154***
		여	81.7	11.5	4.1	1.5	1.2	100(4271)	
		전체	75.2	12.3	7.1	3.0	2.4	100(9278)	
	교급	초	88.9	5.0	2.3	1.7	2.1	100(3380)	984.921***
		중	78.1	11.8	5.9	2.3	1.9	100(3082)	
		일반계고	55.9	22.0	13.7	5.4	3.0	100(2142)	
		전문계고	54.8	20.6	15.3	5.9	3.4	100 (674)	
	경제 수준	전체	75.2	12.3	7.1	3.0	2.4	100(9278)	193.449***
		상	83.0	6.8	4.0	2.9	3.2	100(1945)	
		중	74.1	13.6	7.6	2.8	1.9	100(6819)	
		하	58.5	17.2	12.4	6.5	5.5	100 (446)	
	인터넷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별	남	80.1	9.5	5.8	2.0	2.6	100(5010)
여			90.2	6.2	2.1	0.7	0.7	100(4276)	
전체			84.8	8.0	4.1	1.4	1.7	100(9286)	
교급		초	93.9	3.6	1.2	0.6	0.7	100(3378)	434.530***
		중	82.4	9.3	4.7	1.4	2.2	100(3086)	
		일반계고	78.6	11.1	5.9	2.1	2.3	100(2146)	
		전문계고	69.5	14.3	10.2	3.4	2.7	100 (675)	
경제 수준		전체	84.8	8.0	4.1	1.4	1.7	100(9286)	132.019***
		상	90.4	4.5	2.2	0.8	2.2	100(1946)	
		중	83.9	8.7	4.5	1.5	1.4	100(6825)	
		하	73.0	12.6	6.3	3.4	4.6	100 (447)	
폭력 비디오 & 폭력 게임물		성별	남	46.1	14.9	13.7	11.4	13.8	100(5002)
	여		84.8	8.7	4.2	1.3	1.1	100(4275)	
	전체		63.9	12.1	9.3	6.8	8.0	100(9277)	
	교급	초	77.1	10.1	4.4	4.2	4.2	100(3376)	523.902***
		중	58.2	12.3	10.1	7.9	11.4	100(3082)	
		일반계고	56.2	14.2	13.3	8.9	7.3	100(2143)	
		전문계고	48.7	13.6	17.1	7.7	12.9	100 (676)	
	경제 수준	전체	63.9	12.1	9.3	6.8	8.0	100(9277)	87.171***
		상	70.6	9.3	6.4	6.5	7.2	100(1943)	
		중	62.6	13.0	9.7	6.8	8.0	100(6820)	
		하	55.4	9.8	15.5	7.7	11.6	100 (446)	
	전체	63.9	12.1	9.3	6.8	8.0	100(9209)		

* α 0.05, ** α 0.01, *** α 0.001

위에서 일반 아동·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매체의 경우, 성별이나 교급,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는 위기 청소년일 경우에 더욱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0)에서 1999년부터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²¹⁾의 2010년도 자료를 보면, 모든 유해매체의 이용 경험률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적게는 4.7%p에서 많게는 29.3%p까지 나타나 위기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률 (%)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주: 1) 일반 청소년이란,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말함.

2) 위기 청소년이란, 특수 시설(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보호된 청소년을 말함.

21) 2010년도에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는 전국 중학교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총 18,544명(일반청소년 16,572명, 위기청소년 1,972명)을 대상으로 조사됨. 이 중 일반청소년은, 제공근비례할당추출 방식을 이용하여 표본 추출된 중학생 8,324명, 인문계 고등학생 6,183명, 실업계 고등학생 2,065명이며, 위기청소년은 비행청소년(전국 소년원 중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8개 소년원에 수용 중인 청소년) 958명, 가출청소년(전국 78개 청소년 쉼터에 수용 중인 청소년) 363명, 학교부적응 청소년(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상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651명임. 조사방법은 일반 청소년의 경우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은 면접 조사를 실시함.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 간에 주로 이용하는 유해매체의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49.5%, 온라인 사행성 게임 46.1%, 성인 간행물 38.3%, 온라인 음란물 38.3%, 19세 이상 지상파 프로그램 29.4%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데 반해,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온라인 사행성 게임 66.0%, 성인용 간행물 65.4%,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58.7%, 성인용 영상물 57.1%, 온라인 음란물 55.7%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특히, 위기 청소년들에게서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간행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성인용 영상물, 온라인 음란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위기 청소년들의 2명 중 1명 이상이 유해매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아동·청소년이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아동·청소년 중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43.6%에 해당하였으며, 성별, 교급, 지역규모,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0.921$, $p<.001$, $\chi^2=406.357$, $p<.001$, $\chi^2=12.181$, $p<.01$, $\chi^2=14.028$, $p<.01$).

성별에 따른 유해매체의 예방 교육 경험에서 여학생의 46.1%, 남학생의 41.4%가 최근 1년간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예방교육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급에 따른 예방 교육 경험에서는 초등학생의 54.6%, 중학생의 44.5%, 일반계 고등학생의 27.7%, 전문계 고등학생의 34.8%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예방교육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도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보다 예방 교육 경험이 더 적었다. 이러한 교육 경험의 차이는 예방교육을 받은 횟수에서도 나타났다($\chi^2=38.728$, $p<.001$). 교급에 상관없이 최근 1년간 1-2회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긴 하였지만, 중학교 이상의 경우 교육받은 횟수가 1-2회인 경우가 80% 내외인데 반해,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 횟수가 1-2회 72.7%, 3-4회 15.6%, 5회 이상이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유해매체에 대한 예방 교육을 더 많이, 더 자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IV-5 최근 1년간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N)	χ^2
성별	남	41.4	58.6	100(4990)	20.921***
	여	46.1	53.9	100(4267)	
	전체	43.6	56.4	100(9257)	
교급	초	54.6	45.4	100(3366)	406.357***
	중	44.5	55.5	100(3077)	
	일반계고	27.7	72.3	100(2146)	
	전문계고	34.8	65.2	100 (668)	
	전체	43.6	56.4	100(9257)	
지역 규모	대도시	45.6	54.4	100(3917)	12.181**
	중소도시	42.5	57.5	100(4115)	
	읍/면	40.8	59.2	100(1226)	
	전체	43.6	56.4	100(9257)	
경제 수준	상	47.3	52.7	100(1937)	14.028**
	중	42.8	57.2	100(6808)	
	하	40.6	59.4	100 (444)	
	전체	43.7	56.3	100(9190)	

* $p < 0.05$, ** $p < 0.01$, *** $p < 0.001$

지역규모에 따른 최근 1년간 유해매체의 예방 교육 경험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45.6%,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42.5%,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40.8%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지역규모가 큰 곳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유해매체 예방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경험의 차이는 최근 1년간 예방교육을 받은 횟수에서도 나타났다($\chi^2=21.326$, $p < .001$). 즉, 지역규모가 큰 곳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유해매체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 유해매체의 예방 교육 경험에서,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47.3%, 중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42.8%, 하라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의 40.6%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유해매체에 대한 예방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유해매체에 대한 예방교육 경험의 횟수에서는 약 70% 중후반이 1-2회 받았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해매체에 대한 예방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102.167$, $p<.001$), 여학생의 71.6%가 유해매체에 대한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62.2%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 유해매체 예방교육 효과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N)	χ^2
성별	남	15.2	22.5	38.3	23.9	100(1990)	102.167***
	여	5.8	22.6	47.5	24.1	100(1915)	
	전체	10.6	22.6	42.8	24.0	100(3905)	
교급	초	4.6	10.7	43.0	41.7	100(1781)	808.105***
	중	12.9	29.1	46.8	11.2	100(1330)	
	일반계고	21.7	37.8	34.6	5.9	100 (564)	
	전문계고	16.4	39.2	38.8	5.6	100 (230)	
	전체	10.6	22.6	42.8	24.0	100(3905)	
경제수준	상	5.7	16.6	39.5	38.2	100 (881)	202.295***
	중	11.2	23.7	44.7	20.4	100(2824)	
	하	25.5	35.0	29.4	10.1	100 (180)	
	전체	10.6	22.6	42.8	24.0	100(3884)	

* $p<0.05$, ** $p<0.01$, *** $p<0.001$

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유해매체의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808.105$, $p<.001$, $\chi^2=202.295$, $p<.001$), 먼저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의 84.7%, 중학생

의 58.0%, 일반계 고등학생의 40.5%, 전문계 고등학생의 44.4%가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규모에 따라서는 상인 집단의 77.7%, 중인 집단의 65.1%, 하인 집단의 39.5%가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유해매체의 예방교육 효과가 낮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 정책 및 대안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²²⁾ 이러한 매체물을 지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을 무분별하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혹은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체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 형성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인터넷 모니터링 제도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IV-5] 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순서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정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에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보호 연령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법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 영화, 비디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매체물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게임, 영화 및 비디오물, 음악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서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정책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김민선, 2011). 그 예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충돌로 인하여 청소년 게임 이용 시 친권자 동의 의무화, 심야시간의 청소년 이용제한, 온라인

22)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4_05.jsp

게임의 중독 경고문구 표시, 폭력적인 게임 환경에 대한 게임 차단 등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각각의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관과 심의 기준이 달라 유해매체물의 유해정도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고, 기준 자체도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김민선, 2011).



[그림 IV-5] 청소년 유해매체물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

* 출처: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4_03.jsp) (자료검색일:2011. 10. 25)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민선(2011)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안의 연령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보다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제 및 등급 분류 법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청소년매체법 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규제를 분리하여 청소년 건강 매체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심의기관을 통합하거나 통합된 심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들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대중들도 유해매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게임 콘텐츠의 규제 및 예방 교육, 치료, 중독 경고문구 삽입, 친권자 동의 절차 가시화, 연령 확인 절차 등 통합적인 게임이용환경 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만듦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유해매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지표의 의미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는 협약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자유박탈에 관한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의 절차적 권리와 취급, 그 환경에 관한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는 소년사법 뿐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교육과도 관련된다. 이 조항은 고문, 사형, 종신�형²³⁾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아동 연령에 대응하는 욕구를 고려해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판단의 근거로 아동 최선의 이익 존중을 강조하여 말한다(喜多 외, 2009b).

우리 정부는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에 대한 고문,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고 명기하고, 관련 통계로 ‘체벌금지 학교 수’ 를 제시하였다. 현재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체벌 경험률’,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학교에서의 비행 및 일탈 행동 피해 경험률’,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의 주관적 지표를 산출하였다.

23) 사형 금지는 일반논평 제10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2007).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체벌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간 체벌 경험률은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과 교사의 의한 체벌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39.4%였으며,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38.4%로 나타나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의 2-3명 중 1명은 체벌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 및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 유무와 빈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결과는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 유무와 빈도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163, p<.001, \chi^2=229.703, p<.001, \chi^2=22.541, p<.01$). 성별로는 남학생의 38.7%와 여학생의 40.2%가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일 년에 1-2회 정도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40.7%, 중학교의 46.4%, 일반계 고등학교의 30.9%, 전문계 고등학교의 28.3%가 부모로부터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과 초등학교의 경우 한 달에 1-2회의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의 38.0%, 중위층의 39.9%, 하위층의 38.3%가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체벌 경험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체벌의 빈도를 살펴보면, 주 1-2회 이상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위층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상위나 중위층의 아동들보다 2-3% 정도 더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층의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체벌을 더 자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과 빈도에서도 성별, 교급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chi^2=355.635, p<.001, \chi^2=699.375, p<.001, \chi^2=22.541, p<.01$),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 및 빈도 유형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46.1%와 여학생의 29.4%가 최근 1년간 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표 IV-7 최근 1년간의 체벌 경험 여부 및 빈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부모에 의한 체벌	성 별	남	61.3	26.0	8.9	2.6	100(5005)	20.163***
		여	59.8	29.5	7.5	2.5	100(4273)	
		전체	60.6	27.6	8.2	2.5	100(9278)	
	교 급	초	59.3	26.2	9.5	3.3	100(3373)	229.703***
		중	53.6	32.8	10.0	2.9	100(3083)	
		일반계고	69.1	24.4	4.6	1.5	100(2149)	
		전문계고	71.7	21.3	5.4	0.5	100 (674)	
	전체	60.6	27.6	8.2	2.5	100(9278)		
	경 제 수 준	상	62.0	25.5	8.5	2.7	100(1939)	22.541**
		중	60.1	28.3	8.3	2.4	100(6826)	
		하	61.7	25.5	6.4	4.1	100(444)	
		전체	60.6	27.6	8.3	2.5	100(9210)	
교사에 의한 체벌	성 별	남	53.9	19.1	14.4	7.8	100(5006)	355.635***
		여	70.6	16.6	8.3	2.5	100(4267)	
		전체	61.6	18.0	11.6	5.4	100(9273)	
	교 급	초	78.6	10.6	5.9	3.6	100(3373)	699.375***
		중	51.1	20.5	15.7	7.2	100(3082)	
		일반계고	52.7	24.7	13.1	5.6	100(2145)	
		전문계고	53.2	21.8	16.5	5.2	100 (673)	
	전체	61.6	18.0	11.6	5.4	100(9273)		
	경 제 수 준	상	62.0	25.5	8.5	2.7	100(1939)	22.541**
		중	60.1	28.3	8.3	2.4	100(6826)	
		하	61.7	25.5	6.4	4.1	100(444)	
		전체	60.6	27.6	8.3	2.5	100(9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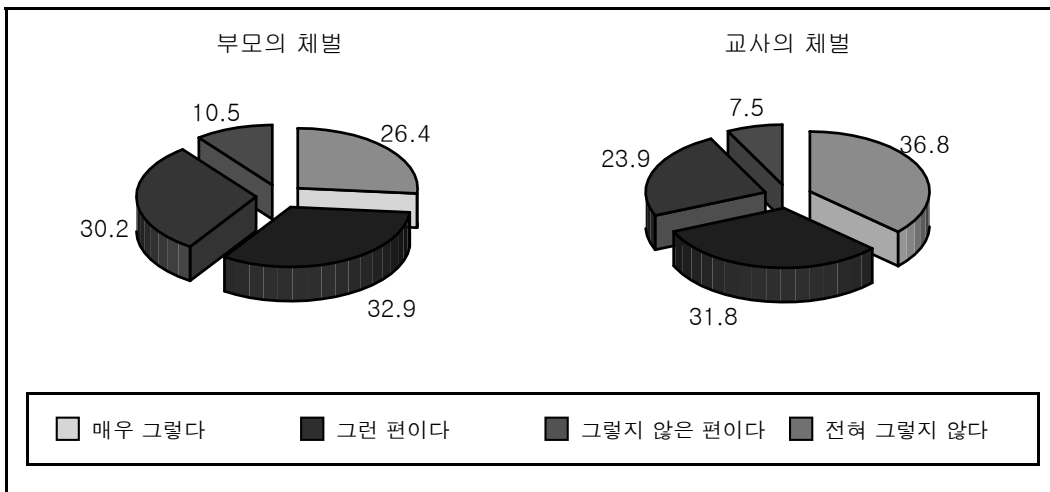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교사에게 체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벌의 빈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주일에 1-2회 이상의 체벌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의 12.5%, 여학생의 4.5%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교급에 따른 교사의 체벌 경험률에서는 초등학교의

21.4%, 중학생의 48.9%, 일반계 고등학생의 47.3%, 전문계 고등학생의 46.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전체의 12.6%가 1주일에 1-2회 이상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1명 이상이 교사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체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과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중학생이 체벌 경험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동일하나,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에 의한 체벌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교사에 의한 체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교사의 체벌 경험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체벌 경험률을 보였고, 특히,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1주일에 1회 이상 교사에게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및 교사들이 행하는 체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6] 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질문에 전체의 59.3%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질문에는 68.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2명 중 1명 이상이 체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교사에 의한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IV-6】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표 IV-8 아동·청소년의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	성별	남	13.6	31.4	29.6	25.4	100(5017)	146.425***
		여	6.8	28.9	36.7	27.6	100(4278)	
		전체	10.5	30.2	32.9	26.4	100(9294)	
	교급	초	9.2	19.5	33.1	38.2	100(3378)	553.999***
		중	9.8	33.2	34.1	22.8	100(3090)	
		일반계고	12.5	40.3	31.9	15.3	100(2149)	
		전문계고	13.1	38.3	29.6	19.0	100 (677)	
		전체	10.5	30.2	32.9	26.4	100(9294)	
	경제수준	상	11.6	19.6	31.0	37.7	100(1946)	257.481***
		중	9.6	33.1	33.8	23.6	100(6833)	
		하	18.9	32.6	28.3	20.2	100 (447)	
		전체	10.4	30.2	33.0	26.4	100(9226)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	성별	남	10.0	24.5	29.1	36.4	100(5011)	115.876***
		여	4.6	23.1	35.0	37.3	100(4276)	
		전체	7.5	23.9	31.8	36.8	100(9287)	
	교급	초	8.0	14.3	30.6	47.1	100(3377)	418.475***
		중	7.0	25.4	33.8	33.8	100(3087)	
		일반계고	7.5	33.8	30.9	27.8	100(2146)	
		전문계고	7.3	33.0	31.6	28.1	100 (677)	
		전체	7.5	23.9	31.8	36.8	100(9287)	
	경제수준	상	9.1	14.6	27.8	48.5	100(1944)	214.517***
		중	6.7	26.2	33.1	33.9	100(6828)	
		하	11.3	27.5	30.0	31.2	100 (447)	
		전체	7.5	23.8	31.8	36.9	100(9219)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모 및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먼저, 부모에 의한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은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46.425$, $p < .001$, $\chi^2=553.999$, $p < .001$, $\chi^2=257.481$,

$p<.00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에서 여학생의 64.3%, 남학생의 55.0%가 체벌을 가하면 안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에서는 초등학생의 71.3%, 중학생의 56.9%, 일반계 고등학생의 47.2%, 전문계 고등학생의 48.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부모의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아동의 68.7%, 중위층 아동의 57.4%, 하위층 아동의 48.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에 의한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에서도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5.876, p<.001, \chi^2=418.475, p<.001, \chi^2=214.517,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72.3%, 남학생의 경우 65.5%가 교사가 체벌을 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에 의한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77.7%, 중학생의 67.6%, 일반계 고등학생의 58.7%, 전문계 고등학생의 59.7%가 교사의 체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아동의 76.3%, 중위층 아동의 67.0%, 하위층 아동의 61.2%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급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의 체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간 부모 및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38.4%,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9.9%로 나타나, 교사보다 부모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 및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과 빈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과 빈도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844, p<.05, \chi^2=227.550, p<.001, \chi^2=127.005,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38.8%와 여학생의 38.0%가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명 중 1명 정도가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일 년에 1-2회 정도 이러한 경험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29.2%, 중학생의

표 IV-9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유무 및 빈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성별	남	61.2	19.7	9.3	5.1	4.7	100(5003)	12.844*
		여	62.0	19.7	9.1	5.8	3.4	100(4269)	
		전체	61.6	19.7	9.2	5.4	4.1	100(9273)	
	교급	초	70.8	15.4	6.8	3.5	3.4	100(3370)	227.550***
		중	55.6	21.9	10.1	7.0	5.3	100(3082)	
		일반계고	57.3	23.2	10.8	5.3	3.4	100(2147)	
		전문계고	55.7	20.3	11.9	8.2	3.8	100 (673)	
	전체	61.6	19.7	9.2	5.4	4.1	100(9273)		
	경제수준	상	68.4	16.3	7.5	4.5	3.3	100(1937)	127.005***
		중	60.3	20.8	9.6	5.4	3.9	100(6823)	
		하	48.6	19.1	11.2	10.7	10.4	100 (444)	
		전체	61.5	19.8	9.2	5.4	4.1	100(9204)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성별	남	65.5	15.1	9.1	5.7	4.7	100(5005)	149.212***
		여	75.5	13.6	5.8	3.1	2.1	100(4273)	
		전체	70.1	14.4	7.6	4.5	3.5	100(9278)	
	교급	초	87.5	6.4	2.7	1.9	1.5	100(3373)	800.125***
		중	62.0	16.6	10.6	6.2	4.6	100(3082)	
		일반계고	58.0	21.7	10.0	5.7	4.7	100(2149)	
		전문계고	58.6	21.2	10.2	5.3	4.7	100 (674)	
		전체	70.1	14.4	7.6	4.5	3.5	100(9278)	
	경제수준	상	77.7	9.0	5.6	4.4	3.3	100(1937)	109.757***
		중	68.7	15.6	7.9	4.3	3.4	100(6829)	
		하	57.3	21.0	10.0	6.7	5.0	100 (444)	
		전체	70.1	14.5	7.5	4.4	3.5	100(9210)	

* $p < 0.05$, ** $p < 0.01$, *** $p < 0.001$

44.4%, 일반계 고등학생의 42.7%, 전문계 고등학생의 44.3%가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10% 정도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듣는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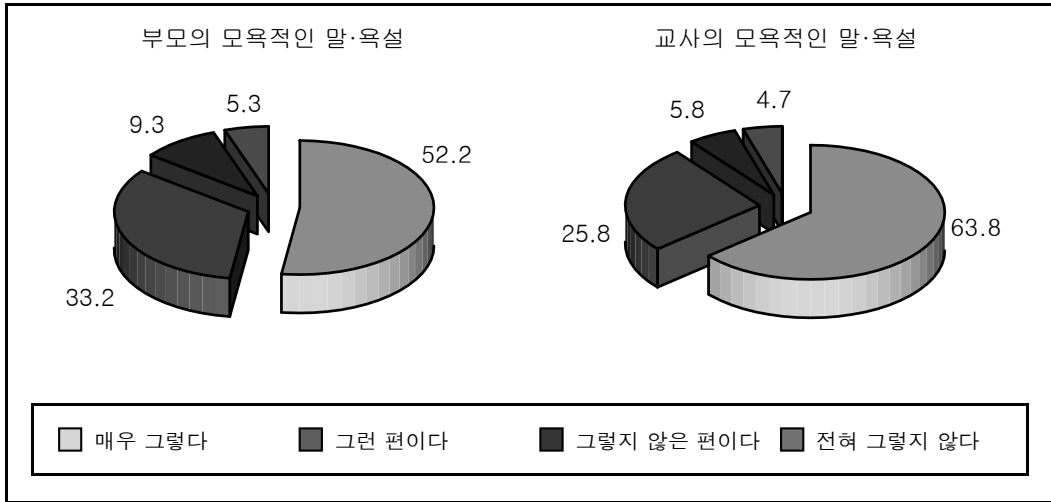
많이, 더 자주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듣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의 31.6%, 중위층의 39.7%, 하위층의 51.4%가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위층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욕설을 듣고 있었으며, 주 1-2회 이상 부모로부터 이러한 모욕적인 말·욕설을 듣는 경우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위층 아동에 대한 부모의 모욕적인 말·욕설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과 빈도에서도 성별, 교급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49.212, p<.001, \chi^2=800.125, p<.001, \chi^2=109.757,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34.5%, 여학생의 24.5%가 최근 1년간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교사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에서는, 초등학생의 12.5%, 중학생의 38.0%, 일반계 고등학생의 42.0%, 전문계 고등학생의 41.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은 일 년에 1-2회 정도 경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중학교 이상의 경우 10% 이상이 일주일에 1-2회 이상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1명 이상이 교사에게 빈번하게 모욕적인 말·욕설을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교사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에서는 상위층의 22.3%, 중위층의 31.3%, 하위층의 42.7%가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모욕적인 말·욕설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1주일에 1회 이상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였다.

④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및 교사들이 행하는 모욕적인 말·욕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7] 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질문에 전체의 85.4%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질문에는 89.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모욕적인 말·욕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50%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면 안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7】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부모 및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먼저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은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55.463, p<.001, \chi^2=280.397, p<.001, \chi^2=138.764, p<.001$). 성별에 따른 부모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인식에서 여학생의 91.1%, 남학생의 80.4%가 모욕적인 말·욕설을 가하면 안된다는 질문에 '그렇다' 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인식에서는 초등학생의 86.6%, 중학생의 83.7%, 일반계 고등학생의 85.9%, 전문계 고등학생의 84.6%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부모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이 높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과 중위층 아동의 85.5%, 하위층 아동의 82.6%가 부모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10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인식	성별	남	7.0	12.5	34.2	46.2	100(5013)	255.463***
		여	3.3	5.6	32.0	59.1	100(4276)	
		전체	5.3	9.3	33.2	52.2	100(9289)	
	교급	초	7.3	6.1	25.8	60.8	100(3377)	280.397***
		중	4.9	11.4	36.5	47.2	100(3089)	
		일반계고	3.1	11.0	37.6	48.3	100(2148)	
		전문계고	4.4	10.9	41.0	43.6	100 (676)	
		전체	5.3	9.3	33.2	52.2	100(9289)	
	경제 수준	상	8.3	6.2	26.0	59.5	100(1945)	138.764***
		중	4.3	10.2	35.2	50.3	100(6829)	
		하	7.4	10.0	31.2	51.4	100(447)	
		전체	5.3	9.3	33.1	52.3	100(9221)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인식	성별	남	5.8	8.1	27.4	58.7	100(5012)	184.586***
		여	3.4	3.1	23.9	69.7	100(4276)	
		전체	4.7	5.8	25.8	63.8	100(9288)	
	교급	초	7.2	4.5	20.0	68.4	100(3375)	208.186***
		중	4.0	6.9	29.6	59.4	100(3090)	
		일반계고	2.1	6.3	26.6	65.1	100(2148)	
		전문계고	3.7	5.4	34.4	56.5	100 (676)	
		전체	4.7	5.8	25.8	63.8	100(9288)	
	경제 수준	상	7.2	3.7	19.0	70.1	100(1945)	116.842***
		중	3.9	6.3	27.8	62.0	100(6828)	
		하	5.6	5.9	22.8	65.7	100(447)	
		전체	4.6	5.7	25.7	63.9	100(9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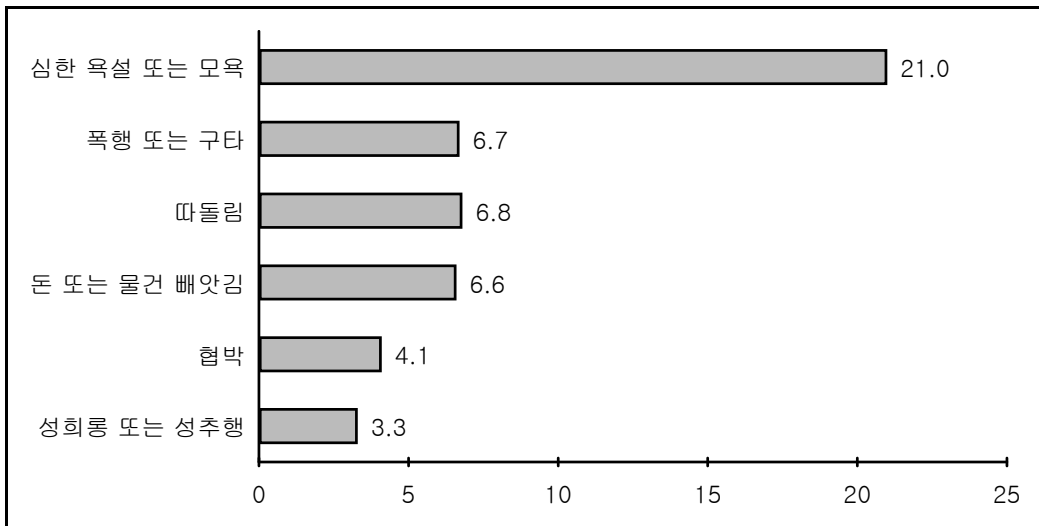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에서도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84.586$, $p < .001$, $\chi^2=208.186$, $p < .001$, $\chi^2=116.842$, $p < .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93.6%, 남학생의 경우 86.1%가 교사가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의 모욕적인 말·욕설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면 안된다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88.4%, 중학생의 89.0%, 일반계 고등학생의 91.7%, 전문계 고등학생의 9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높을수록 교사의 모욕적인 말·욕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

이 지표에서는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받은 피해의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학교 내의 피해 유형은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 또는 물건 갈취, 협박,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으로 분류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그림 IV-8] 과 같다. 조사 항목 중,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 선·후배, 친구들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전체 학생의 21.0%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의 5명 중 1명은 학교 내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의 다른 유형의 비행이나 일탈 행동에 대한 피해 경험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학교에서의 비행 및 일탈 행동 피해 경험률(%)

표 IV-11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욕설·모욕, 폭행·구타)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심한 욕설 또는 모욕	성별	남	74.7	12.5	6.2	3.4	100(4996)	130.341***	
		여	84.1	8.9	3.4	2.1	100(4275)		
		전체	79.0	10.8	4.9	2.8	100(9271)		
	교급	초	81.0	10.5	3.6	2.5	2.3	100(3378)	32.946**
		중	78.3	11.0	5.3	3.1	2.3	100(3080)	
		일반계고	78.0	11.2	5.4	2.7	2.7	100(2140)	
		전문계고	75.4	10.4	7.4	3.2	3.6	100(673)	
	전체	전체	79.0	10.8	4.9	2.8	2.5	100(9271)	37.263***
		대도시	80.8	9.9	4.7	2.7	1.9	100(3922)	
		중소도시	78.9	11.1	4.7	2.5	2.8	100(4125)	
		읍/면	73.8	12.9	5.9	3.9	3.6	100(1223)	
	지역 규모	전체	79.0	10.8	4.9	2.8	2.5	100(9271)	32.411***
		상	80.4	10.4	4.5	2.8	2.0	100(1939)	
		중	79.1	11.0	4.9	2.6	2.4	100(6823)	
		하	72.6	10.9	5.7	5.5	5.3	100 (442)	
	경제 수준	전체	79.0	10.9	4.9	2.8	2.4	100(9204)	188.950***
남		90.0	5.0	2.2	1.6	1.2	100(4993)		
여		97.2	1.5	0.7	0.5	0.2	100(4273)		
전체		93.3	3.4	1.5	1.1	0.7	100(9266)		
폭행 또는 구타	성별	초	93.6	3.5	1.2	1.3	0.5	100(3376)	35.137***
		중	92.7	3.5	2.0	1.1	0.8	100(3078)	
		일반계고	94.3	2.8	1.6	0.6	0.7	100(2140)	
	교급	전문계고	91.5	4.4	1.0	1.0	2.0	100 (673)	19.203***
		전체	93.3	3.4	1.5	1.1	0.7	100(9266)	
		상	93.8	2.9	1.7	1.2	0.5	100(1938)	
		중	93.4	3.4	1.4	1.0	0.7	100(6819)	
경제 수준	하	89.3	4.9	2.5	1.4	1.8	100 (442)	19.203***	
	전체	93.3	3.4	1.5	1.1	0.7	100(920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IV-12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따돌림, 금품갈취, 협박)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따돌림	교급	초	90.3	5.9	1.6	1.1	100(3379)	123.243***
		중	92.7	4.3	1.6	0.8	100(3079)	
		일반계고	97.4	1.8	0.3	0.2	100(2140)	
		전문계고	96.5	1.8	0.5	0.8	100 (673)	
		전체	93.2	4.1	1.2	0.8	100(9270)	
	가족유형	양부모	93.3	4.2	1.1	0.7	100(8338)	46.075***
		한부모	93.1	3.4	1.6	0.9	100(685)	
		조손가정	87.3	1.7	6.7	1.0	100 (74)	
		기타	88.3	3.6	4.0	3.0	100 (132)	
	경제수준	상	93.0	4.0	1.6	0.5	100(1939)	24.357**
		중	93.5	4.1	1.1	0.7	100(6822)	
		하	90.2	4.3	2.3	2.2	100 (442)	
		전체	93.2	4.1	1.2	0.8	100(9203)	
돈이나 물건 빼앗김	성별	남	92.0	5.5	1.6	0.5	100(4993)	41.603***
		여	95.0	3.5	1.1	0.4	100(4275)	
		전체	93.4	4.6	1.4	0.4	100(9268)	
	교급	초	95.3	3.3	0.9	0.4	100(3378)	163.973***
		중	89.1	7.5	2.7	0.5	100(3078)	
		일반계고	96.5	2.6	0.6	0.3	100(2140)	
		전문계고	94.2	3.9	0.8	0.9	100 (673)	
		전체	93.4	4.6	1.4	0.4	100(9268)	
	경제수준	상	94.8	3.3	1.2	0.3	100(1937)	53.299***
		중	93.3	4.8	1.4	0.4	100(6824)	
		하	88.8	6.4	2.5	2.2	100 (442)	
		전체	93.4	4.6	1.4	0.4	100(9202)	
	협박	성별	남	94.5	3.5	0.9	0.6	100(4995)
여			97.4	1.7	0.5	0.2	100(4271)	
전체			95.9	2.7	0.7	0.4	100(9266)	

* $p < 0.05$, ** $p < 0.01$, *** $p < 0.001$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피해 경험과 빈도를 아동의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IV-11>, <표 IV-12>와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들의 교내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0.341, p<.001, \chi^2=32.946, p<.01, \chi^2=37.263, p<.001, \chi^2=32.411,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25.3%, 여학생의 15.9%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 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년에 1-2회 정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의 19.0%, 중학생의 21.7%, 일반계 고등학교생의 22.0%, 전문계 고등학교생의 24.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아동·청소년들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내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더 많이 듣고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아동·청소년의 19.2%, 중소도시의 21.1%, 읍·면지역의 26.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지역의 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학교 내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아동·청소년의 19.6%, 중위층의 20.9%, 하위층의 2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 내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었다. 특히, 하위층의 아동·청소년들 중 10.8%는 1주일에 1-2회 이상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교내에서의 폭행이나 구타 경험과 빈도는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88.950, p<.001, \chi^2=35.137, p<.001, \chi^2=24.571, p<.01, \chi^2=19.203,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10.0%, 여학생의 2.8%가 학교 내에서 선생님,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 경험이 있다고 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은 피해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교급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생(8.5%), 중학생(7.3%), 초등학교생(6.4%), 일반계 고등학교생(5.7%) 순으로 교내에서 폭행이나 구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의 아동·청소년(9.5%),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6.5%), 대도시의 아동·청소년(6.0%) 순으로 이러한 피해 경험을 나타냈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6.2%, 중위층의 6.6%, 하위층의 10.7%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일수록 학교 내에서 폭행이나 구타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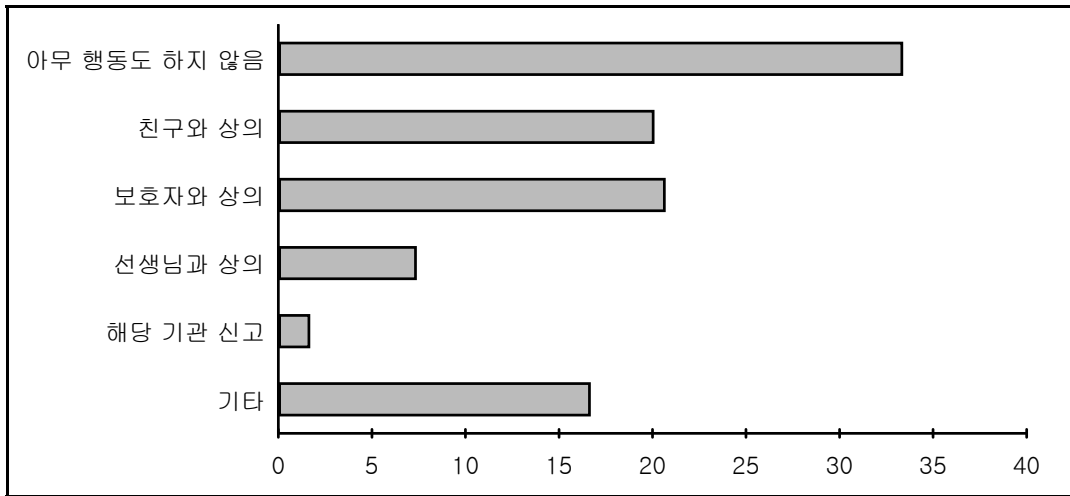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빈도는 성별, 교급, 가족유형,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710, p<.05, \chi^2=123.243, p<.001, \chi^2=46.075, p<.001, \chi^2=24.357, p<.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7.3%)이 남학생(6.4%)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7%), 중학생(7.3%), 전문계 고등학생(3.5%), 일반계 고등학생(2.6%)의 순으로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내에서 교사, 선·후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6.7%, 한부모 가정의 6.9%, 조손가정의 12.7%, 기타 가정의 11.7%가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조손가정이나 기타 가정에 속한 아동·청소년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다른 유형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층 아동의 약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및 빈도는 성별, 교급별,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1.603, p<.001, \chi^2=163.973, p<.001, \chi^2=53.299,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7.0%, 여학생의 5.0%가 학교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10.9%, 전문계 고등학생 5.8%, 초등학생 4.7%, 일반계 고등학생 3.5%의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5.2%, 중위층의 6.7%, 하위층의 11.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 내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 교사,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경험과 빈도에서는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7.971, p<.001, \chi^2=26.991, p<.01, \chi^2=16.546, p<.05, \chi^2=34.805, p<.01$).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남학생일수록, 지역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 내에서 협박을 받은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 내에서 협박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유형의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9] 와 같다. 즉,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중 33.4%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 상의한다가 20.7%, 친구와 상의한다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학교 내에서의 피해시 대처방법에 대한 차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152.655, p<.001, \chi^2=326.435, p<.001, \chi^2=41.726, p<.001, \chi^2=36.603,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피해를 경험한 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16.7%), 친구와 상의한다(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구와 상의한다에 응답한 경우가 2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27.2%),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23.6%)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가 37.2%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23.6%), 친구와 상의한다(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친구와 상의한다,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의 순이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시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 내 피해 경험 시 대처 방법에서, 양부모 및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반면, 조손가정의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대처 방법에서는 상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반면, 중위층이나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V-13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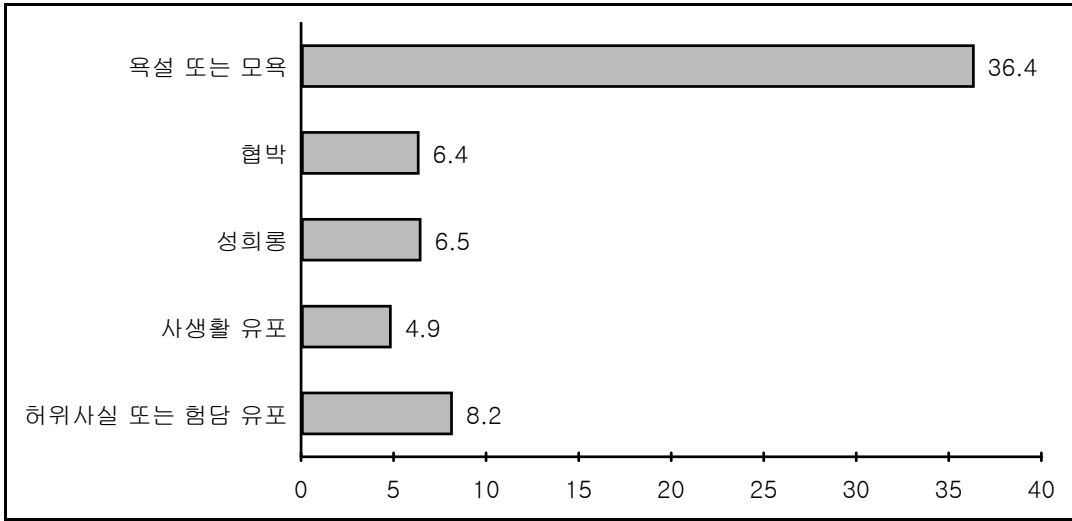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무대응	친구와 상의	보호자와 상의	선생님과 상의	해당 기관에 신고	기타	전체(N)	χ^2
성별	남	39.4	15.2	16.7	6.8	2.3	100(1549)	152.655***
	여	23.6	28.0	27.2	8.4	0.9	100 (950)	
	전체	33.4	20.1	20.7	7.4	1.7	100(2498)	
고급	초	23.6	11.2	37.2	10.3	1.7	100 (864)	326.435***
	중	39.1	22.1	16.2	7.1	1.9	100 (920)	
	일반계고	37.8	27.8	6.9	4.0	1.6	100 (523)	
	전문계고	37.9	29.2	6.0	4.8	1.3	100 (192)	
	전체	33.4	20.1	20.7	7.4	1.7	100(2498)	
가족 유형	양부모	33.1	19.7	21.3	7.0	1.8	100(2234)	41.726***
	한부모	37.3	26.0	10.2	9.3	0.4	100 (195)	
	조손가정	20.7	11.4	51.0	6.9	0	100 (20)	
	기타	33.1	19.7	19.6	17.7	3.9	100 (39)	
	전체	33.3	20.1	20.7	7.4	1.7	100(2488)	
경제 수준	상	27.6	15.9	29.0	8.5	1.6	100 (500)	36.603***
	중	34.5	20.7	19.2	7.0	1.7	100(1827)	
	하	39.6	22.9	13.3	7.7	2.0	100 (149)	
	전체	33.4	19.9	20.9	7.4	1.7	100(2476)	

* $p < 0.05$, ** $p < 0.01$, *** $p < 0.001$

⑥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은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등)을 사용하면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협박, 성희롱(놀림),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유포,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험담은 이야기 유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는 [그림 IV-10] 과 같다. 아동·청소년들 중 36.4%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밖의 피해 경험은 1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피해 경험을 성별, 교급별, 가족 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14>와 <표 IV-1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들이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과 빈도는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538.262, p<.001, \chi^2=187.947, p<.001, \chi^2=105.203,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43.7%, 여학생의 28.0%가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1년에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17.4%가 1주일에 1-2회 이상 이러한 사이버 상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28.8%, 중학생의 41.4%, 일반계 고등학생의 38.7%, 전문계 고등학생의 44.6%가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하였으며, 전문계 고등학생,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중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약 12-18%은 1주일에 1-2회 이상 이러한 사이버 상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아동·청소년의 29.9%, 중위층의 37.3%, 하위층의 51.5%가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이러한 피해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22.0%는 1주일에 1-2회 이상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욕설, 협박, 성희롱)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욕설 또는 모욕	성별	남	56.3	14.6	11.6	7.7	9.7	100(4993)	538.262***
		여	72.0	17.4	6.4	2.5	1.6	100(4273)	
		전체	63.6	15.9	9.2	5.3	6.0	100(9266)	
	교급	초	71.2	14.4	6.7	3.8	3.9	100(3373)	187.947***
		중	58.6	18.1	10.1	6.0	7.3	100(3074)	
		일반계고	61.3	15.2	11.4	5.4	6.7	100(2147)	
		전문계고	55.4	15.6	11.1	9.6	8.3	100 (672)	
	전체		63.6	15.9	9.2	5.3	6.0	100(9266)	
	경제 수준	상	70.1	13.3	7.3	4.3	5.0	100(1938)	105.203***
		중	62.7	16.5	9.6	5.2	6.0	100(6821)	
		하	48.5	17.1	12.4	11.3	10.7	100 (439)	
		전체	63.6	15.9	9.3	5.3	6.0	100(9198)	
협박	성별	남	91.6	4.5	1.7	1.2	1.1	100(4991)	94.837***
		여	96.0	2.9	0.7	0.3	0.1	100(4273)	
		전체	93.6	3.7	1.2	0.8	0.6	100(9264)	
성희 롱	성별	남	92.8	3.1	1.4	1.0	1.6	100(4987)	60.767***
		여	94.4	3.6	1.4	0.4	0.2	100(4270)	
		전체	93.5	3.3	1.4	0.8	0.9	100(9257)	
	교급	초	95.0	2.7	1.1	0.6	0.6	100(3369)	46.583***
		중	93.9	3.2	1.1	0.8	1.0	100(3072)	
		일반계고	90.9	4.3	2.5	1.0	1.3	100(2145)	
		전문계고	92.8	3.9	1.1	0.9	1.4	100 (672)	
		전체	93.5	3.3	1.4	0.8	0.9	100(9257)	
	경제 수준	상	94.4	2.9	1.1	0.6	1.1	100(1936)	35.777***
		중	93.6	3.3	1.5	0.7	0.9	100(6813)	
		하	88.8	5.3	1.8	2.6	1.5	100 (439)	
		전체	93.5	3.3	1.5	0.8	0.9	100(9189)	

* $p < 0.05$, ** $p < 0.01$, *** $p < 0.001$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 및 빈도는 성별과 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94.837$, $p < .001$, $\chi^2 = 30.747$, $p < .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8.4%, 여학생의 4.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이 더 많았다. 교급에 따라서는 전문계 고등학생(8.7%), 중학생(7.3%), 일반계 고등학생(6.5%), 초등학생(5.0%)의 순으로 협박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상에서 성희롱이나 놀림을 당한 아동·청소년의 경험 및 빈도에서는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60.767, p<.001, \chi^2=46.583, p<.001, \chi^2=35.777,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7.2%)이 여학생(5.6%)보다 성희롱이나 놀림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계 고등학생(9.1%), 전문계 고등학생(7.2%), 중학생(6.1%), 초등학생(5.0%)의 순으로 성희롱이나 놀림의 경험률이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소득 계층이 낮을수록 성희롱이나 놀림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사이버 상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상에서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유포된 경험을 한 비율과 빈도는 가족유형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9.088, p<.001, \chi^2=19.159, p<.05$). 가족의 유형에서는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11.3%가 사이버 상에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유포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가족 유형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8.1%)이 상위층이나 중위층의 아동·청소년(각각 4.7%)보다 최근 1년간 사생활 유포의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상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험담은 이야기 퍼진 경험을 한 비율과 빈도는 교급, 가족유형,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7.352, p<.001, \chi^2=68.198, p<.001, \chi^2=42.463, p<.001$).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6.6%, 중학생의 8.5%, 일반계 고등학생의 8.9%, 전문계 고등학생의 13.4%가 이러한 종류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사이버 상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험담이 유포된 경험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중에서도 전문계 고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보다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이나 험담이 유포된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7.2%, 중위층의 8.2%, 하위층의 14.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이나 험담 유포와 관련된 피해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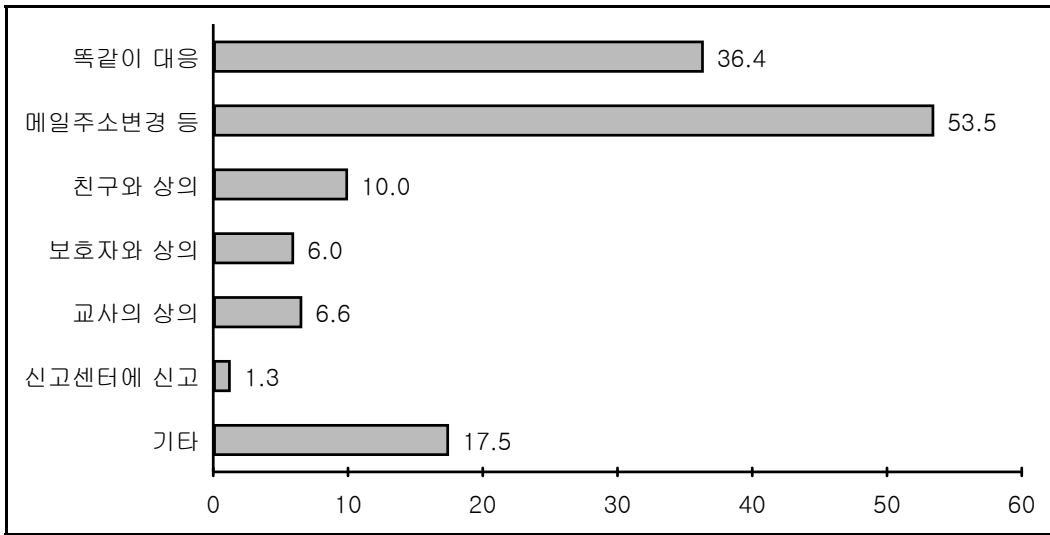
표 IV-15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사생활 유포, 허위사실 유포)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사생활 유포	가족 유형	양부모	95.2	3.3	1.0	0.3	0.2	100(8337)	39.088***
		한부모	95.5	2.9	0.9	0.4	0.3	100 (681)	
		조손가정	88.7	4.1	3.4	3.7	0	100 (74)	
		기타	93.1	4.5	1.0	1.1	0.3	100 (130)	
		전체	95.1	3.3	1.0	0.4	0.2	100(9222)	
	경제 수준	상	95.3	2.9	0.8	0.5	0.4	100(1936)	19.159*
		중	95.3	3.3	0.9	0.3	0.2	100(6819)	
		하	91.9	5.5	2.1	0.5	0	100 (439)	
전체		95.1	3.3	1.0	0.4	0.2	100(9195)		
허위 사실 또는 협담 유포	교 급	초	93.4	3.9	1.4	0.7	0.5	100(3373)	87.352***
		중	91.5	5.4	1.6	1.0	0.5	100(3074)	
		일반계고	91.1	5.8	2.2	0.5	0.4	100(2147)	
		전문계고	86.6	6.2	6.1	0.5	0.7	100 (672)	
		전체	91.8	5.0	2.0	0.7	0.5	100(9265)	
	가족 유형	양부모	92.1	5.0	1.6	0.7	0.5	100(8339)	68.198***
		한부모	88.7	4.9	5.6	0.7	0.1	100 (681)	
		조손가정	88.3	4.0	4.0	0.5	3.2	100 (74)	
		기타	86.8	6.7	4.1	1.9	0.6	100 (130)	
		전체	91.8	5.0	2.0	0.7	0.5	100(9225)	
	경제 수준	상	92.8	4.0	1.3	1.1	0.7	100(1938)	42.463***
		중	91.8	5.1	2.1	0.6	0.4	100(6820)	
하		86.0	8.0	3.4	1.3	1.4	100 (439)		
전체		91.8	5.0	2.0	0.7	0.5	100(9197)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유형의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11] 과 같다. 즉,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중 53.5%가 메일 주소를 변경하거나 채팅방 혹은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6.5%의 아동·청소년들이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똑같이 대해 준다고 응답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V-11】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한 차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121.819, p<.001, \chi^2=323.132, p<.001, \chi^2=74.480,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똑같이 대해준다, 메일 주소를 변경하거나 채팅방 등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그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똑같이 대해 준다가 38.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16.2%), 메일주소를 바꾸거나 채팅방 혹은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는다(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똑같이 대해 준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이 메일주소를 바꾸거나 채팅방 혹은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친구와 상의한다 순이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똑같이 대응한다(44.3%),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11.8%), 메일 주소를 바꾸거나 채팅방 등에 들어가지 않는다(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층의 경우, 똑같이 대응한다(55.4%), 메일 주소를 바꾸거나 채팅방 등에 들어가지 않는다(10.2%),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한다(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층의 경우, 똑같이 대응한다(55.0%), 메일 주소를 바꾸거나 채팅방 등에 들어가지 않는다(7.6%), 친구와 상의한다

(6.6%)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대처방법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하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부모님께 상의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V-16 사이버 상에서 피해 시, 대처방법

(단위: %, 명)

구분	똑같이 대응	메일 주소 변경 등	친구와 상의	보호자와 상의	교사와 상의	사이버 신고센터 신고	기타	전체(N)	χ^2
성별	남	58.7	7.4	4.7	5.3	1.2	4.3	100(2278)	121.819***
	여	44.5	14.7	8.4	8.8	1.5	6.4	100(1308)	
	전체	53.5	10.0	6.0	6.6	1.3	5.0	100(3586)	
교급	초	38.9	11.3	7.2	16.2	2.5	6.7	100(1066)	334.132***
	중	59.3	10.1	5.7	2.8	0.8	5.2	100(1323)	
	일반계고	58.6	9.2	4.5	1.9	0.9	3.5	100 (880)	
	전문계고	64.5	8.0	7.9	2.6	0.3	3.3	100 (318)	
	전체	53.5	10.0	6.0	6.6	1.3	5.0	100(3586)	
경제수준	상	44.3	10.4	8.0	11.8	2.9	6.3	100 (632)	74.480***
	중	55.4	10.2	5.6	5.7	1.0	4.6	100(2677)	
	하	55.0	7.6	6.6	3.0	0	6.4	100 (245)	
	전체	53.4	10.0	6.1	6.6	1.3	5.1	100(3554)	

* $p < 0.05$, ** $p < 0.01$, *** $p < 0.001$

(3) 관련 정책 및 대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부모 및 교사에 의한 체벌, 학교 내에서의 피해 경험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으로 분류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대안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체벌과 학교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교사에 의한 체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서는 교사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8항에, “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실제 학교 내에서는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교사의 체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학교 내의 질서유지 및 수업 시간 등에서 교사의 학생 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체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벌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 김성기(2011)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체벌을 교사의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로 구분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가해지는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신체적 접촉이 없는 간접 체벌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남겨 둬으로써,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훈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 내의 불합리한 교칙과 생활규정을 학생들의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징계과정에서, 학생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체벌 대신에 타임 아웃제, 방과 후 남아있게 하거나 청소 당번의 횟수 늘리기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셋째,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각종 정책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어린이 옴부즈맨 기구를 운영하여,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학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실상 법률적 범죄에 해당한다(김대유, 2011). 학교 사회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법안에는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두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만약 일어났을 시 그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사회에서는 지역위원회가 없는 곳도 많고, 있더라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치 위원회도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책임교사가 학교장에 의해 선출되는 문제로 인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유, 2011). 이러한 법률적인 해결책 외에도 정부에서는 매일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찰과 협조하여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CC TV 설치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외국의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적절하여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김대유, 2011).

따라서 김대유(2011)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심리적, 생활지도적(Guidance), 상담적(Counselling), 학교자치적, 교육정책적, 법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단지 학생들의 부적응 현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법률적 사안’ 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위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교사 선출제를 도입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교사 양성과정에 생활지도와 학교폭력과 관련된 과목을 신설하고 교육청의 담당부서도 정식으로 신설함으로써 교사 및 담당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3개 하위 영역, 10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생활의 보호 영역의 지표는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이며, 정보접근권의 지표는 ‘유해매체 이용률’,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지표는 ‘체벌 경험률’,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의 상당수는 학교 내에서 용모·복장·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경험한 비율도 상당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관리·감독 및 학교 내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학생과 교사들 간의 인권에 대한 시각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최근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교사-학생 관계의 질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규율이나 규칙 제정 등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상호존중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폭력 비디오나 게임물에 대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나 선·후배, 친구들에게 폭력이나 구타의 경험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험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의 이러한 폭력물이나 폭력 상황에서의 노출은 학습의 효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 및 폭력에 대한 죄책감의 결여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폭력 비디오나 게임물을 하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운동량을 감소시켜 아동·청소년들의 비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 등에서 부모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컴퓨터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과 학교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관계 기관들의 협력 미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기준 모호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유해매체 예방교육이 실제 유해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합적인 게임이용환경 정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등에 보다 시의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엄연한 폭력 행위로서 엄중히 다룸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태 조사의 결과,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학교 당국 등이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의 하위내용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가족의 재결합(제10조),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4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입양(제21조),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제25조)이다. 이 중 부모로부터의 분리, 가족의 재결합,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는 지표를 생산하기 보다는 관련법을 통해 모니터링하거나 사례별로 관리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1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입양 포함)과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관한 지표를 산출하였다.

1)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1) 지표의 의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관한 내용은 협약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가정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에 대해 국가가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호는 양육위탁,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체적 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의 보장과 아동에 대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5년 9월에 일반토론의 주제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Children without parental care)²⁴⁾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 양육은 가족에 의한 양육이 원칙이며 대체적 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도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정환경에서의 대체적 보호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입양에 관해서는 협약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 지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양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하위영역 내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 영역과 관련하여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 현황’, ‘국내·외 입양 현황(2003-2007)’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소년소녀가정 현황’, ‘국내·외 입양 현황’, ‘가출청소년 비율’,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를 산출하였다.

24)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recommendations2005.doc>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요보호아동의 보호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총 8,590명의 아동·청소년이 요보호아동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²⁵⁾.

요보호아동의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기아, 미아, 미혼모, 비행·가출,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은 <표 IV-17>과 같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미혼모에 의해 출생한 경우로 이는 전체의 32.6%(2,80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 23.5%(2,015명), 학대 12.1%(1,037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미혼모에 의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대에 의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정 내의 아동 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7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9,085	10,586	10,057	10,222	9,393	9,420	9,034	8,861	9,284	9,028	8,590
기아	1,270	717	634	628	481	429	230	305	202	222	191
미혼모	4,190	4,897	4,337	4,457	4,004	2,638	3,022	2,417	2,349	3,070	2,804
미아	152	98	74	79	62	63	55	37	151	35	210
비행·가출	1,757	728	749	595	581	1,413	802	748	706	707	772
학대									891	1,051	1,037
부모빈곤실직									1,036	710	586
부모사망	1,716	4,146	4,263	4,463	4,265	4,877	4,925	5,354	732	763	772
부모질병									274	230	203
부모이혼									2,943	2,240	2,015

*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현황 (<http://www.index.go.kr>)

25)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bbs=INDX_001

2010년에 요보호아동 중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4,842명(56.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2,124명(24.7%), 입양된 아동·청소년은 1,393명(16.2%), 소년소녀가정은 231명(2.7%)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2.7%를 차지하는 소년소녀가정은 시설이나 가정위탁, 입양을 거부하고 소년소녀가정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다른 차원의 대안적 양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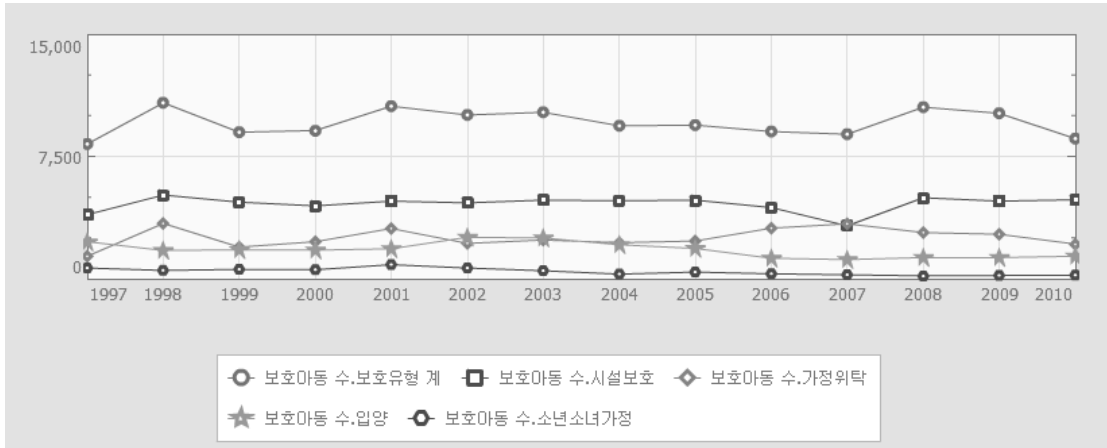
표 IV-18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9,085	10,586	10,057	10,222	9,393	9,420	9,034	8,061	9,284	9,028	8,590
시설보호	4,481	4,774	4,663	4,824	4,782	4,818	4,366	3,245	4,964	4,767	4,842
가정위탁	2,285	3,090	2,177	2,392	2,212	2,322	3,101	3,378	2,838	2,734	2,124
입양	1,755	1,848	2,544	2,569	2,100	1,873	1,259	1,191	1,304	1,314	1,393
소년소녀가정	564	874	673	500	299	407	308	247	178	213	231

*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현황 (<http://www.index.go.kr>)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IV-12]에 제시되어 있다. 요보호아동의 전체 수는 2008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다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보호아동 중,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2007년에 급격히 감소하다 2008년도에 증가하여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위탁 수는 2007년도를 기점으로 증가하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입양의 경우, 우리나라의 비밀입양위주의 입양문화,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하여 다른 대안적 양육방식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2】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현황 (<http://www.index.go.kr>)

②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 및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에 실린 소년소녀가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정은 2010년 기준으로 총 1,327가구로 집계되었다. 이 중 소년소녀가 세대주인 경우는 905가구로 소년소녀가정의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원인 경우는 422가구로 3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년소녀가정일지라도 조부모나 기타 친척의 보호 하에 있지 않은 채로 아동·청소년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68.2%나 된다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소년소녀가정에서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9가구(0.7%), 초등학생은 149가구(11.2%), 중학생은 375가구(28.3%), 고등학생은 753가구(56.7%), 기타는 41가구(3.1%)였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소년소녀가정 중 50% 이상이 고등학생이 가장인 소년소녀가구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이하가 가장인 소년소녀가구도 무려 11.9%나 된다. 즉,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의 소년소녀가정에 속한 아동들은 다른 소년소녀가정에 비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특히 더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도에 따른 소년소녀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1998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7년의 우리나라 경제 위기와 맞물려, 소년소녀가정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소년소녀가정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9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세대주	세대원	재 학 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1990	13,778	6,696	7,082	142	3,593	4,009	2,998	3,036
1991	13,985	6,902	7,083	121	3,650	4,093	3,194	2,927
1992	14,081	7,089	6,992	136	3,521	4,404	3,374	2,646
1993	14,293	7,322	6,971	119	3,331	4,710	3,622	2,511
1994	14,372	7,540	6,832	124	3,026	4,940	3,892	2,390
1995	15,118	8,107	7,011	124	2,914	5,261	4,392	2,427
1996	16,001	8,849	7,152	149	2,854	5,447	4,833	2,718
1997	16,547	9,544	7,003	174	2,830	5,382	5,516	2,645
1998	13,627	8,407	5,220	150	2,428	4,515	5,141	1,393
1999	12,427	7,924	4,503	150	2,356	4,046	4,992	883
2000	9,579	6,229	3,350	121	1,862	3,217	4,041	338
2001	8,060	5,248	2,812	133	1,640	2,611	3,414	262
2002	6,947	4,531	2,416	115	1,478	2,232	2,936	186
2003	6,184	3,994	2,190	99	1,309	1,966	2,668	142
2004	5,444	3,504	1,940	87	1,244	1,681	2,331	101
2005	4,332	2,755	1,577	85	901	1,343	1,923	80
2006	3,271	2,086	1,185	39	572	1,031	1,570	59
2007	2,501	1,630	871	25	401	789	1,226	60
2008	2,058	1,337	721	12	292	621	1,080	53
2009	1,596	1,054	542	10	196	440	904	46
2010	1,327	905	422	9	149	375	753	41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년도 자료의 경우,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의 2010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자료임.

③ 국내·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부(2011)에 따르면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친 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 국내입양만을 추진하고²⁶⁾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입양 조치 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표 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많아졌다.

표 IV-20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 내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국 외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계	3,899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보건복지백서

④ 가출청소년 비율

경찰청을 통해 집계된 가출 청소년의 현황은 <표 IV-21>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14-19세 청소년의 가출건수는 총 15,11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출인의 27.1%를 차지한다. 즉 경찰청에 가출로 신고된 사례의 3-4명 중 1명이 청소년 가출 사례로, 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집계된 자료는 가출로 신고된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건수를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가출건수는 5,253건(34.7%), 여학생의 가출건수는 9,865건(65.3%)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가출건수가 남학생의 가출건수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의 가출건수가 높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여학생이 가출 이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한 청소년들, 특히 가출한 여학생들이 가출 기간 동안 범죄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6)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아동인수 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

표 IV-21 가출인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가출인(전체)			가출 청소년(14-19세)			성인 가출인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07년	45,045	18,643	26,402	12,240	4,445	7,795	32,805	14,198	18,607
2008년	54,650	22,127	32,523	15,337	5,034	10,303	39,313	17,093	22,220
2009년	55,714	23,154	32,560	15,118	5,253	9,865	40,596	17,901	22,695

* 출처: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백서.
원자료: 경찰청, 2010 경찰백서.

위의 경찰청 자료는 신고된 14-19세의 가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5.5%였다.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 유무를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5.618, p<.001, \chi^2=49.443, p<.001, \chi^2=35.022, p<.001, \chi^2=34.995,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6.9%, 여학생의 3.8%가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7.8%), 중학생(7.4%), 일반계 고등학생(4.7%), 초등학생(3.8%) 순으로 가출 경험이 많았다. 또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16.9%), 한부모 가정(7.4%), 양부모 가정(5.1%)의 순으로 가출 경험이 많았으며,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기타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가출 경험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위층이나 중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표 IV-22 최근 1년간 가출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성별	남	6.9	93.1	100(5008)	45.618***
	여	3.8	96.2	100(4270)	
	전체	5.5	94.5	100(9278)	
교급	초	3.8	96.2	100(3368)	49.443***
	중	7.4	92.6	100(3084)	
	일반계고	4.7	95.3	100(2149)	
	전문계고	7.8	92.2	100 (677)	
	전체	5.5	94.5	100(9278)	
가족 유형	양부모	5.1	94.9	100(8348)	35.022***
	한부모	7.4	92.6	100 (683)	
	조손가정	16.9	83.1	100 (75)	
	기타	10.9	89.1	100 (131)	
	전체	5.4	94.6	100(9236)	
경제 수준	상	5.9	94.1	100(1943)	34.995***
	중	4.9	95.1	100(6820)	
	하	11.4	88.6	100 (447)	
	전체	5.5	94.5	100(9209)	

* $p < 0.05$, ** $p < 0.01$, *** $p < 0.001$

2011년 3월에 집계된 경찰청 자료를 참고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가출한 청소년의 96.4%(14,574명)는 집으로 돌아간 반면, 3.6%(544명)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귀가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출 후 발견된 당시에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더라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집으로 귀가한 경우도 누적적으로 적용된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본다면 가출한 후 2011년 3월까지 귀가하지 않은 사례가 2006년의 경우 2.7%(257명), 2007년에는 3.2%(393명), 2008년에는 2.1%(327명)에 해당한다. 가출청소년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가출 원인이 가정에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23 가출인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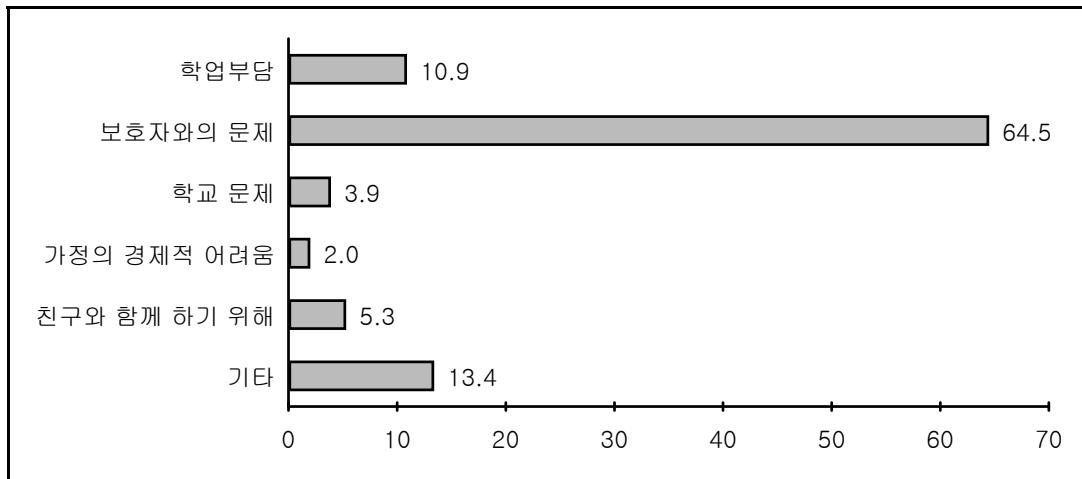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가출 청소년(14-19세)		
	발생	귀가	미귀가
2006	9,390	9,133	257
2007	12,240	11,847	393
2008	15,337	15,010	327
2009	15,118	14,574	544

* 출처: 경찰청(<http://search.police.go.kr>) (검색일: 2011. 11. 23)

* 주: 귀가의 경우는, 가출청소년 발견 당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추후에 귀가한 사례 등이 누적되어 있는 것임.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에게 질문 시, 가출의 원인을 학업 부담,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로 분류하여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그림 IV-1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가출 원인 중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호자와의 문제로 총 아동·청소년의 64.5%가 이에 응답하였다.



【그림 IV-13】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은 교급별,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59.251, p<.001, \chi^2=22.243, p<.05$). 교급별로 살펴보면, 교급에 상관없이 가출 원인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모(보호자)와의 문제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보다 부모(보호자)와의 문제로 인해 가출하는 사례가 월등히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학업 부담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부모(보호자)와의 문제로 인해 가출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보다 부모(보호자)와의 문제로 가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보호자와의 문제	학교 문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교급	초	13.2	55.0	2.3	2.8	1.2	100(124)	59.251***
	중	14.6	63.6	3.8	0	8.4	100(225)	
	일반계고	4.4	71.2	5.0	5.8	2.5	100(102)	
	전문계고	1.6	78.7	6.5	0.9	7.4	100(52)	
	전체	10.9	64.5	3.9	2.0	5.3	100(503)	
지역 규모	대도시	10.0	69.6	3.7	1.5	3.3	100(206)	22.243*
	중소도시	12.3	63.9	2.3	2.6	7.5	100(221)	
	읍/면	9.0	52.6	9.3	1.3	4.6	100(75)	
	전체	10.9	64.5	3.9	2.0	5.3	100(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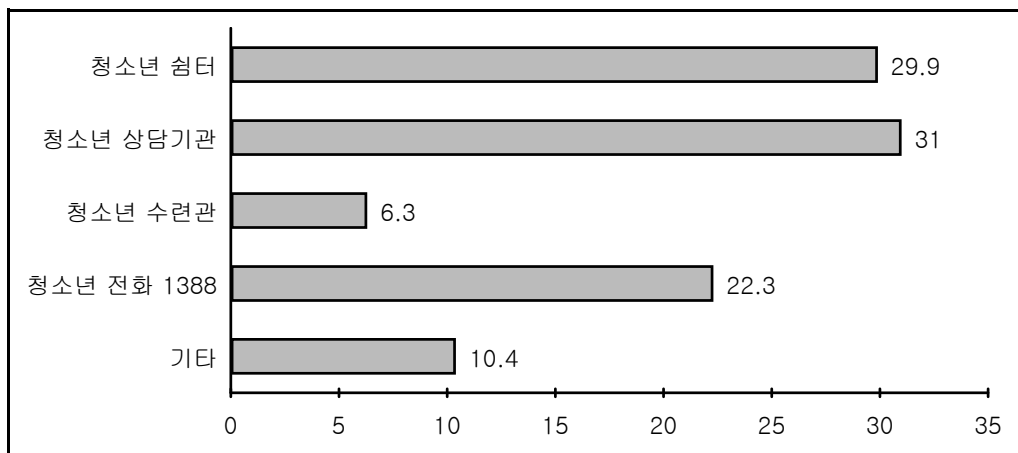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⑤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최근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출했을 당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의 5.7%만이 서비스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설 이용 경험 여부와 관련하여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출 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주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14] 와 같다.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한 서비스 시설 혹은 기관은 청소년 상담기관(31.0%), 청소년 쉼터(29.9%), 청소년 전화 1388(22.3%) 순이었으며,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14】 가출 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 혹은 기관(%)

⑥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아동·청소년이 가출했을 때 이들의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심리검사, 상담, 생활지도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그 종류가 나뉜다. 일시쉼터는 24시간 이내 일시 보호하는 시설이며, 단기쉼터는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하는 곳, 중장기쉼터는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를 하는 곳이다²⁷⁾.

청소년 쉼터의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83개의 쉼터가 있으며, 이 중 일시쉼터는 10곳, 단기쉼터는 49곳, 중장기쉼터는 24곳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쉼터에서는 2009년말 기준으

27) 일시쉼터는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출의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쉼터이며, 단기쉼터는 안정된 공간에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쉼터임. 또한,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쉼터임(보건복지부, 2010).

로 16,519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앞에 제시한 경찰청의 가출 청소년 집계 자료인 2009년의 청소년 가출 인원인 15,118건에 비해 많은 수치이다. 경찰청 집계 자료 중, 집으로 귀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쉼터에 있는 가출 청소년의 수치는 2009년에 집계된 가출청소년의 수보다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출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출 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중장기쉼터에서도 2년이 경과하면 한차례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출 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25 청소년쉼터 시설 수 및 보호청소년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시설 수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연말현재 실인원
2006	71	7	43	21	11,018
2007	72	9	38	25	14,360
2008	76	9	42	25	15,133
2009	81	10	47	24	16,519
2010	83	10	49	24	12,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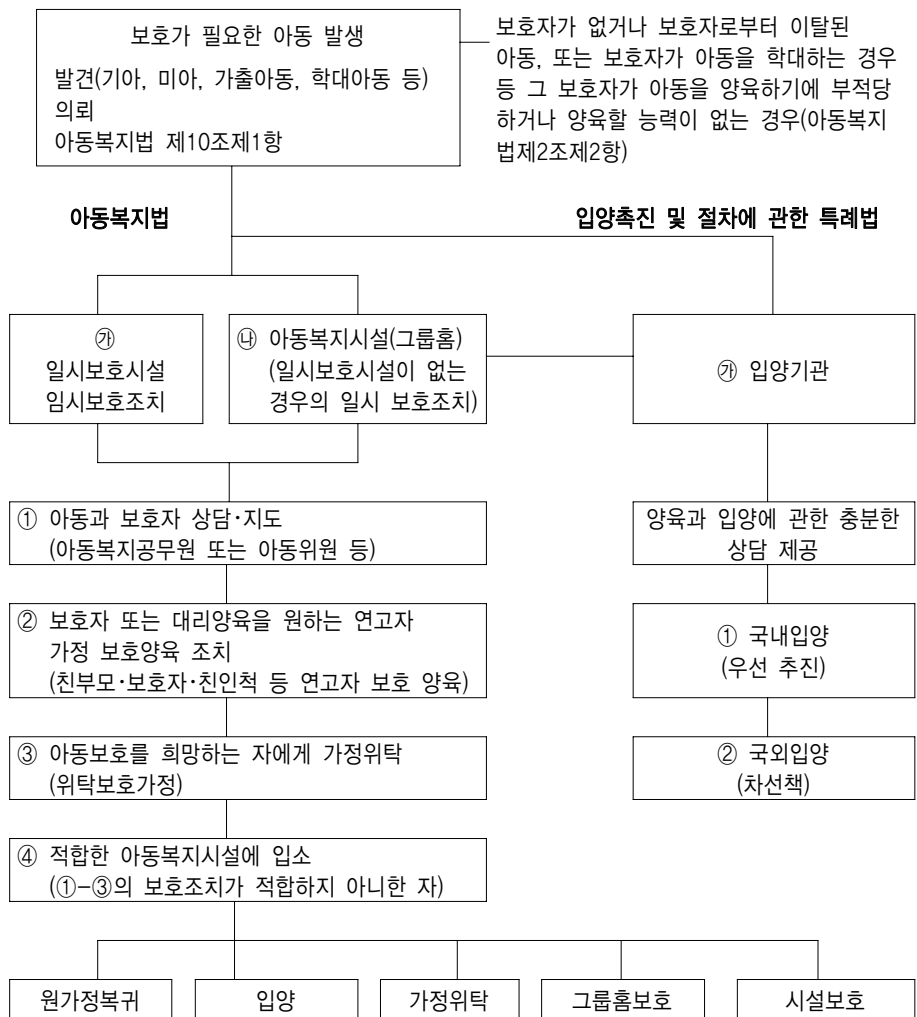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백서
 원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주: (1) 실인원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 수를 말함.
 (2) 2010년 '연말현재 실인원' 은 2010년 9월말 자료임.

(3) 관련 정책 및 대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의 제3조와 제10조에는 각각 요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개념 및 그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의 보호 정책을 관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및 정책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요보호아동의 역량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는 시설양육, 가정위탁, 입양, 그룹홈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요보호아동의 발생 시 보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그림 IV-15] 와 같다.

요보호아동의 각각의 보호체계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내역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⁸⁾ 먼저, 시설보호는 가정보호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24시간 거주하면서 집단보호를 받는 생활시설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 교육과 훈련과정이 제공되며, 2010년 말 기준으로 28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 시설 및 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운영비, 인건비, 시설 기능 보강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해주고 있다. 가정위탁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1).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 가정을 알선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12,120세대에서 가정위탁 사업을 위임받아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양육보조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비,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전세자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입양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기반한다(오선영, 2011). 2010년말 기준으로 국·내외 2,475명의 아동·청소년이 입양되어 있는 상태로,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보건복지부, 2011),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2010년 말 416개소이며, 이 시설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지원되고 있다.

28) 요보호아동의 지원내역과 운영 방식에 관한 자료는 e-나라지표의 요보호아동 현황에 있는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현황 및 지원내역’을 참고함.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bbs=INDX_001)



【그림 IV-15】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 출처: 오선영(2011)

이러한 요보호아동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오선영, 2011). 첫째, 정책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너무 적어 가정위탁, 입양 가정 등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역마다, 혹은 보호체계마다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어 요보호아동에게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지역의 각 보호체계의 지원 및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를 경험하거나 장애 등을 가진 요보호아동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바, 이들의 특수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적자원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그룹홈이나 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종사자들이 있더라도 이직이 잦은 편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친가정복귀 및 재결합인 만큼, 국가는 친부모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자립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고등교육 참여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시설양육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이들 보호체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고 양육비 등의 입양부담으로 인하여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TV·신문·라디오·간행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지표의 의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대해서는 협약 제19조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9조를 보면, 1항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학대나 부당한 취급,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2항은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단이나 절차로서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규정한다. 제39조는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등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영역의 통계자료로 정부는 「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결과’, ‘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지표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방임 경험률’ 을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²⁹⁾에 따르면, 2010년 45개소의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9,199건으로 2001년의 4,133건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는 <표 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57건으로 2001년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 약 2.7배로 늘어났다.

표 IV-26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보건복지백서

②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³⁰⁾, 정서학대³¹⁾, 성학대³²⁾, 방임³³⁾, 유기³⁴⁾ 등으로 분류된다. 2010년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별로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보면 <표 IV-27>과 같다. 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가

29)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집계된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상담신고 접수된 9,199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30)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때리기, 물건 던지기, 때밀기, 흉기 사용하여 상해 입히기 등의 행위가 포함됨.

31)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종교행위강요,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32)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일컫음. 음란물노출, 성추행, 강간 등이 포함됨.

33)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소홀한 아동양육 및 보호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컫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출생신고하지 않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됨.

34)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임.

2,97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방임 2,878건, 신체학대 2,182건, 성학대 400건, 유기 32건의 순이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이 10-12세에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연령대의 아동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더 어린 아동들에 비해 학대 피해가 외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되고, 16-18세 미만 아동들에 비해서는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표 IV-27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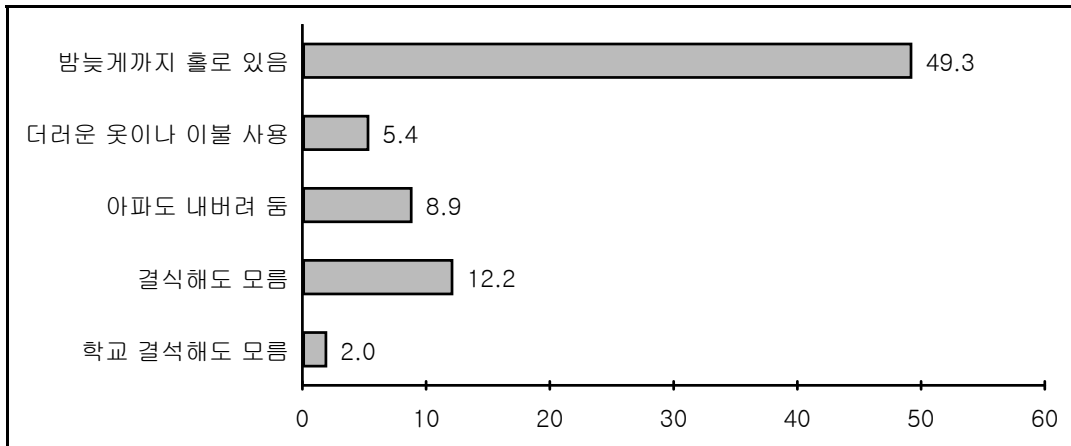
연령(만)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1세 미만		23	33	0	136	12	204
1-3세		155	221	6	371	8	761
4-6세		246	376	31	404	3	1,060
7-9세		414	565	72	565	3	1,619
10-12세		594	794	115	705	4	2,212
13-15세		572	754	135	532	2	1,996
16-18세 미만		17	231	40	165	0	614
계		2,182	2,974	400	2,878	32	8,466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주: 중복포함

③ 방임 경험률

가장 많이 발생한 정서학대에 대해서는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서 체벌 경험률과 함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방임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방임의 유형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모른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모른다’로 분류한 후, 아동·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간 부모(보호자)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림 IV-16] 과 같이,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의 방임 유형 중,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무려 49.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12.2%로 ‘식사를 못 해도 모른다’였다.



【그림 IV-16】 방임 경험률(%)

방임 유형에 따른 경험률 및 빈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방임 유형 중,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5.521$, $p<.001$, $\chi^2=293.106$, $p<.001$, $\chi^2=97.204$, $p<.01$, $\chi^2=197.738$,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51.1%)이 여학생(47.1%)보다 밤늦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생(56.9%), 중학생(56.9%), 초등학생(38.1%)의 순으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2명 중 1명 이상이 밤늦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들은 한 달에 1-2회 정도 경험을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 중 58.6%가 밤늦게까지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양부모 가정(48.6%), 조손가정(46.9%) 순이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중, 각각 15.9%, 10.1%의 아동·청소년은 주 1-2회 이상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방임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밤늦게까지 혼자 있었던 경험이 많았으며, 특히, 중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50% 이상이,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60% 이상이 밤늦게까지 혼자 있었던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하위층 아동·청소년의 약 5명 중 1명은 이러한 방임을 주 1-2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계속)

구분		한번도 없음	연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식사를 못 해도 모름	교급	초	94.5	3.5	0.9	0.5	0.6	100(3372)	364.453***
		중	88.2	5.9	3.8	1.0	1.1	100(3088)	
		일반계고	80.4	10.1	4.9	2.1	2.5	100(2148)	
		전문계고	76.5	10.4	5.8	3.3	4.1	100 (676)	
		전체	87.8	6.3	3.1	1.2	1.5	100(9284)	
	가족유형	양부모	88.6	6.2	3.0	1.1	1.2	100(8352)	98.056***
		한부모	79.1	8.9	4.8	3.3	3.9	100 (685)	
		조손가정	85.8	8.5	2.3	0.5	2.8	100 (73)	
		기타	86.3	4.1	2.8	1.6	5.3	100 (133)	
		전체	87.8	6.4	3.1	1.2	1.5	100(9243)	
	경제수준	상	94.2	3.2	1.4	0.3	0.8	100(1944)	272.644***
		중	87.1	7.1	3.2	1.3	1.3	100(6826)	
		하	70.9	8.6	9.4	4.6	6.6	100 (447)	
		전체	87.8	6.3	3.1	1.2	1.5	100(9217)	
학교를 결석해도 모름	교급	초	99.0	0.7	0.1	0.1	0.2	100(3374)	111.362***
		중	98.7	0.9	0.2	0.1	0.2	100(3090)	
		일반계고	96.6	2.6	0.5	0.1	0.2	100(2148)	
		전문계고	94.6	2.7	1.0	0.2	1.5	100 (677)	
		전체	98.0	1.3	0.3	0.1	0.3	100(9288)	
	가족유형	양부모	98.3	1.1	0.2	0.1	0.3	100(8354)	59.457***
		한부모	94.5	3.6	1.2	0.1	0.6	100 (685)	
		조손가정	97.2	2.3	0.5	0	0	100 (75)	
		기타	98.2	0.8	0	0.3	0.6	100 (133)	
		전체	98.0	1.3	0.3	0.1	0.3	100(9247)	
	경제수준	상	99.0	0.7	0.1	0.1	0.1	100(1945)	113.472***
		중	98.2	1.2	0.3	0.1	0.3	100(6829)	
		하	91.8	4.3	1.8	0.4	1.6	100 (447)	
		전체	98.1	1.3	0.3	0.1	0.3	100(9221)	

* $p<0.05$, ** $p<0.01$, *** $p<0.001$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51.856, p<.001, \chi^2=55.287, p<.001, \chi^2=55.847, p<.001, \chi^2=257.125,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러운 옷이나 이부자리를 사용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에 따라서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

정,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의 아동·청소년 중 16.7%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5% 내외의 응답 수준을 보인 상위층이나 중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이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경험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4.220, p<.001, \chi^2=93.759, p<.001, \chi^2=53.119, p<.001, \chi^2=125.976,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10.4%)이 남학생(7.7%)보다 아파도 방치되었던 경험이 더 많았다고 응답하였고, 교급에 따라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경험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13.1%)이 양부모 가정(8.5%)이나 조손가정(8.1%)의 아동·청소년들보다 아파도 방치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약 5명 중 1명이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이 식사를 못 해도 몰랐던 경험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8.641, p<.01, \chi^2=364.453, p<.001, \chi^2=98.056, p<.001, \chi^2=272.644,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13.1%)이 남학생(11.3%)보다 결식에 대해 부모님이 몰랐던 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5.5%, 중학생의 11.8%, 일반계 고등학생의 19.6%, 전문계 고등학생의 23.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높을수록 결식과 관련된 방임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20.9%), 조손가정(14.2%), 양부모 가정(11.4%) 순으로 결식과 관련된 부모 혹은 보호자의 방임 경험을 많이 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약 3명 중 1명은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자신이 식사를 못 해도 몰랐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1.2%는 이러한 경험을 주 1-2회 이상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이 결석해도 몰랐던 경험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1.362, p<.001, \chi^2=33.734, p<.001, \chi^2=59.457, p<.001, \chi^2=113.472, p<.001$).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결석해도 몰랐었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보다 이러한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양부모 가정 순으로 학교 결석에 대해 부모님이 몰랐었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의 아동·청소년이 상위층이나 중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련 정책 및 대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광역시·도에 2011년 현재 45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응급치료 및 심리치료,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직접서비스와 신고의무자,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상담원 보수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예방정책의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장화정, 2011).

정부차원에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완점과 대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오선영, 2011). 첫째, 현재는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주양육자인 부모에 의한 학대비율이 높아 피해아동·청소년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은 급작스런 환경 변화로 인해 적응에 곤란을 겪지만, 학대행위자의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정 복귀를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학대행위자를 원가정으로부터 강제 퇴거시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학대행위자 분리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학대행위자들의 재학대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담, 치료, 수강명령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아동성폭력예방사업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기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되는 학대 사례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예비부모 교육이나 학교와 연계된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소결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의 2개 하위 영역, 9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지표는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소년소녀가정 현황’, ‘국내·외 입양 현황’, ‘가출청소년 비율’,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이며,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의 지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방임경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발생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학대로 인해 대안적 양육을 받게 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가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의 기능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대안적 양육 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조사에서 가출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보호자와의 문제로 나타났다. 물론, 보호자와의 문제를 학대 하나로 규정짓고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가출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긴 하지만, 보호자와 아동·청소년의 관계의 악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학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학대를 받는 아동의 연령을 조사해 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인 10~12세 아동들의 학대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출 후 집으로 복귀하려 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 가정 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가출 발생 빈도를 줄이고 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인 의무 규정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가족치료 시스템 등이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이들의 가정 복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들에게 좀 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안적 양육 현황을 살펴보면, 요보호 아동·청소년 중 시설에 위탁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의 비율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미비, 국민들의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정 문제를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소년소녀가정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제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 상황에 맞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안적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요보호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지표의 의미

장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협약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항은 장애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양육책임자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의무 지우고 있다. 3항은 장애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4항은 국제협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영역과 관련하여 「제3·4차 국가보고서」에 ‘특수학교 학생 통학현황’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장애 청소년 취업률’ 의 객관적 지표와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의 주관적 지표를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이 지표는 우리나라 장애 아동·청소년의 취학률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현황, 특수학교(급)의 학생 현황, 일반학급 통합배치 특수교육대상자수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학급 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는 <표 IV-29>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 아동·청소년은 총 82,665명으로, 이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4,741명(29.9%)이며,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총 57,924명(70.1%)이다. 또한 일반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43,18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52.2%이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4,741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17.8%이다. 이를 통해 보면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학급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는 5-6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나 장애아 통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2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수	일반학교 배치학생수			전체학생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07	22,963(34.8)	35,340	7,637	42,977(65.2)	65,940(100)
2008	23,400(32.7)	37,857	10,227	48,084(67.3)	71,484(100)
2009	23,801(31.7)	39,380	12,006	51,386(68.3)	75,187(100)
2010	23,944(30.0)	42,021	13,746	55,767(70.0)	79,711(100)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수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늘어난 데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장애 아동·청소년들 중 교육적 혜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도별 학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수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학교의

배치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 중,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비율은 2007년에 53.6%이던 것이 2009년에는 52.4%, 2011년에는 52.2%로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의 형태로 변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30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4	5.7	7.3	8.2	3.3	4.8	6.3	7.9	3.3	5.1	6.7	8.1
부산	4.1	5.2	6.1	6.7	2.8	4.6	6.0	7.6	3.7	4.7	6.0	7.2
대구	2.1	5.9	6.7	7.7	3.1	4.6	5.9	8.3	2.7	4.9	6.3	8.0
인천	3.3	5.5	7.1	7.9	4.0	5.3	6.9	7.4	3.8	5.3	7.0	7.6
광주	3.5	5.3	6.0	6.5	2.8	4.3	5.4	7.0	2.9	4.6	5.7	6.7
대전	3.6	5.3	8.2	8.8	3.9	5.3	5.8	7.1	3.8	5.3	6.4	7.8
울산	2.3	5.1	5.5	7.1	2.9	4.8	5.3	6.1	2.6	4.9	5.4	6.5
경기	2.7	5.4	6.4	7.7	3.0	4.8	5.5	6.8	2.8	4.9	5.7	7.0
강원	3.8	4.5	6.3	6.8	3.0	3.9	5.8	7.2	3.4	4.1	6.0	6.9
충북	3.2	5.0	6.0	6.6	2.4	3.9	6.1	6.9	3.0	5.0	6.0	6.7
충남	2.7	5.0	6.1	7.0	3.6	4.1	5.0	6.4	3.4	4.2	5.2	6.6
전북	3.0	5.5	7.9	9.6	2.9	4.0	5.7	7.6	2.9	4.4	6.6	8.8
전남	2.0	6.3	9.0	9.8	3.4	4.8	5.4	7.2	3.0	5.0	6.1	8.1
경북	2.5	5.1	6.3	6.8	3.0	3.8	4.9	6.3	2.7	4.0	5.4	6.5
경남	3.6	5.4	6.3	6.5	3.9	4.6	5.3	6.4	3.8	4.7	5.6	6.4
제주	1.3	5.4	5.3	5.7	2	2.8	2.2	8.2	1.7	3.4	3.1	6.5
평균	3.1	5.4	6.6	7.5	3.2	4.6	5.6	7.1	3.2	4.8	5.9	7.3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년도의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 아동·청소년의 현황은 <표 IV-30>과 같다. 학교과정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각각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생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유치원에는 3.2명, 초등학교는 4.8명, 중학교는 5.9명, 고등학교는 7.3명이 배치되어 있어,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특수학급인 경우 고등학생이 정원이 초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원초과 현상이 두드러진 곳들이 있는데, 특히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지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정원초과 현상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을 늘리거나 통합교육이 가능한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급에 배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 중,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졸업 후의 사회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학급 배치 현황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이러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청소년의 17.8%에 불과하다. 이들을 학교과정별로 분류해서 살펴 본 <표 IV-31>를 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 아동·청소년 중 유치원생은 11.3%, 초등학생은 38.0%, 중학생은 23.6%, 고등학생은 27.2%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다른 학교과정에 비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표 IV-31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통합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223	739	446	552	1,963
부산	295	364	223	170	1,052
대구	110	223	166	313	812
인천	135	200	148	132	615
광주	66	152	75	50	343
대전	79	285	182	166	712
울산	40	317	172	189	718
경기	244	1,023	590	867	2,724
강원	39	189	176	107	511
충북	67	266	186	288	807
충남	26	241	97	136	500
전북	55	347	219	211	832
전남	45	126	124	125	420
경북	57	396	241	238	932
경남	139	545	345	386	1,415
제주	40	182	88	78	388
계	1,660	5,595	3,478	4,008	14,741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실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유아들의 유치원 입학률이 떨어지는 데서 기인할 수도 있고, 대개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학에 거부하는 데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시기에 속하는 만3-5세의 경우 기호, 선호도 등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교육이 아동·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차별의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바, 유치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무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장애 청소년 취업률

장애 청소년 취업률은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현황과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이는 <표 IV-32>와 <표 IV-3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졸업생수는 2,258명이었고, 이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1,147명, 취업한 학생은 488명으로, 2010년 특수학교에서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의 43.9%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취업 후 하는 일은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료³⁵⁾(25.0%), 포장조립운반(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지역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전북, 서울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울산은 취업률이 가장 저조하였다. 지역별로 진로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56명 중 456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였고, 114명이 취업을 하여 11.4%의 취업률을 보였다. 이는 43.9%의 취업률을 보인 특수학교의 상황과 대조적인 것으로 취업률의 차이가 거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현황을 보면,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고, 포장조립운반(25.4%), 서비스업(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현황도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반면,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 후 진로교육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 졸업생들의 지역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전남, 전북 지역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 경남은

35)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침, 구 등에 해당됨.

표 IV-33 2010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 생수	진학 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 등	기타	소계	
서울	757	77	-	1	-	-	-	1	-	2	1	-	5	3	13	1.9
부산	39	26	-	-	-	1	-	-	-	-	-	-	2	1	4	30.8
대구	79	54	-	1	-	-	-	-	-	3	-	-	3	-	7	28.0
인천	11	6	-	-	-	-	-	-	-	-	-	-	-	-	-	-
광주	6	3	-	-	-	-	-	-	-	-	-	-	-	-	-	-
대전	28	23	-	-	-	-	-	-	-	-	-	-	-	-	-	-
울산	29	10	-	-	-	-	-	-	-	-	-	-	-	-	-	-
경기	317	156	-	18	6	4	-	-	-	9	1	1	11	7	57	35.4
강원	12	4	-	1	-	-	-	-	-	1	-	-	-	-	2	25.0
충북	50	24	-	4	-	-	-	-	-	3	-	-	-	-	7	26.9
충남	21	11	-	2	-	-	-	-	-	-	-	1	-	1	4	40.0
전북	4	2	-	-	-	-	-	-	-	-	-	-	1	-	1	50.0
전남	32	9	-	2	2	-	-	-	-	4	-	-	5	-	13	56.5
경북	16	8	-	-	-	-	-	-	-	-	-	-	2	-	2	25.0
경남	46	39	1	-	-	-	-	-	-	-	-	-	-	-	1	14.3
제주	9	4	-	-	-	-	-	-	-	-	-	-	2	1	3	60.0
계	1,456	456	1	29	8	5	0	1	0	22	2	2	31	13	114	11.4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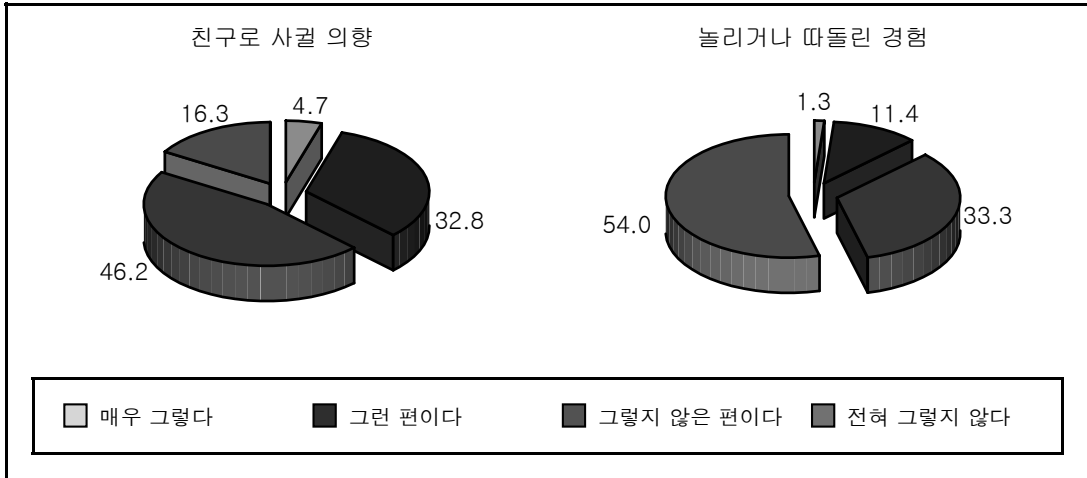
* 주: 1) 취업률=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100

2) 복지관 등: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③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는지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의 아동·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IV-17]에 제시되어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37.5%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사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도 16.3%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장애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체 12.7%가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중 친구로 사귄 의향과 관련해서는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0.321, p<.001, \chi^2=230.882, p<.001, \chi^2=111.195,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38.2%, 남학생의 36.9%가 장애 아동·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거의 5명 중 1명이 전혀 친구로 사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들이 특히 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44.4%, 중학교의 31.5%, 일반계 고등학교의 37.8%, 전문계 고등학교의 28.9%가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40.5%, 중위층의 36.9%, 하위층의 34.4%가 장애 아동·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위층의 경우도 전혀 친구로 사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나 되었다.

표 IV-34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친구로 사귄 의향	성별	남	19.3	43.7	31.8	5.1	100(4896)	80.321***
		여	12.7	49.1	33.9	4.3	100(4187)	
		전체	16.3	46.2	32.8	4.7	100(9083)	
	교급	초	16.9	38.8	37.1	7.3	100(3353)	230.882***
		중	18.7	49.8	28.9	2.6	100(3016)	
		일반계고	11.7	50.6	33.2	4.6	100(2086)	
		전문계고	16.8	54.3	27.3	1.6	100 (629)	
	경제수준	전체	16.3	46.2	32.8	4.7	100(9083)	111.195***
		상	20.4	39.1	32.8	7.7	100(1918)	
		중	14.8	48.3	33.1	3.8	100(6668)	
		하	18.9	46.7	27.8	6.6	100 (429)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성별	남	49.7	35.2	13.2	1.8	100(4896)
여			58.9	31.1	9.3	0.7	100(4186)	
전체			54.0	33.3	11.4	1.3	100(9082)	
교급		초	59.5	28.9	9.9	1.6	100(3352)	95.938***
		중	48.9	36.4	13.6	1.1	100(3016)	
		일반계고	53.8	34.6	10.5	1.1	100(2085)	
		전문계고	49.2	38.0	11.7	1.1	100 (629)	
경제수준		전체	54.0	33.3	11.4	1.3	100(9082)	61.765***
		상	59.5	29.4	9.4	1.7	100(1918)	
		중	52.3	34.7	12.0	1.0	100(6667)	
		하	56.5	29.9	10.2	3.4	100 (429)	
전체		54.0	33.4	11.4	1.3	100(9014)		

* $p < 0.05$, ** $p < 0.01$, *** $p < 0.001$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중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과 관련해서는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9.194$, $p < .001$, $\chi^2=95.938$, $p < .001$, $\chi^2=61.765$, $p < .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15.0%, 여학생의 10.0%가 장애 아동·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장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위의 결과와 일치한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14.7%, 전문계 고등학생 12.8%, 일반계 고등학생 11.6%, 초등학생 11.5%의 순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층이나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상위층의 아동·청소년들보다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련 정책 및 대안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과 관련하여³⁶⁾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이들이 교육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확대, 조기교육 기회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교육권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와 확대,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의 질 제고, 차별금지 조항의 강화, 장애인 대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영역의 차별금지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로, 2009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 급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 교육기관으로 적용되어 시행중이다. 그리고 2011년 4월 11부터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 급 학교,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 특수학급 뿐 만 아니라 일반학급에도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이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한적인 시설·설비의 개선에 그치고 있어 기본권에 해당되는 시설물 접근 및 이용, 편의제공 등에 의한 차별이 여전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차별 시정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공공부분이 민간에

36)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에 실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현수, 2011)을 재구성한 것임.

비해 더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대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및 학습지원과 평가방법 개선,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 시설을 갖춘다거나, 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행전략이나 자료의 종류, 수집방법,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과제 작성 매뉴얼」을 제시하거나, 시험 및 평가에 있어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의 성적 비중을 낮추고 평소 과제수행과 수업 참여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 등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장애아동 보조원을 배치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 교육지원의 법제화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아동 지원부서 설치, 교육 편의 제공 등 장애아동의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위한 물리적인 교육환경 조성 과 교수·학습지원 제공, 대학교 학비지원 등 장애아동의 고등교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차원의 교수·학습 및 시설·설비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재정확보와 지원을 통해 학교 내의 장애아동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졸업을 앞둔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장애아동 지원 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이를 활용하여 장애 인력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체, 기업의 취업 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정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정보 등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취업 직종을 찾고 개발하여 취업 준비를 시키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 생존 및 발달

(1) 지표의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2항은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모든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부터의 사망을 방지하

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동의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협약 전문의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는 기술을 보면,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생명은 출생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喜多 외, 2009b). 또한 UNICEF(2007)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아동의 임신율을 파악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영역과 관련하여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는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다문화 아동 현황’,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아동 의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률’, ‘15-19세 출산율’, ‘0세의 기대여명’, ‘사고 사망률’,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자살률’,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 ‘범죄 피해건수’,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을 산출하였고, 발달에 관한 지표는 2차년도(2012년)에 보완할 예정이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인공임신중절률

이 지표는 아동의 생명의 시작을 출생전후로 보고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한다는 협약의 전문에 기반을 둔다. 즉 태아의 생존의 권리를 다루는 지표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유지 시 산모 생명이 위협된다거나 산전검사상 태아에 위중한 이상이 있을 때 등 의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률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여기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3년 주기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³⁷⁾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IV-35〉는 15-44세 가임 여성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나타낸 자료로, 반복경험은 감안하지 않은 자료이다. 즉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회 경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주되어 있다. 2009년도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살펴보면, 15-44세 유배우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바탕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16,380가구 중 15~64세 기혼 가구에 소속된 10,777명을 조사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함.

부인의 26%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50% 이상의 높은 경험률을 보이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9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199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경험률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단위: %)

연령	연도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전체		53	52	54	49	44	39	40	34	26
15-24세		22	27	29	21	21	13	15	15	4
25-29세		42	41	40	36	27	17	23	11	11
30-34세		61	57	55	51	45	35	34	24	18
35-39세		63	63	60	58	52	50	46	40	28
40-44세		67	62	65	60	53	52	50	48	37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3년주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40-44세의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37%로 가장 높았고, 15-24세는 4%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부인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누적된 경험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인다. 15-24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만을 살펴보면, 1991년까지는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다가 199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배우자가 있는 부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로, 실제 배우자가 없는 부인들의 사례를 더하면 인공임신중절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② 15-19세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표 IV-36>과 같다. 15-19세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은 1980년대 후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IV-36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연도	15-19세 출산율	합계출산율
1982	15.0	2.39
1983	13.0	2.06
1984	11.7	1.74
1985	10.1	1.66
1986	8.7	1.58
1987	7.0	1.53
1988	5.7	1.55
1989	4.5	1.56
1990	4.2	1.57
1991	4.3	1.71
1992	4.7	1.76
1993	4.4	1.65
1994	4.0	1.66
1995	3.6	1.63
1996	3.3	1.57
1997	3.0	1.52
1998	2.8	1.45
1999	2.6	1.41
2000	2.5	1.47
2001	2.2	1.30
2002	2.6	1.17
2003	2.5	1.18
2004	2.3	1.15
2005	2.1	1.08
2006	2.2	1.12
2007	2.2	1.25
2008	1.7	1.19
2009	1.7	1.15
2010	1.5	1.22

* 출처: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통계청(2011), 2010 한국의 사회지표

* 주: 1) 15-19세 출산율: 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명 출생아 수.
2)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15-19세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미혼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학생 신분이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산 당사자인 여성 청소년이나 이들에게서 출생한 아기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한 이후의 여성 청소년들의 학업, 진로, 양육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③ 0세의 기대여명

이 지표는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수명이다. 0세의 기대여명은 출생 시의 평균 수명, 즉 출생 시 전체인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망률을 전제하여 신생아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다(모상현 외, 2009).

통계청에서는 매년 생명표를 작성하여 0세 기대여명을 발표하고 있다(〈표 IV-37〉).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0세 기대여명은 80.55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수명은 76.99세, 여성은 83.77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78년 더 길었으며, 최근 10년간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⁸⁾

표 IV-37 0세의 기대여명

(단위: 세)

연 도	전 체	남 자	여 자
1970	61.93	58.67	65.57
1975	63.82	61.47	69.42
1980	65.69	61.78	70.04
1985	68.44	64.45	72.82
1990	71.28	67.29	75.51
1995	73.53	69.57	77.41
2000	76.02	72.25	79.60
2005	78.63	75.14	81.89
2006	79.18	75.74	82.36
2007	79.56	76.13	82.73
2008	80.08	76.54	83.29
2009	80.55	76.99	83.77

* 출처: 통계청(1년 주기), 생명표-간이생명표

* 주: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38)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8

④ 사고 사망률

아동·청소년의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률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을 조사하여 1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표 IV-38〉), 20-29세, 0세, 10-19세, 1-9세 순으로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보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청소년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0세의 경우, 타살이 인구 10만 명당 6.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사고, 추락사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직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0세아의 경우 이러한 사고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 아동의 경우에는 운수사고, 추락사고, 타살의 순으로 사망원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10-19세는 자살, 운수사고, 익사사고 순, 20-29세는 자살, 운수사고, 익사사고 & 타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수사고는 아동·청소년 전 연령대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바, 운수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양육·교육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필수적일 것이다.

표 IV-38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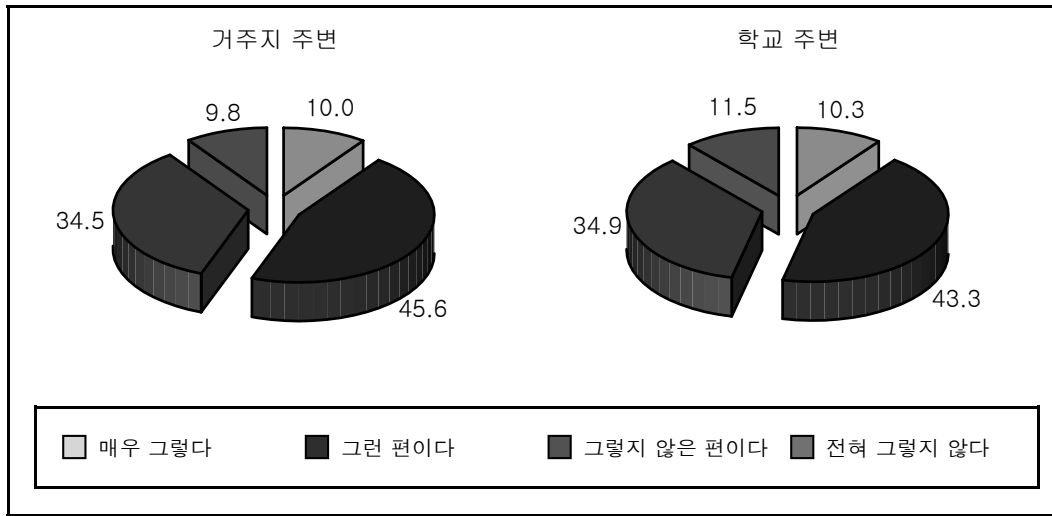
연령	2008	2009	2010	사망의 외인						
				운수 ¹⁾ 사고	추락 ²⁾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살	타살
0세	19.7	18.2	18.6	2.1	0.7	0.5	0.2	-	-	6.0
1-9세	7.5	6.7	5.5	2.8	0.7	0.4	0.2	0.1	-	0.6
10-19세	12.7	13.9	12.7	4.8	0.3	0.9	0.1	0.0	5.2	0.5
20-29세	39.4	41.0	39.0	9.0	0.7	0.8	0.3	0.1	24.4	0.8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 1)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2)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⑤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및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로, 조사 결과는 [그림 IV-18] 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 중 거주지 주변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6%였으며, 학교 주변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로,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주변보다 거주지 주변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V-18】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아동·청소년들의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는 <표 IV-3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거주지 주변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4.282, p<.001, \chi^2=337.107, p<.001, \chi^2=269.403,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61.6%, 남학생의 59.1%가 자신의 거주지 주변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3.2%, 전문계 고등학생 58.0%, 일반계 고등학생 54.3%, 중학생 47.8%의 순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중학생이 거주지 주변의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의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63.2%, 중위층의 54.4%,

하위층의 43.0%가 자신의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교통사고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2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의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거주지 주변	성별	남	9.5	31.4	46.4	12.7	100(5015)	114.282***
		여	10.1	38.3	44.8	6.8	100(4276)	
		전체	9.8	34.5	45.6	10.0	100(9291)	
	교급	초	9.3	27.5	46.9	16.3	100(3378)	337.107***
		중	11.3	40.9	40.9	6.9	100(3089)	
		일반계고	9.1	36.5	49.0	5.3	100(2149)	
		전문계고	7.7	34.2	50.2	7.8	100 (676)	
		전체	9.8	34.5	45.6	10.0	100(9291)	
	경제수준	상	11.6	25.3	44.9	18.3	100(1945)	269.403***
		중	9.0	36.6	46.6	7.8	100(6831)	
		하	15.3	41.7	35.0	8.0	100 (447)	
		전체	9.8	34.5	45.7	10.0	100(9223)	
학교 주변	성별	남	10.6	32.4	44.0	13.0	100(5014)	100.641***
		여	12.4	37.9	42.4	7.3	100(4275)	
		전체	11.5	34.9	43.3	10.3	100(9289)	
	교급	초	7.6	23.1	48.6	20.6	100(3375)	900.415***
		중	12.2	40.6	41.9	5.3	100(3089)	
		일반계고	13.8	43.7	39.2	3.3	100(2149)	
		전문계고	19.9	40.1	35.5	4.4	100 (677)	
		전체	11.5	34.9	43.3	10.3	100(9289)	
	경제수준	상	10.7	25.1	42.6	21.5	100(1946)	396.082***
		중	11.4	37.1	44.1	7.5	100(6829)	
		하	15.9	45.1	33.4	5.6	100 (447)	
		전체	11.5	35.0	43.2	10.3	100(9221)	

* p<0.05, ** p<0.01, *** p<0.001

학교 주변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도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00.641, p<.001, \chi^2=900.415, p<.001, \chi^2=396.082, p<.001$). 성별에 따라서는 거주지 주변의 교통사고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 주변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주변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 2명 중 1명 이상은 학교주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주변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자살률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19세가 인구 10만 명당 5.2명, 20-29세는 무려 24.4명이나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2011). 2000년에 비하여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자살원인을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IV-40 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연 령	전체		남		여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10-19세	3.8	5.2	4.2	5.3	3.3	5.0
20-29세	11.1	24.4	14.1	26.1	8.0	22.5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청소년의 자살률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과 관련하여, 전체 청소년의 34.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4.4%는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1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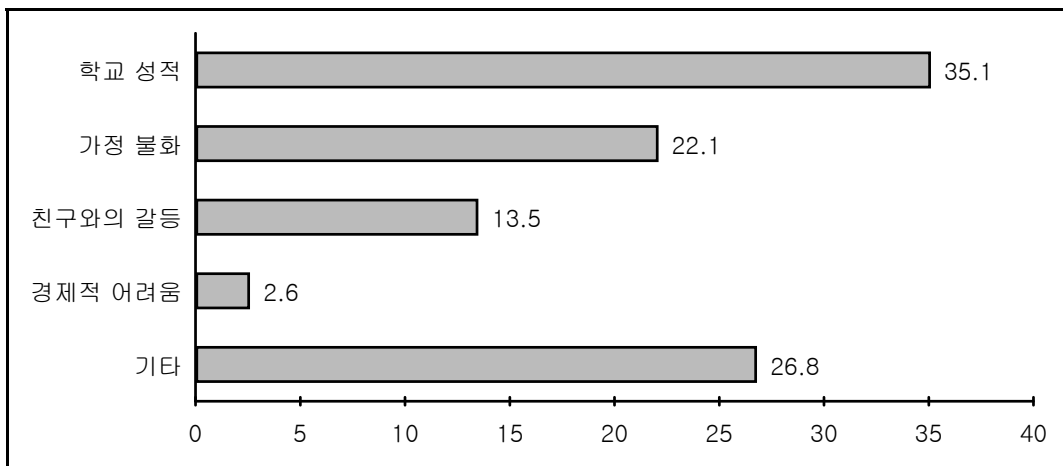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성별	남	72.2	24.6	3.3	100(3237)	133.280***
	여	57.9	36.4	5.7	100(2645)	
	전체	65.7	29.9	4.4	100(5882)	
교급	중	64.3	30.3	5.3	100(3071)	15.952**
	일반계고	67.0	29.7	3.4	100(2140)	
	전문계고	68.1	28.6	3.3	100 (674)	
	전체	65.7	29.9	4.4	100(5885)	
지역 규모	대도시	67.7	28.5	3.8	100(2578)	15.422**
	중소도시	64.7	30.1	5.2	100(2557)	
	읍/면	62.5	33.9	3.6	100 (749)	
	전체	65.7	29.9	4.4	100(5884)	
가족 유형	양부모	66.7	29.3	4.0	100(5194)	26.086***
	한부모	58.4	34.1	7.5	100 (548)	
	조손가정	53.3	43.3	3.3	100 (30)	
	기타	64.5	29.0	6.5	100 (93)	
	전체	65.8	29.8	4.4	100(5865)	
경제 수준	상	67.8	28.9	3.3	100 (643)	70.135***
	중	66.9	29.1	4.0	100(4779)	
	하	49.9	39.7	10.4	100 (413)	
	전체	65.8	29.9	4.3	100(5835)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자살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표 IV-41〉),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3.280$, $p<.001$, $\chi^2=15.952$, $p<.01$, $\chi^2=15.422$, $p<.01$, $\chi^2=26.086$, $p<.001$, $\chi^2=70.135$, $p<.00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42.1%, 남학생의 27.8%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는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더 많이 더 자주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 35.7%, 일반계 고등학생 33.0%, 전문계 고등학생 31.9%의 순으로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더 자주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46.6%, 한부모 가정 41.6%, 양부모 가정 33.3%의 청소년 순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7.5%로, 다른 가족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의 청소년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계층의 청소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하위층에 속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자주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그림 IV-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성적이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 불화 22.1%, 친구와의 갈등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9】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 <표 IV-42>와 같이 청소년의 교급, 가족유형,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71.382, p<.001, \chi^2=82.872, p<.001, \chi^2=136.617, p<.001$). 교급에 따른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은 학교 성적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반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불화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 중 38.1%는 학교성적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가정

불화를 자살을 생각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불화와 더불어 친구와의 갈등도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들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이 다른 가족유형에 속한 청소년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관련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상위층이나 중위층의 청소년들은 학교성적에, 하위층의 청소년들은 가정불화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IV-42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교 성적	가정 불화	친구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기타	전체(N)	χ^2
교 급	중	34.2	22.6	19.6	1.8	21.8	100(1083)	171.382***
	일반계고	43.1	16.9	5.2	2.7	32.0	100 (693)	
	전문계고	13.3	37.0	9.5	5.7	34.6	100 (211)	
	전체	35.1	22.1	13.5	2.6	26.7	100(1987)	
가족 유형	양부모	38.1	19.7	13.5	2.1	26.6	100(1708)	82.872***
	한부모	14.2	37.8	13.8	6.2	28.0	100 (225)	
	조손가정	21.4	28.6	28.6	0	21.4	100 (14)	
	기타	27.3	33.3	6.1	3.0	30.3	100 (33)	
	전체	35.1	22.1	13.5	2.6	26.8	100(1980)	
경제 수준	상	46.3	15.6	15.1	0.5	22.4	100 (205)	136.617***
	중	35.8	22.9	13.2	1.4	26.7	100(1555)	
	하	20.0	23.9	12.7	13.7	29.8	100 (205)	
	전체	35.2	22.2	13.4	2.6	26.6	100(1965)	

* $p < 0.05$, ** $p < 0.01$, *** $p < 0.001$

⑦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가정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과 빈도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16.0%가 가정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경험 유무와 빈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V-43>과 같다.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과 빈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5.001, p<.001, \chi^2=297.180, p<.001, \chi^2=83.206,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17.7%, 여학생의 14.1%가 가정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24.3%, 중학생 13.1%, 전문계 고등학생 12.0%, 일반계 고등학생 8.5%의 순으로 가정 내 다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아동의 가정 내에서 다친 경험률이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아동·청소년의 5명 중 1명 이상이 가정 내에서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위층이나 하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표 IV-43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성별	남	82.3	15.7	2.0	100(4991)	25.001***
	여	85.9	12.9	1.2	100(4258)	
	전체	84.0	14.4	1.6	100(9249)	
교급	초	75.7	21.4	2.9	100(3362)	297.180***
	중	86.9	12.2	0.9	100(3077)	
	일반계고	91.5	7.8	0.7	100(2138)	
	전문계고	88.0	10.9	1.1	100 (672)	
	전체	84.0	14.4	1.6	100(9249)	
경제 수준	상	77.8	19.5	2.7	100(1935)	83.206***
	중	85.7	13.1	1.2	100(6803)	
	하	84.1	12.8	3.1	100 (444)	
	전체	83.9	14.5	1.6	100(9182)	

* $p<0.05$, ** $p<0.01$, *** $p<0.001$

⑧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학교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과 빈도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16.7%가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률과 안전사고 발생 빈도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표 IV-44>와 같다.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과 빈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83.014, p<.001, \chi^2=92.064, p<.001, \chi^2=24.527, p<.001, \chi^2=57.939,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21.6%, 여학생의 11.1%가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20.9%, 중학생 16.3%, 일반계 고등학생 12.6%, 전문계 고등학생 11.0%의 순으로 학교 내 다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22.2%, 양부모 가정 17.0%, 한부모 가정 11.6%의 순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22.3%, 중위층 17.7%, 하위층 15.1%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표 IV-44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성 별	남	78.4	19.1	2.4	100(4980)	183.014***
	여	88.9	10.2	0.9	100(4251)	
	전체	83.3	15.0	1.7	100(9231)	
교 급	초	79.1	18.3	2.6	100(3351)	92.064***
	중	83.7	14.9	1.4	100(3072)	
	일반계고	87.4	11.7	0.9	100(2137)	
	전문계고	89.0	10.1	0.9	100 (672)	
	전체	83.3	15.0	1.7	100(9231)	
가 족 유 형	양부모	83.0	15.3	1.7	100(8312)	24.527***
	한부모	88.4	10.6	1.0	100 (674)	
	조손가정	77.8	16.9	5.3	100 (73)	
	기타	79.7	20.0	0.3	100 (129)	
	전체	83.3	15.0	1.7	100(9189)	
경 제 수 준	상	77.7	19.7	2.6	100(1929)	57.939***
	중	84.9	13.7	1.4	100(6791)	
	하	82.3	16.1	1.6	100 (442)	
	전체	83.2	15.0	1.7	100(9162)	

* p(0.05, ** p(0.01, *** p(0.001

⑨ 범죄 피해건수

이 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도의 청소년 범죄 피해건수는 총 64,058건이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 1,000명 당 12.0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 피해건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남자 청소년은 14.0건, 여자 청소년은 9.7건의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범죄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단위: 건, 명)

	청소년 전체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피해 건수	추계 인구수	피해율	피해 건수	추계 인구수	피해율	피해 건수	추계 인구수	피해율
1995	46,100	6,377,947	7.2	31,818	3,289,839	10.4	11,860	3,088,108	3.8
1996	43,108	6,341,088	6.8	31,818	3,267,876	9.7	11,290	3,073,212	3.7
1997	40,984	6,282,240	6.5	30,457	3,238,404	9.4	10,527	3,043,836	3.5
1998	34,616	6,203,033	5.6	24,824	3,199,252	7.8	9,792	3,003,781	3.3
1999	35,384	6,086,093	5.8	24,221	3,145,337	7.7	11,163	2,940,756	3.8
2000	39,993	5,913,854	6.8	27,087	3,063,136	8.8	12,906	2,850,718	4.5
2001	37,236	5,693,311	6.5	23,467	2,954,220	7.9	13,769	2,739,091	5.0
2002	30,858	5,454,415	5.7	19,462	2,838,545	6.9	11,396	2,615,870	4.4
2003	28,750	5,271,588	5.5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004	42,038	5,168,783	8.1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2005	43,849	5,151,104	8.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2006	44,881	5,180,108	8.7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2007	54,767	5,220,331	10.5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2008	61,260	5,277,860	11.6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2009	69,692	5,332,428	13.1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2010	64,058	5,360,424	12.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 출처: 홍영오(2008) 재구성.

원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2010년 자료는 2009-2011년도 범죄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 주: (1) 피해율: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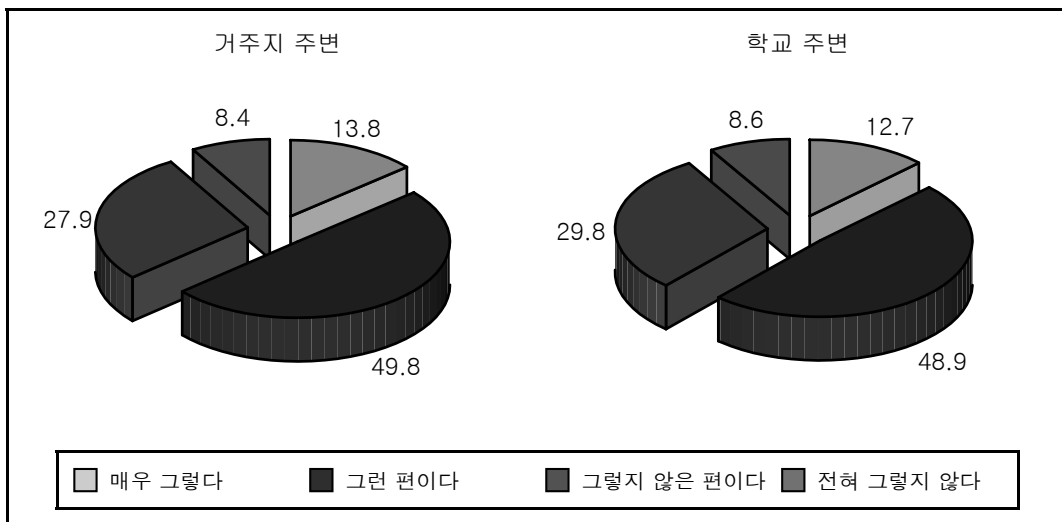
(2)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3)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20세

연도별로 청소년의 범죄피해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범죄 피해건수가 감소하다가 2000년도 초반 증감을 반복하였고, 2004년에 급격히 피해건수가 증가한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0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피해건수가 인구 1,000명당 5.5건이었던 것이 5년 후인 2010년에는 12.0건으로 증가하여, 7년 새 2배 이상 청소년 범죄피해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도별 청소년 범죄 피해건수의 증감의 경향성은 성별에 따른 범죄 피해건수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⑩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및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로, 조사 결과는 [그림 IV-20] 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 중 거주지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였으며, 학교 주변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6%로,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주변보다 거주지 주변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거주지 주변이나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도 30% 후반을 보이고 있어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표 IV-46 거주지 및 학교주변의 범죄 위험에 대한 안전성 인식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거주지 주변	성별	남	7.7	23.7	51.1	17.5	100(5018)	190.775***
		여	9.3	32.9	48.4	9.4	100(4278)	
		전체	8.4	27.9	49.8	13.8	100(9296)	
	교급	초	7.9	20.6	49.2	22.3	100(3380)	389.249***
		중	9.3	32.2	49.4	9.1	100(3089)	
		일반계고	8.0	32.8	50.8	8.4	100(2149)	
		전문계고	8.6	29.3	51.9	10.1	100 (677)	
		전체	8.4	27.9	49.8	13.8	100(9296)	
	경제 수준	상	8.0	20.2	47.0	24.8	100(1946)	341.678***
		중	8.1	29.2	51.9	10.8	100(6835)	
		하	14.7	40.9	33.9	10.5	100(447)	
		전체	8.4	27.9	50.0	13.8	100(9227)	
학교 주변	성별	남	8.1	25.8	50.7	15.4	100(5015)	128.324***
		여	9.1	34.6	46.6	9.7	100(4278)	
		전체	8.6	29.8	48.9	12.7	100(9292)	
	교급	초	6.4	17.9	51.2	24.5	100(3378)	873.036***
		중	9.9	36.1	47.4	6.7	100(3089)	
		고(일반계)	9.5	35.8	49.1	5.6	100(2149)	
		고(전문계)	10.6	42.0	42.7	4.7	100 (677)	
		전체	8.6	29.8	48.9	12.7	100(9292)	
	경제 수준	상	8.9	19.3	47.1	24.7	100(1946)	413.440***
		중	8.0	32.3	50.0	9.7	100(6832)	
		하	15.1	39.1	38.8	7.0	100 (447)	
		전체	8.5	29.9	48.8	12.8	100(9224)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청소년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는 <표 IV-4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거주지 주변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90.775$, $p<.001$, $\chi^2=389.249$, $p<.001$, $\chi^2=341.678$,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68.6%, 여학생의 57.8%가 자신의 거주지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거주지 주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1.5%, 전문계 고등학교 62.0%, 일반계 고등학교 59.2%, 중학생 58.5%의 순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중학생이 거주지 주변에 대한 범죄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거주지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2-3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의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71.8%, 중위층의 62.7%, 하위층의 44.4%가 자신의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2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의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도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8.324$, $p<.001$, $\chi^2=873.036$, $p<.001$, $\chi^2=413.440$,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66.1%, 여학생의 56.3%가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 주변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주지와 학교주변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학생이 더 큰 것은 실제 범죄 피해 건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98.6%가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고등학생들의 거의 50% 정도는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일 경우, 50% 이상이 학교 내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련 정책 및 대안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 영역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³⁹⁾ 정부에서는 2003년을 아동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러 부처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교통안전대책, 여가활동안전대책, 공산품안전대책, 안전교육관련정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통안전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의 부재,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 미고려 등으로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서는 신고요건을 완화시켜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신고차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2006년에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헬멧과 어린이 카시트 착용과 관련된 조문과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의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가활동안전대책으로는 추락위험이 높은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연 1회 이상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시설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시설을 평가하고 있어 형식적인

39)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책과 대안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에 실린,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경선, 2011)을 재구성한 것임.

제도에 그치고 있다.

공산품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규정으로 가정용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 의약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 품목을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지 않도록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감시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안전’ 교과목이 없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 교과 중 하나로 ‘안전과 건강’ 교과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자녀로 가진 부모에게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안전꾸러미를 배포하고 있으며,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위해 아동안전체험차량, 생활안전교육체험차량, 시민안전체험관, 어린이교통공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대개 아동들만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사고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과학적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를 이행할 때에는 여러 부처에서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중앙안전교육센터’ 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단일 교과목으로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교육 PASS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수련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수련시설 이용자도 사전 안전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중독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산품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구매 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개인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용 잠옷에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보건서비스

(1) 지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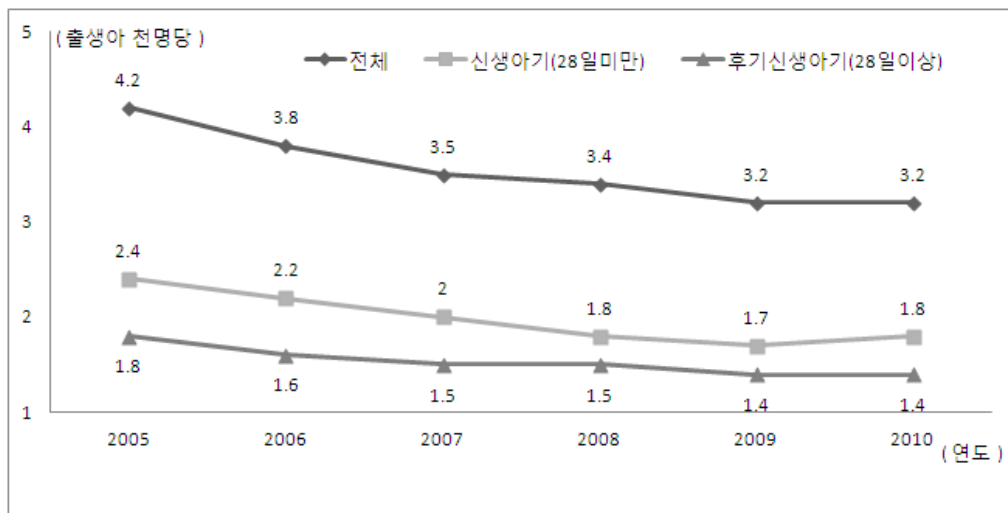
보건서비스는 협약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은 당사국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항에서는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3항에서는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의 폐지와 4항에서는 국제협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는 이 영역과 관련하여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출생아 산전수진율’,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중 산전 수진 횟수’, ‘저체중아 발생률’, ‘BCG신생아 예방접종 실적’, ‘예방 접종률’ 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 사망률’, ‘아동·청소년 사망률’, ‘건강검진율’,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의료 급여 대상자 수’ 를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영아 사망률

영아사망률은 [그림 IV-21] 에 제시되어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출생아수는 470,171명, 사망자수는 1,506명으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3.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일 미만의 신생아기에 해당하는 영아의 사망률(1.8명)이 28일 이상의 후기신생아기 영아 사망률(1.4명)보다 높게 나타나, 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영아들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호흡곤란(19.7%), 심장의 선천 기형(6.8%), 신생아의 기타 호흡기 병태(6.6%), 영아급사 증후군(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호흡과 관련된 원인으로 선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아직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영아들의 주변에 호흡을 방해하는 사물들을 가까이두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영아기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IV-21】 영아 사망률 추이(2005-2010)

* 출처: 통계청(2011), 2010년 사망원인통계

② 아동·청소년 사망률

아동·청소년의 사망률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되는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표 IV-47〉). 2010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0세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5.0명이었으며, 1-4세는 20.9명, 5-9세는 10.8명, 10-14세는 12.7명, 15-19세는 29.4명, 20-24세는 45.1명으로 나타나 0세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20-24세, 15-19세, 1-4세 순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영아를 제외한 아동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표 IV-48〉), 1-9세의 사망원인은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이들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운수사고와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률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10-19세의 사망원인은 2010년의 경우,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의적 자해(자살)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는 사망원인 2순위였으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08-2009년 사망원인의 1순위였던 운수사고의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9세의 사망원인도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순위는 변함이 없으나 다른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47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명)

연령별	2008		2009		2010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0세	1,580	345.5	1,415	325.7	1,506	345.0
1 - 4세	455	24.7	405	22.0	386	20.9
5 - 9세	386	13.4	384	14.0	277	10.8
10 - 14세	431	12.5	441	13.1	417	12.7
15 - 19세	1,004	29.9	1,073	31.2	1,034	29.4
20 - 24세	1,525	47.3	1,507	47.9	1,411	45.1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표 IV-48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연 령					
		1-9세		10-19세		20-29세	
		사망원인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원인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원인	사망률 (10만명당)
2008년	1순위	운수사고	3.2	운수사고	5.0	고의적 자해 (자살)	22.6
	2순위	약성신생물(암)	2.7	고의적 자해 (자살)	4.6	운수사고	10.4
	3순위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4	약성신생물(암)	2.9	약성신생물(암)	5.8
2009년	1순위	운수사고	3.2	운수사고	5.0	고의적 자해 (자살)	22.6
	2순위	약성신생물(암)	2.7	고의적 자해 (자살)	4.6	운수사고	10.4
	3순위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4	약성신생물(암)	2.9	약성신생물(암)	5.8
2010년	1순위	운수사고	2.8	고의적 자해 (자살)	5.2	고의적 자해 (자살)	24.4
	2순위	약성신생물(암)	2.1	운수사고	4.8	운수사고	9.0
	3순위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3	약성신생물(암)	3.0	약성신생물(암)	5.0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 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함.

③ 건강검진율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의 60.6%가 건강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IV-49>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율은 교급, 가족유형,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13.810, p<.001, \chi^2=26.447, p<.001, \chi^2=204.966, p<.001$).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76.8%, 중학생의 54.5%, 일반계 고등학교의 49.9%, 전문계 고등학교의 42.6%가 최근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건강검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1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이 2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71.7%, 양부모 가정 61.3%, 한부모 가정 53.0%의 순으로 건강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73.8%, 중위층의 57.9%, 하위층의 45.4%가 최근 1년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9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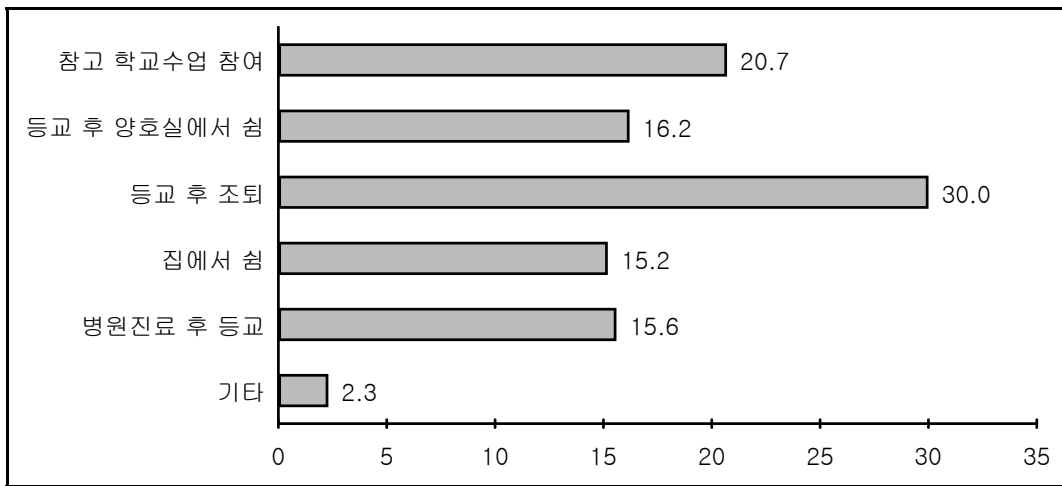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교급	초	76.8	23.2	100(3372)	613.810***
	중	54.5	45.5	100(3083)	
	일반계고	49.9	50.1	100(2142)	
	전문계고	42.6	57.4	100 (675)	
	전체	60.6	39.4	100(9273)	
가족 유형	양부모	61.3	38.7	100(8338)	26.447***
	한부모	53.0	47.0	100 (685)	
	조손가정	71.7	28.3	100 (75)	
	기타	52.0	48.0	100 (133)	
	전체	60.7	39.3	100(9231)	
경제 수준	상	73.8	26.2	100(1942)	204.966***
	중	57.9	42.1	100(6817)	
	하	45.4	54.6	100 (446)	
	전체	60.6	39.4	100(9205)	

* $p<0.05$, ** $p<0.01$, *** $p<0.001$

④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아동·청소년의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은 몸이 심하게 아플 경우 어떻게 하는지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몸이 심하게 아플 경우 아동·청소년들의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IV-22] 와 같이 학교에 갔다가 더 아파질 경우 조퇴한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픈 것을 참고 학교 수업에 끝까지 참여한다(20.7%), 학교에 갔다가 더 아파지면 양호실에서 쉰다(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갔다가 학교에 간다는 응답은 15.6%에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심하게 아플지라도 참고 견디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22]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아동·청소년)(%)

몸이 심하게 아플 경우의 대처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표 IV-5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7.108$, $p<.001$, $\chi^2=400.100$, $p<.001$, $\chi^2=39.122$, $p<.01$, $\chi^2=44.515$, $p<.001$).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몸이 심하게 아플 경우의 대처방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에 갔다가 더 아파질 경우 조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였지만, 계속 참으며 끝까지 학교 수업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 갔다가 양호실에서 쉰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급에 따라서도 등교 후 조퇴한다는 응답이 모든 교급에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하루 쉰다와 병원 진료 후 등교가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반면, 중·고등학생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은 아픈 것을 참고 학교 수업에 끝까지 참여한다는 응답을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 갔다가 더 아파지면 조퇴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 갔다가 더 아파지면 양호실에서 쉬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모든 계층에서 학교에 갔다가 더 아파지면 조퇴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지만, 상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병원에 갔다가 학교에 간다는 응답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반면, 중위층과 하위층의 아동·청소년들은 아픈 것을 참고 끝까지 학교 수업에 참여한다는 응답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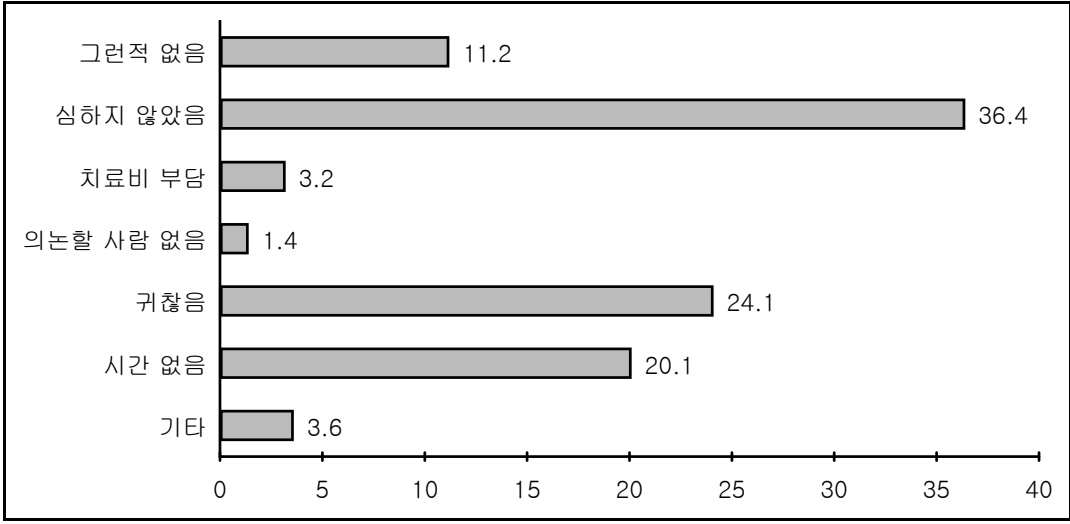
표 IV-50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아동·청소년)

(단위: %, 명)

구분	참음	등교후, 양호실	등교후, 조퇴	하루쉬	병원 진료 후 등교	기타	전체(N)	χ^2
성별	남	22.5	14.0	32.0	14.4	14.5	100(5003)	77.108***
	여	18.6	18.8	27.6	16.0	16.9	100(4264)	
	전체	20.7	16.2	30.0	15.2	15.6	100(9267)	
교급	초	16.1	18.4	23.1	21.0	19.0	100(3368)	400.100***
	중	21.1	16.6	32.3	13.0	15.2	100(3084)	
	일반계고	27.4	11.3	35.9	10.3	12.2	100(2140)	
	전문계고	21.4	19.4	35.0	11.2	11.7	100 (675)	
전체	20.7	16.2	30.0	15.2	15.6	100(9267)		
가족유형	양부모	21.0	15.8	29.9	15.0	15.9	100(8340)	39.122**
	한부모	17.3	19.5	30.1	18.5	12.2	100 (683)	
	조손가정	20.0	27.0	25.5	10.7	15.0	100 (73)	
	기타	19.8	18.4	32.7	9.6	13.6	100 (131)	
	전체	20.7	16.2	29.9	15.1	15.6	100(9227)	
경제수준	상	17.8	16.8	27.6	16.7	18.2	100(1939)	44.515***
	중	21.5	16.3	30.4	14.5	15.3	100(6817)	
	하	22.7	14.1	32.3	16.4	11.1	100 (443)	
	전체	20.8	16.3	29.9	15.0	15.7	100(9200)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청소년들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플 때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23] 에 제시되어 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은 심하게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36.4%로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귀찮아서 24.1%, 시간이 없어서 20.1%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IV-23】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

표 IV-51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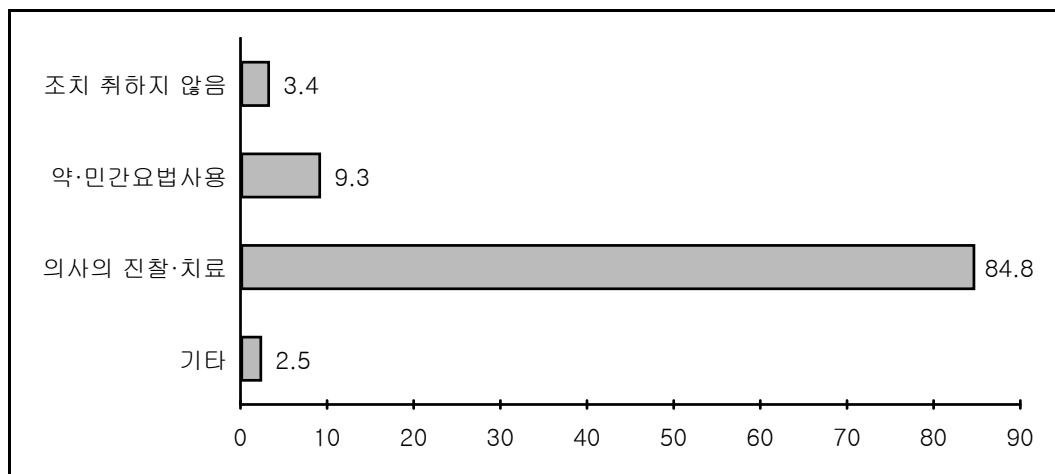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그런적 없음	심하지 않았음	치료비 부담	의논할 사람 없음	귀찮음	시간 없음	기타	전체(N)	χ^2
교 급	초	20.3	44.1	2.4	1.5	7.5	20.5	3.6	1170.614***
	중	8.9	33.3	3.3	1.3	30.4	19.5	3.3	
	일반계고	3.3	30.7	3.1	1.2	35.5	21.9	4.2	
	전문계고	1.9	30.4	6.6	2.3	40.7	14.5	3.6	
	전체	11.2	36.4	3.2	1.4	24.1	20.1	3.6	
경 제 수 준	상	19.0	39.6	1.1	1.6	13.4	22.0	3.2	562.227***
	중	9.6	36.2	2.9	1.3	26.6	19.8	3.6	
	하	1.8	26.2	16.0	3.3	31.3	15.7	5.8	
	전체	11.2	36.4	3.2	1.4	24.1	20.1	3.6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청소년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플 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70.614$, $p<.001$, $\chi^2=562.227$, $p<.001$). 교급에 따른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그런적 없음, 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을 많이 하였으며, 중학생은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귀찮아서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아플 때 병원을 찾는 비율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고등학생들은 병원 치료가 필요해도 일단은 참고 견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런적 없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계층에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층의 경우,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계층에서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 몸이 심하게 아플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어떠한 대처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24] 에 제시되어 있다. 84.8%의 부모 또는 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심하게 아플 경우,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3%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플 경우, 약이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보호자)(%)

아동·청소년들이 심하게 아플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들의 대처방식은 아동·청소년들의 교급, 가족유형,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45.225, p<.001, \chi^2=53.922, p<.001, \chi^2=63.027, p<.001$), 그 결과는 <표 IV-52>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대처방법 중에서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과 진료를 받게 한다’ 와 ‘약이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한다’ 가 교급이나 가족유형, 가정의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지만, 각 변수별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계 고등학생이거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거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아플 때 약이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과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아동일 경우, 심하게 아파도 부모나 보호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2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보호자)

(단위: %, 명)

구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음	약/민간요법으로 해결	의사의 진찰/치료 받음	기타	전체(N)	χ^2	
교 급	초	2.0	8.8	86.3	2.9	100(3356)	45.225***
	중	4.0	9.0	84.5	2.5	100(3056)	
	일반계고	4.5	9.5	83.8	2.2	100(2119)	
	전문계고	4.1	12.5	81.6	1.9	100 (671)	
	전체	3.4	9.3	84.8	2.5	100(9201)	
가 족 유 형	양부모	3.1	9.1	85.5	2.3	100(8283)	53.922***
	한부모	5.7	9.5	80.2	4.6	100 (676)	
	조손가정	7.5	13.2	78.3	1.0	100 (70)	
	기타	8.3	16.9	70.9	3.9	100 (132)	
	전체	3.4	9.3	84.8	2.5	100(9161)	
경 제 수 준	상	2.8	7.1	87.1	3.0	100(1930)	63.027***
	중	3.3	9.6	84.8	2.2	100(6763)	
	하	7.0	14.5	73.8	4.7	100 (440)	
	전체	3.4	9.3	84.8	2.5	100(9134)	

* $p<0.05$, ** $p<0.01$, *** $p<0.001$

⑤ 의료급여 대상자 수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게 있어 의료비는 부담이 된다. 국가는 1977년부터 의료급여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실린 의료급여 대상자를 연령별로 분류해보았다. 그 결과 2010년도의 0세-24세까지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508,4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5세-19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190,850명(37.5%), 10세-14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136,668명(26.9%)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이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증가하다 2009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15세-19세와 10-14세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3 의료급여 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002	3,806	32,968	85,390	121,081	154,285	61,393
2003	4,428	33,012	88,496	126,586	148,669	61,932
2004	5,261	34,487	92,169	137,618	149,950	64,351
2005	8,258	67,917	141,744	165,317	159,314	69,113
2006	5,210	61,829	148,713	184,578	172,483	68,080
2007	7,070	53,523	141,445	190,788	185,232	66,647
2008	6,801	46,386	129,235	190,752	197,224	69,333
2009	5,910	29,959	73,023	146,222	190,204	76,037
2010	6,290	29,296	63,926	136,668	190,850	81,384

*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원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3) 관련 정책 및 대안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영아 사망률, 아동·청소년 사망률, 건강검진을,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의료급여 대상자 수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보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검진율이나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 바, 이들에 대한 정책과 대안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로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다⁴⁰⁾.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방적·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로, 임산부, 0-12세 아동·청소년,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교육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암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도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은정(2011)은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의료보장 강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수준이 낮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거점의료기관(의료사회복지 조직)을 지정하여 거점의료기관 및 지자체(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혹은 의료급여 대상 아동 가운데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료하며 필요시 상위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의료비 지원은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비급여 부분 등은 민간의료비 지원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의료안전망기금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 통합, 일반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검토하고, 의료비 장기저리융자사업 등 추가적 안전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적용되는 의료급여에서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40) 보건서비스 관련 정책과 대안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에 실린,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정책과 대안」(강은정, 2011)을 재구성한 것이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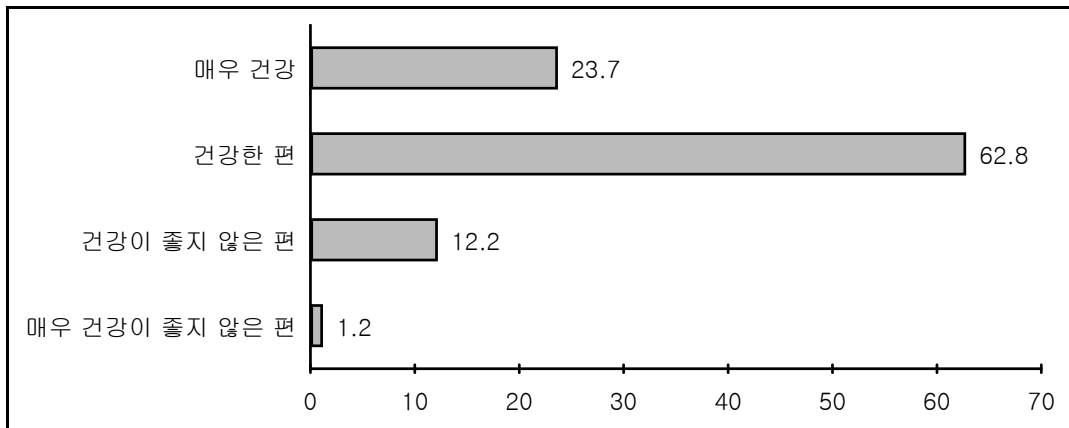
(1) 지표의 의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2010년에 개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에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추가된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비만율’, ‘운동실천율’, ‘아침식사 결식률’,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 지표를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IV-25] 와 같이 아동·청소년들 중 62.8%는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매우 건강하다고 23.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합하면 아동·청소년들의 86.5%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5】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5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45.208, p<.001, \chi^2=37.009, p<.001, \chi^2=596.782, p<.001$). 교급에 따른 주관적 건강평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92.4%, 중학생의 85.4%, 일반계 고등학생의 81.1%, 전문계 고등학생의 79.3%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교급에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평가가 좋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보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 중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응답한 비율이 다른 가족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일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상위층의 경우 42.4%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5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교급	초	1.0	6.6	58.4	34.0	100(3359)	445.208***
	중	1.2	13.4	64.5	20.9	100(3088)	
	일반계고	1.4	17.4	65.9	15.2	100(2146)	
	전문계고	2.0	18.7	66.9	12.4	100 (676)	
	전체	1.2	12.2	62.8	23.7	100(9270)	
가족 유형	양부모	1.2	12.0	62.6	24.2	100(8338)	37.009***
	한부모	1.3	16.3	66.4	16.0	100 (684)	
	조손가정	4.6	8.2	60.8	26.5	100 (74)	
	기타	1.6	8.8	64.1	25.4	100 (132)	
	전체	1.2	12.3	62.9	23.6	100(9228)	
경제 수준	상	1.1	5.5	51.0	42.4	100(1937)	596.782***
	중	1.0	13.4	66.3	19.2	100(6818)	
	하	4.5	23.7	60.7	11.1	100 (447)	
	전체	1.2	12.3	62.8	23.7	100(9201)	

* $p<0.05$, ** $p<0.01$, *** $p<0.001$

②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는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및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은 매우 관심이 많다는 36.7%, 관심이 많은 편이다에 48.1% 응답하여, 전체 아동·청소년의 84.8%가 부모 및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결과는 <표 IV-55>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는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7.796, p<.001, \chi^2=658.543, p<.001, \chi^2=38.768, p<.001, \chi^2=147.942, p<.001, \chi^2=640.671, p<.001$).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5.6%)이 여학생(84.0%)보다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관심이 많은 편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전체(N)	χ^2
성별	남	2.0	12.4	47.5	38.1	100(5011)	17.796***
	여	1.5	14.6	48.9	35.1	100(4275)	
	전체	1.7	13.4	48.1	36.7	100(9286)	
교급	초	1.4	6.6	40.7	51.3	100(3373)	658.543***
	중	1.8	14.3	51.2	32.7	100(3088)	
	일반계고	1.7	19.4	53.8	25.2	100(2149)	
	전문계고	3.8	24.1	53.1	19.0	100 (676)	
	전체	1.7	13.4	48.1	36.7	100(9286)	
지역 규모	대도시	1.5	11.9	46.6	40.0	100(3926)	38.768***
	중소도시	1.9	14.4	49.5	34.3	100(4128)	
	읍/면	2.2	15.0	48.4	34.4	100(1232)	
	전체	1.7	13.4	48.1	36.7	100(9286)	
가족 유형	양부모	1.5	12.5	48.4	37.7	100(8355)	147.942***
	한부모	3.7	24.4	47.7	24.3	100 (682)	
	조손가정	6.2	14.9	41.1	37.8	100 (75)	
	기타	6.8	13.6	40.5	39.0	100 (133)	
	전체	1.7	13.4	48.1	36.7	100(9245)	
경제 수준	상	1.2	5.4	35.7	57.7	100(1943)	640.671***
	중	1.6	14.5	52.1	31.8	100(6828)	
	하	6.3	29.9	42.8	21.1	100 (447)	
	전체	1.7	13.3	48.2	36.7	100(9218)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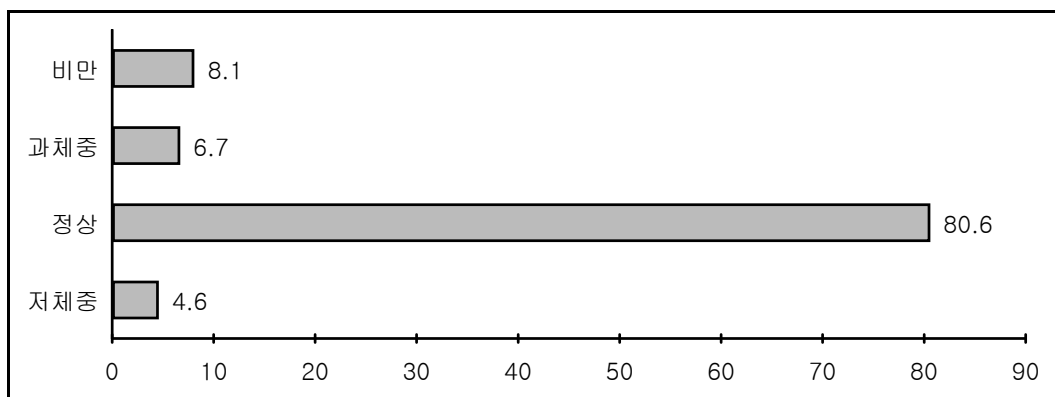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92.0%, 중학생의 83.9%, 일반계 고등학생의 79.0%, 전문계 고등학생의 72.1%가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은 부모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86.1%, 한부모 가정의 72.0%, 조손가정의 78.9%가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양부모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에 속한 아동·청소년 순으로 부모 혹은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93.4%, 중위층의 83.9%, 하위층의 63.9%의 아동·청소년이 부모 및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및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③ 비만율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BMI)가 96백분위수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85백분위수 이상 ~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 5백분위수 이상 ~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 5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⁴¹⁾.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에서 조사된 자기보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80.6%가 정상 체중, 8.1%가 비만, 6.7%가 과체중, 4.6%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비만율(%)

41) 세계적으로 연령에 따른 BMI 백분위수가 아동·청소년기에서의 비만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표 IV-56 아동·청소년의 비만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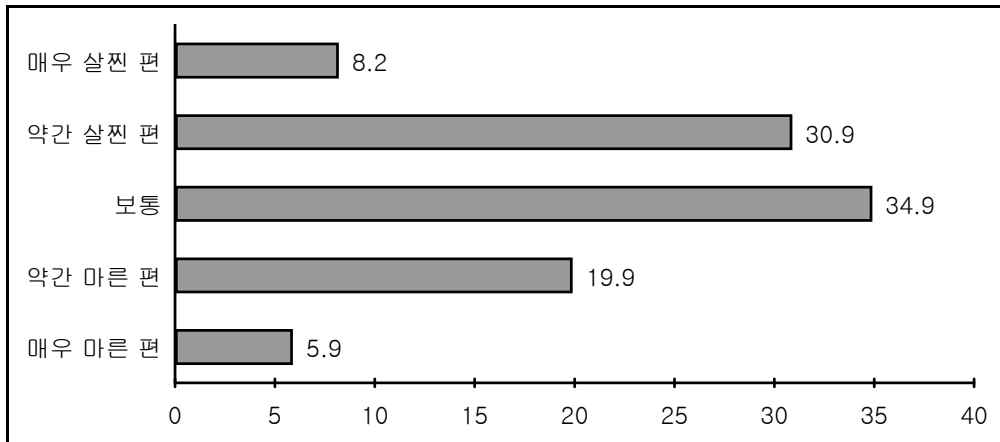
구분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전체(N)	χ^2
성별	남	3.9	79.6	6.0	10.5	100(4937)	96.051***
	여	5.4	81.9	7.6	5.2	100(4130)	
	전체	4.6	80.6	6.7	8.1	100(9067)	
교급	초	5.0	78.6	11.2	5.1	100(3273)	314.632***
	중	3.5	81.9	6.6	7.9	100(3021)	
	일반계고	4.8	81.8	1.3	12.1	100(2123)	
	전문계고	6.7	80.6	2.1	10.5	100 (650)	
	전체	4.6	80.6	6.7	8.1	100(9067)	
가족 유형	양부모	4.6	80.8	6.7	7.8	100(8182)	17.092*
	한부모	4.7	77.0	7.1	11.2	100 (649)	
	조손가정	2.1	79.8	6.9	11.2	100 (72)	
	기타	4.2	84.7	1.7	9.4	100 (125)	
	전체	4.6	80.6	6.7	8.1	100(9028)	
경제 수준	상	5.0	78.7	10.0	6.4	100(1900)	55.707***
	중	4.5	81.4	5.9	8.2	100(6661)	
	하	5.7	77.7	5.0	11.5	100 (438)	
	전체	4.6	80.6	6.7	8.0	100(8999)	

* $p<0.05$, ** $p<0.01$, *** $p<0.001$

아동·청소년의 비만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표 IV-56>에 제시되어 있는데,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아동·청소년의 비만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6.051$, $p<.001$, $\chi^2=314.632$, $p<.001$, $\chi^2=17.092$, $p<.05$, $\chi^2=55.707$, $p<.001$). 성별에 따른 비만도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정상 체중과 저체중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비만율은 여학생의 약 2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저체중인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전문계 고등학생, 초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체중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만율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 전문계 고등학생은 비만율과 저체중률에서 다른 교급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10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과체중

비율이 중위층이나 하위층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많았으나, 비만율은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위층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이 본인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IV-27] 에 제시되어 있는데,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34.9%에 불과했다. 약간 살찐 편이라는 응답은 30.9%, 약간 마른 편은 19.9%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의 비만율과 비교해 보면, 비만과 매우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과체중 비율과 약간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7%, 30.9%, 정상체중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0.6%, 34.9%로 나타나, 정상 체중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자신이 살이 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7】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률(%)

아동·청소년들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57>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하여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57.356, p<.001, \chi^2=104.287, p<.001, \chi^2=52.526, p<.001, \chi^2=84.461, p<.001$).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여학생의 43.6%, 남학생의 35.6%가 자신이 살찐 편이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이 살이 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매우 살찐 편이라는 응답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만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매우 마른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저체중율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를 종합적으

로 해석해본다면, 여학생은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더 자신을 살이 찼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7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살찐 편이다	매우 살찐 편이다	전체(N)	χ^2
성별	남	8.0	22.5	34.0	27.9	7.7	100(5016)	157.356***
	여	3.5	16.8	36.1	34.6	9.0	100(4252)	
	전체	5.9	19.9	34.9	30.9	8.2	100(9268)	
교급	초	5.6	20.2	39.8	28.8	5.6	100(3379)	104.287***
	중	6.2	19.7	33.4	31.3	9.4	100(3086)	
	일반계고	5.7	18.9	31.2	33.8	10.4	100(2147)	
	전문계고	7.4	22.7	29.3	31.2	9.3	100 (656)	
	전체	5.9	19.9	34.9	30.9	8.2	100(9268)	
가족 유형	양부모	5.7	20.0	35.5	30.9	7.8	100(8354)	52.526***
	한부모	7.2	18.6	29.2	31.2	13.7	100 (666)	
	조손가정	6.3	16.2	35.3	32.6	9.6	100 (75)	
	기타	13.4	22.5	27.3	30.2	6.5	100 (133)	
	전체	5.9	19.9	34.9	30.9	8.3	100(9228)	
경제 수준	상	5.5	20.6	39.6	28.8	5.5	100(1945)	84.461***
	중	5.9	19.7	34.3	31.6	8.5	100(6809)	
	하	8.8	19.4	24.5	31.7	15.6	100 (446)	
	전체	6.0	19.9	35.0	31.0	8.2	100(9200)	

* $p<0.05$, ** $p<0.01$, *** $p<0.001$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등학생 44.2%, 중학생 40.7%, 전문계 고등학생 40.5%, 초등학생 34.4%의 순으로 자신이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중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약 10명 중 1명이 자신이 매우 살찐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만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제중과 비만의 비율을 합한 것보다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 비만율과 매우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본다면 실제로는 자신의 체중이 정상이나 자신이 약간 살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 44.9%, 조손가정 42.2%, 양부모 가정 38.8%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자신이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비율을 비만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 과체중율과 비만율의 합보다 훨씬 더 컸다. 매우 살찐 편이다의 응답율과 비만율을 비교해 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두 값이 같아 자신의 실제 체형과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이미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반면,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매우 살찐 편이다의 비율이,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은 비만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실제 체형과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이미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의 아동일수록 자신이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매우 살찐 편이라는 응답율과 비만율을 비교해 보면, 상위층의 아동·청소년들은 실제 비만율이 더 높았고, 하위층의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살찐 편이라는 응답율이 더 높아, 이 두 집단의 아동·청소년들은 실제 자신의 체형과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이미지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④ 운동실천율

아동·청소년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8%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1-2회 운동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IV-58>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규칙적 운동실천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83.0%, 여학생의 69.5%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규칙적 운동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일주일에 3-4회 운동한다는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여학생은 일주일에 1-2회 운동한다는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90.3%, 중학생의 73.0%, 일반계 고등학생의 63.0%, 전문계 고등학생의 60.5%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40.6%가 일주일에 3-4회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운동한다는 비율이 20%대로 가장 높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자주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 82.8%, 양부모 가정 77.2%, 한부모 가정 77.5% 순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일주일에 1-2회 운동을 한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는데, 양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의 2명 중 1명 이상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학교 체육시간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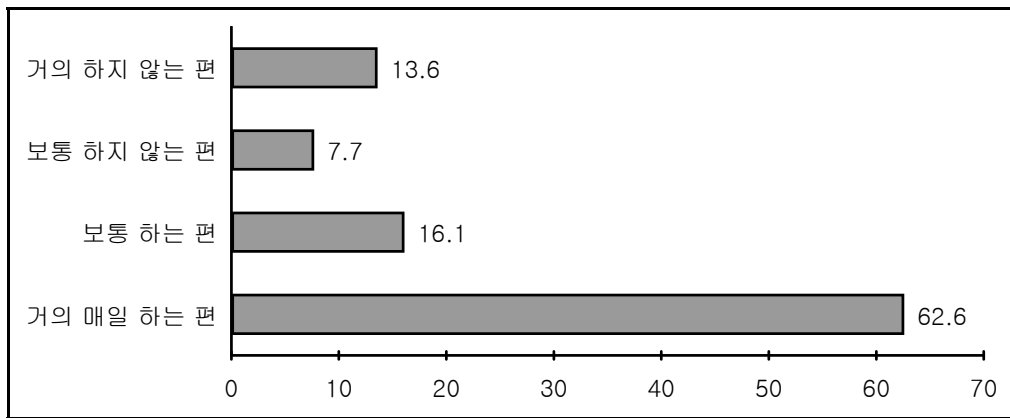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4회 정도	전체(N)	χ^2
성별	남	17.0	16.8	30.1	36.2	100(5001)	588.799***
	여	30.5	25.3	27.5	16.7	100(4269)	
	전체	23.2	20.7	28.9	27.2	100(9271)	
교급	초	9.7	16.9	32.8	40.6	100(3365)	901.677***
	중	27.0	23.8	28.1	21.2	100(3084)	
	일반계고	37.0	21.4	24.7	16.9	100(2145)	
	전문계고	29.5	23.5	26.1	20.8	100 (677)	
	전체	23.2	20.7	28.9	27.2	100(9271)	
가족 유형	양부모	22.8	20.7	29.0	27.5	100(8341)	21.949**
	한부모	29.6	21.2	26.0	23.2	100 (684)	
	조손가정	17.2	22.3	32.4	28.1	100 (75)	
	기타	21.6	18.7	33.3	26.4	100 (130)	
	전체	23.2	20.7	28.9	27.2	100(9229)	
경제 수준	상	12.1	16.1	32.6	39.2	100(1941)	334.311***
	중	25.4	22.1	28.3	24.2	100(6818)	
	하	37.5	18.7	21.4	22.4	100 (444)	
	전체	23.2	20.7	28.8	27.3	100(9203)	

* $p < 0.05$, ** $p < 0.01$, *** $p < 0.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87.9%, 중위층 74.6%, 하위층 62.5%의 순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건강을 위해 별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이 상위층의 경우 71.8%나 되는 반면 하위층의 경우 43.8%인 것으로 나타나 상위층과 하위층의 운동 빈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⑤ 아침식사 결식률

아동·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지의 여부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에 대한 결과는 [그림 IV-28] 과 같다. 62.6%의 아동·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하지 않거나 보통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8】 아침식사 결식률(%)

아침식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IV-59>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617, p<.01, \chi^2=344.946, p<.001, \chi^2=176.690, p<.001, \chi^2=175.381, p<.001$).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22.1%, 남학생의 20.6%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14.0%, 중학생의 22.6%, 일반계 고등학생의 25.3%, 전문계 고등학생의 38.3%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5명 중 1명 이상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3-4명 중 1명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 39.5%, 조손가정 27.4%, 양부모 가정 19.7%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3-4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 37.4%, 중위층 22.4%, 상위층 13.7%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여학생일수록, 교급이 올라갈수록,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위층일수록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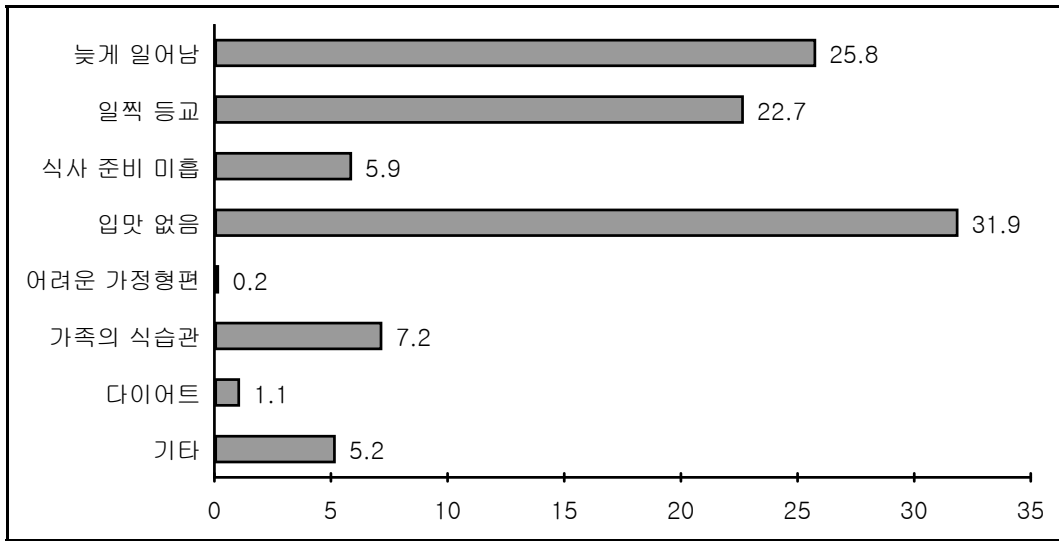
표 IV-59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전체(N)	χ^2
성별	남	13.2	7.4	15.2	100(5011)	12.617**
	여	14.1	8.0	17.1	100(4265)	
	전체	13.6	7.7	16.1	100(9275)	
교급	초	8.2	5.8	13.5	100(3374)	344.946***
	중	14.5	8.1	18.0	100(3082)	
	일반계고	16.2	9.1	16.7	100(2146)	
	전문계고	28.5	9.8	17.9	100 (674)	
	전체	13.6	7.7	16.1	100(9275)	
가족유형	양부모	12.5	7.2	15.8	100(8343)	176.690***
	한부모	26.1	13.4	18.4	100 (683)	
	조손가정	18.2	9.2	16.5	100 (75)	
	기타	17.4	7.3	20.4	100 (133)	
	전체	13.7	7.7	16.1	100(9234)	
경제수준	상	7.9	5.8	14.7	100(1943)	175.381***
	중	14.3	8.1	16.5	100(6819)	
	하	27.9	9.5	14.7	100 (445)	
	전체	13.6	7.7	16.1	100(9207)	

* $p < 0.05$, ** $p < 0.01$, *** $p < 0.001$

아침식사 결식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 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29] 와 같다. 아동·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31.9%가 이러한 이유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늦게 일어남(25.8%),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22.7%) 순이었다.



【그림 IV-2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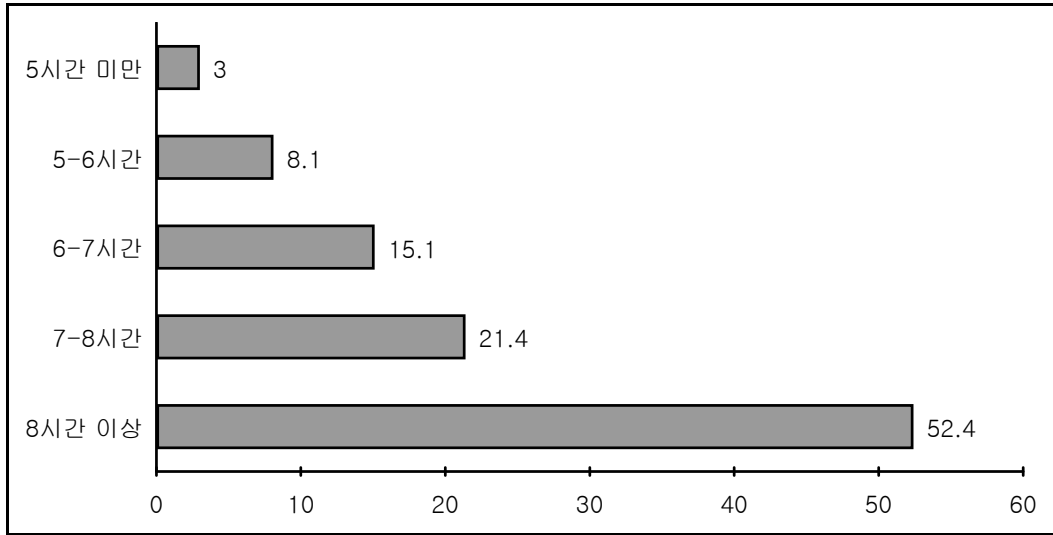
⑥ 수면시간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 가는 날(평일)에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총 수면시간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취침시간은 밤 11시 37분($SD=1.22$)이었으며, 평균 기상시간은 아침 6시 58분($SD=0.59$)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본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53분($SD=1.59$)이었다.

[그림 IV-30] 은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을 시간대별로 살펴본 결과로, 8시간 이상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7-8시간 자는 아동·청소년은 21.4%, 6-7시간은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면 재단에서는 5-10세의 적정 수면시간을 10-11시간, 10-17세의 적정 수면시간을 8시간 30분에서 9시간 20분이라고 발표하였는데,⁴²⁾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약 50%는 평일에 수면부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IV-60>에 제시되어 있는데,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079.694$, $p<.001$, $\chi^2=98.377$, $p<.001$, $\chi^2=521.691$, $p<.001$). 교급에 따른 수면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89.8%가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50.4%, 7-8시간이 32.5%, 6-7시간이 12.2%로 나타났다.

42) <http://www.sleepfoundation.org/article/how-sleep-works/how-much-sleep-do-we-really-need> (검색일: 2011. 8. 30)



【그림 IV-30】 평일 수면시간(%)

표 IV-60 평일 평균 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6-7시간	7-8시간	8시간 이상	전체(N)	χ^2
교급	초	0	0.3	1.2	8.7	100(3381)	5079.694***
	중	0.9	4.0	12.2	32.5	100(3090)	
	일반계고	9.9	24.3	36.1	22.7	100(2149)	
	전문계고	5.2	14.7	30.3	29.8	100 (677)	
	전체	3.0	8.1	15.1	21.4	100(9297)	
가족유형	양부모	2.8	7.9	14.8	21.3	100(8363)	98.377***
	한부모	5.5	12.0	21.0	23.7	100 (685)	
	조손가정	3.0	4.3	6.8	14.7	100 (75)	
	기타	1.5	2.5	10.6	22.6	100 (133)	
	전체	3.0	8.1	15.1	21.4	100(9256)	
경제수준	상	1.8	3.8	7.3	13.7	100(1947)	521.691***
	중	3.3	8.7	16.8	23.2	100(6835)	
	하	4.2	16.5	22.8	27.7	100 (447)	
	전체	3.0	8.0	15.1	21.4	100(9229)	

* $p < 0.05$, ** $p < 0.01$, *** $p < 0.001$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6-7시간이 36.1%, 5-6시간이 24.3%, 7-8시간이 22.7%였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5시간 미만으로 잔다는 학생도 9.9%나 차지하였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6-7시간이 30.3%, 7-8시간이 29.8%, 8시간 이상이 20.0%였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교급의 아동·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의 수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생이 적정 수면시간인 8시간 30분 미만으로 잠을 자고 있어 항상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의 50% 이상은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8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아동·청소년들의 73.5%가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층의 경우 6-8시간 수면을 취한다는 경우가 과반이었다.

⑦ 스트레스 인지율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⁴³⁾ 자료를 참고하여 중·고등학생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을 파악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최근 1년간의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가정불화, 친구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나 신체 조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등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을 조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평균 스트레스 인지율은 43.4%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2명 중 1명 이상이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 혹은 진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새로운 학교생활에의 적응,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학업 및 진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3)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매년 수행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정부 승인 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58호)임. 2009년에 실시된 제5차 조사는 2008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생 중 모집단 층화표집비례분법을 사용하여 표본학교를 배분한 후, 집락추출법을 통해 추출된 75,066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컴퓨터실 일괄 조사)임.

표 IV-61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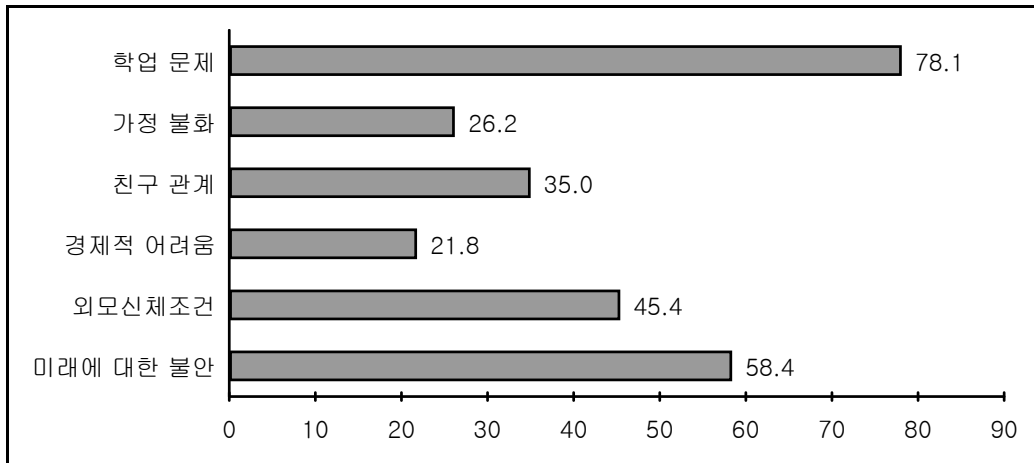
(단위: %)

연 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5	41.3	43.3	45.3	49.7	49.6	-
2006	39.9	42.9	44.4	49.2	50.4	54.3
2007	41.7	43.2	45.1	47.2	48.9	54.2
2008	40.5	40.3	41.0	43.1	47.0	52.0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 출처: 질병관리본부(2010)(1년 주기),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정의: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 정도를 원인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31] 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8.1%의 비율을 보인 학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58.4%), 친구관계(35.0%)의 순이었다.



【그림 IV-31】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

아동·청소년들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교급에 따라 분석해 보면(〈표 IV-62〉), 학업 문제, 가정 불화, 친구관계, 경제적 어려움, 외모·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모든 스트레스

유형에서 교급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1486.024, p<.001, \chi^2=408.662, p<.001, \chi^2=167.777, p<.001, \chi^2=946.385, p<.001, \chi^2=1179.030, p<.001, \chi^2=3069.117, p<.001$). 학업 문제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 92.6%, 중학생 87.3%, 전문계 고등학생 82.8%, 초등학생 59.4%의 순으로 학업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2명 중 1명은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도 2명 중 1명 이상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가정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율은 전문계 고등학생이 42.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일반계 고등학생 29.9%, 중학생 27.3%, 초등학생 19.5%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교급이 높을수록 가정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은 다른 교급에 비해 가정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었고, 이는 초등학생의 2배 수준이었다.

친구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39.7%, 일반계 고등학생 36.2%, 중학생 35.5%, 초등학생 33.9%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 역시 교급이 올라갈수록 친구와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10명 중 1명 이상으로 다른 교급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47.0%, 일반계 고등학생 31.9%, 중학생 19.9%, 초등학생 11.8%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아,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원인으로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외모나 신체를 가꾸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63.5%, 일반계 고등학생 59.6%, 중학생 51.7%, 초등학생 26.9%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아, 교급이 올라갈수록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2명 중 1명 이상이 외모 및 신체 조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신경써야 하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 풍토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IV-6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교급별)

(단위: %, 명)

구분		전혀 받지 않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많이 받는다	전체(N)	χ^2
학업 문제	초	19.3	21.2	39.7	19.7	100(3379)	1486.024***
	중	4.2	8.4	40.5	46.8	100(3084)	
	일반계고	3.3	4.2	34.8	57.8	100(2147)	
	전문계고	4.4	12.9	41.5	41.3	100 (676)	
	전체	9.5	12.4	39.0	39.1	100(9286)	
가정 불화	초	54.9	25.6	14.6	4.9	100(3372)	408.662***
	중	37.8	35.0	20.5	6.8	100(3067)	
	일반계고	35.1	35.0	23.3	6.6	100(2140)	
	전문계고	25.7	31.8	32.6	9.9	100 (675)	
	전체	42.5	31.3	19.9	6.3	100(9254)	
친구 관계	초	37.1	29.0	24.9	9.0	100(3374)	167.777***
	중	28.2	37.7	26.5	7.7	100(3081)	
	일반계고	25.7	38.1	30.1	6.1	100(2145)	
	전문계고	23.5	36.8	28.2	11.5	100 (675)	
	전체	30.5	34.6	26.9	8.1	100(9275)	
경제적 어려움	초	64.0	24.1	8.7	3.1	100(3365)	946.385***
	중	44.6	35.5	16.3	3.6	100(3080)	
	일반계고	32.3	35.9	25.6	6.3	100(2149)	
	전문계고	22.3	30.7	36.7	10.3	100 (676)	
	전체	47.2	31.1	17.2	4.6	100(9271)	
외모 신체 조건	초	45.0	28.1	19.9	7.0	100(3373)	1179.030***
	중	19.2	29.1	39.4	12.3	100(3081)	
	일반계고	12.5	27.8	43.3	16.3	100(2145)	
	전문계고	10.5	26.0	41.9	21.6	100 (676)	
	전체	26.4	28.2	33.4	12.0	100(9275)	
미래에 대한 불안	초	50.4	23.6	18.3	7.7	100(3366)	3069.117***
	중	13.5	19.7	39.1	27.6	100(3084)	
	일반계고	3.8	6.9	40.2	49.1	100(2149)	
	전문계고	4.2	13.0	37.4	45.4	100 (676)	
	전체	24.0	17.7	31.7	26.7	100(9275)	

* $p < 0.05$, ** $p < 0.01$, *** $p < 0.001$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 89.3%, 전문계 고등학생 82.8%, 중학생 66.7%, 초등학생 26.0%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아, 교급이 올라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러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졸업 후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졌다. 학업 스트레스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고, 2순위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 스트레스, 초등학생은 친구 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친구 관계 스트레스의 증가는 미미한 데 반해, 학업이나 진로 스트레스는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⑧ 행복도

이 지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행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 중 74.6%는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를 변인별로 분석한 <표 IV-63>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는 교급, 가족유형,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44.132, p<.001, \chi^2=66.485, p<.001, \chi^2=817.926, p<.001$).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84.7%, 중학생의 72.4%, 전문계 고등학생의 66.8%, 일반계 고등학생의 64.3%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행복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스트레스 인지율이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정 75.5%, 조손가정 70.3%, 한부모 가정 63.4% 순으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층과 하위층의 경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2배나 차이가 났으며, 하위층의 15.5%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정형편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행복도와 관련하여, 행복하지 않다⁴⁴⁾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2] 와 같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요인은 36.3%의 응답률을 보인 학업부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18.6%), 화목하지 않은 가정(11.0%) 순으로 나타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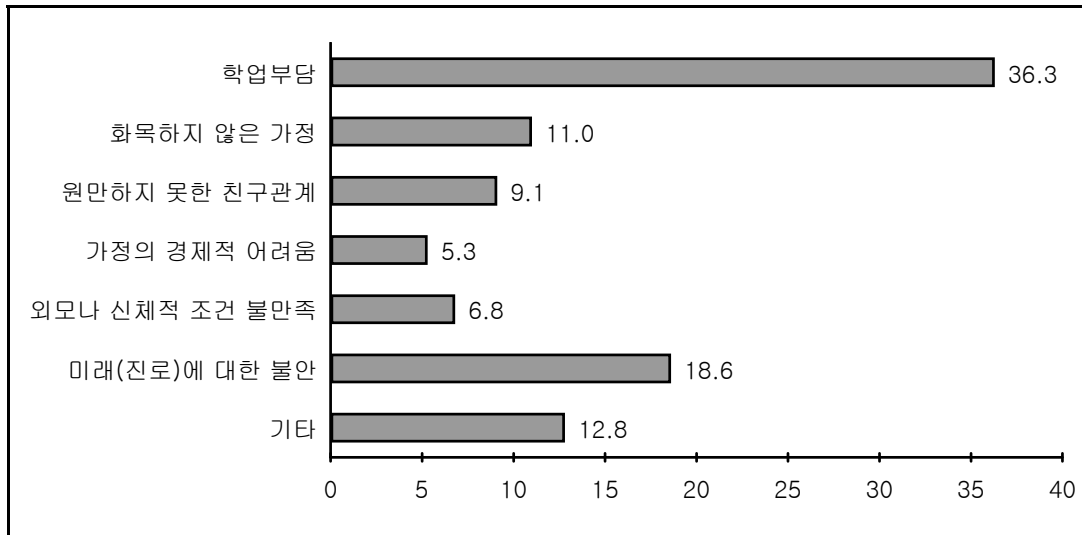
44) '전혀 행복하지 않다' 와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표 IV-63 행복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교단	초	2.6	12.7	50.7	34.0	100(3374)	844.132***
	중	5.1	22.5	57.9	14.5	100(3078)	
	일반계고	6.2	29.5	55.9	8.4	100(2142)	
	전문계고	4.9	28.3	58.7	8.1	100 (675)	
	전체	4.4	21.0	54.9	19.7	100(9269)	
가족유형	양부모	4.2	20.3	55.2	20.3	100(8339)	66.485***
	한부모	6.2	29.7	52.4	11.7	100 (680)	
	조손가정	7.5	22.2	53.0	17.3	100 (75)	
	기타	8.6	18.9	57.5	15.0	100 (133)	
	전체	4.4	21.0	55.0	19.6	100(9227)	
경제수준	상	2.9	11.3	47.5	38.3	100(1944)	817.926***
	중	4.2	22.5	58.2	15.2	100(6813)	
	하	15.5	40.8	36.3	7.4	100 (443)	
	전체	4.5	21.0	54.9	19.7	100(9200)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IV-32】 행복하지 않은 이유(%)

표 IV-64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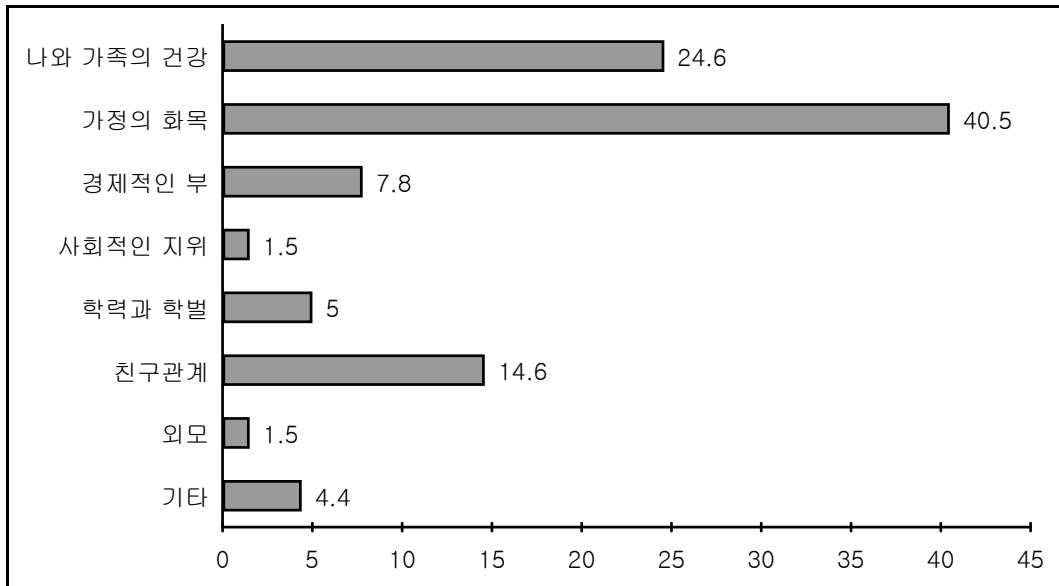
구분	학업 부담	화목하지 않은 가정	원만치 않은 친구 관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외모 신체적인 조건	미래 불안	기타	전체(N)	χ^2
성별	남	39.4	11.5	7.6	4.3	4.0	19.3	100(1285)	57.749***
	여	32.5	10.4	10.9	6.5	10.3	17.8	100(1060)	
	전체	36.3	11.0	9.1	5.3	6.8	18.6	100(2345)	
교급	초	27.4	17.7	16.9	4.7	6.9	5.0	100 (517)	333.524***
	중	39.9	11.9	10.0	5.2	6.9	14.7	100 (846)	
	일반계고	44.0	4.6	2.5	4.7	6.3	28.7	100 (758)	
	전문계고	17.3	13.9	10.4	8.7	7.6	30.9	100 (223)	
	전체	36.3	11.0	9.1	5.3	6.8	18.6	100(2345)	
지역규모	대도시	40.7	9.9	7.9	5.6	4.9	19.0	100 (955)	40.995***
	중소도시	35.2	11.3	9.9	5.1	7.1	19.4	100(1047)	
	읍/면	27.7	13.3	10.2	4.8	11.1	15.4	100 (342)	
	전체	36.3	11.0	9.1	5.3	6.8	18.6	100(2345)	
가족유형	양부모	38.6	9.8	8.7	4.3	6.5	19.0	100(2032)	92.423***
	한부모	20.1	18.2	11.4	12.5	9.0	17.0	100 (243)	
	조손가정	13.1	23.6	12.9	19.1	14.1	11.5	100 (22)	
	기타	27.6	24.6	16.9	2.8	5.2	14.7	100 (37)	
	전체	36.2	11.1	9.2	5.3	6.8	18.7	100(2335)	
경제수준	상	37.0	11.1	12.2	0.5	8.0	11.8	100 (274)	283.612***
	중	38.8	10.3	8.8	3.2	6.6	19.9	100(1808)	
	하	18.4	16.0	7.9	25.9	4.9	17.1	100 (247)	
	전체	36.4	11.0	9.1	5.3	6.6	18.7	100(2328)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표 IV-64>),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57.749, p<.001, \chi^2=333.524, p<.001, \chi^2=40.995, p<.001, \chi^2=92.423, p<.001, \chi^2=283.612, p<.001$).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학생은 학업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학업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학업부담, 화목하지 않은 가정,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의 순으로, 중학생은 학업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순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은 학업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외모나 신체적 조건 불만족의 순으로, 전문계 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 부담,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순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급에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생은 학교의 특성상 대학진학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불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순위는 같게 나타났지만, 그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학업 부담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응답률 차이가 10% 이상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의 아동·청소년은 학업부담,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순으로, 중위층의 경우 학업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순으로, 하위층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업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순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특히, 하위층의 경우 4명 중 1명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것으로 보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정형편은 그들의 행복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행복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정의 화목(40.5%), 나와 가족의 건강(24.6%), 친구관계(14.6%), 경제적인 부(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분석해 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1.037, p<.001, \chi^2=1037.288, p<.001, \chi^2=34.420, p<.01, \chi^2=137.880, p<.001, \chi^2=333.310, p<.00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응답률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행복 조건의 순위는 거의 비슷하였다. 단, 일반계 고등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위층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의 아동·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33】 행복의 조건(%)

(3) 관련 정책 및 대안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비만과 스트레스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⁴⁵⁾. 특히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비만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반면, 행복도는 낮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증가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서는 학생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해 「학생 건강증진종합대책(2007-2011)」을 수립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스포츠강사 지원, 학생건강체력 평가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6월에는 「학생생활체육활성화대책」을 발표하여 건강증진학교(Health Promoting School) 운영, 'e-학교체육정보센터(Database Center)' 구축·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사업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산재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바, 아동·청소년 비만사업의 활성화와

45)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관련 정책과 대안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에 실린,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정책과 대안」(강은정, 2011)을 재구성한 것임.

연계를 위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적으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포괄적 연계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아동·청소년 비만의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위한 환경 및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셋째, 바른 영양과 신체활동을 접목한 공통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교사와 관련자 교육 훈련, 지침과 자료의 개발 보급 등 지원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하며, 넷째, 모니터링과 평가 및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강은정, 2011, 재인용). 아울러 아침결식, 외식, 인스턴트 식품 섭취,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개선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균형 있는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과반수가 학업이나 친구관계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234개 기초 자치단체 중 155개(66.2%)에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100개로서 64.5%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최소한 한 곳은 설치하도록 하고, 각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우울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내로 조기에 연결하는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정신건강 스크리닝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1) 지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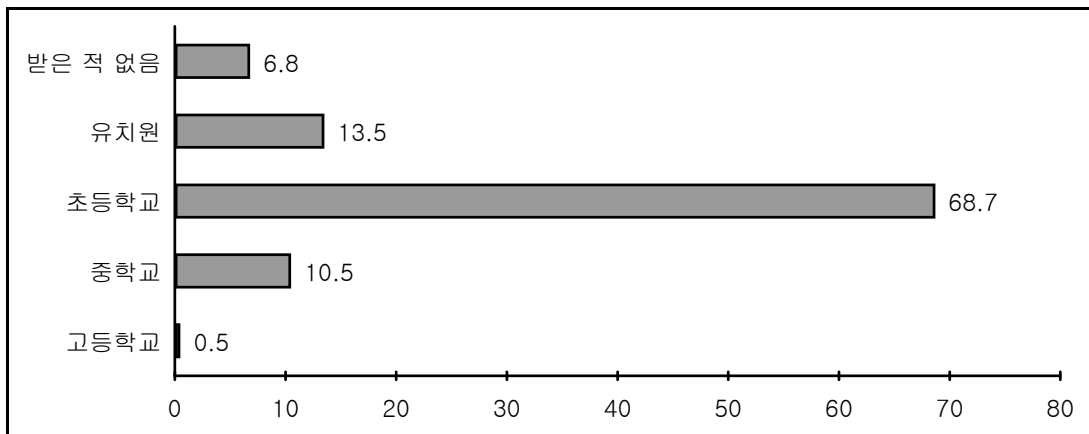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도 전항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 개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에

서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추가된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영역과 관련하여 ‘성교육 경험률’ 지표를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성교육 경험률

이 지표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최초로 성교육을 받은 시기, 최근 1년간의 성교육 경험 여부, 성교육을 받았을 경우 받은 횟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성교육을 최초로 받은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34] 와 같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유치원(13.5%), 중학교(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4】 최초의 성교육 시기(%)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77.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IV-65>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간 성교육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8.892$, $p<.001$, $\chi^2=70.709$, $p<.001$). 성별로는 여학생의 80.4%, 남학생의 74.3%가 성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교육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1.0%, 초등학생의 77.9%, 전문계 고등학생의 73.8%, 일반계 고등학생의 71.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성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65 최근 1년간 성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N)	χ^2
성별	남	74.3	25.7	100(5001)	48.892***
	여	80.4	19.6	100(4267)	
	전체	77.1	22.9	100(9269)	
교급	초	77.9	22.1	100(3368)	70.709***
	중	81.0	19.0	100(3079)	
	일반계고	71.4	28.6	100(2148)	
	전문계고	73.8	26.2	100 (674)	
	전체	77.1	22.9	100(9269)	

* $p < 0.05$, ** $p < 0.01$, *** $p < 0.001$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성교육을 받은 횟수를 살펴보면, 1-2회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4.273$, $p < .001$, $\chi^2=19.196$, $p < .01$). 교급에 따라서는 최근 1년간 1-2회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교급에서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3-4회와 5회 이상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고등학생들보다 높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횟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역시 1-2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보다 5회 이상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더 자주 성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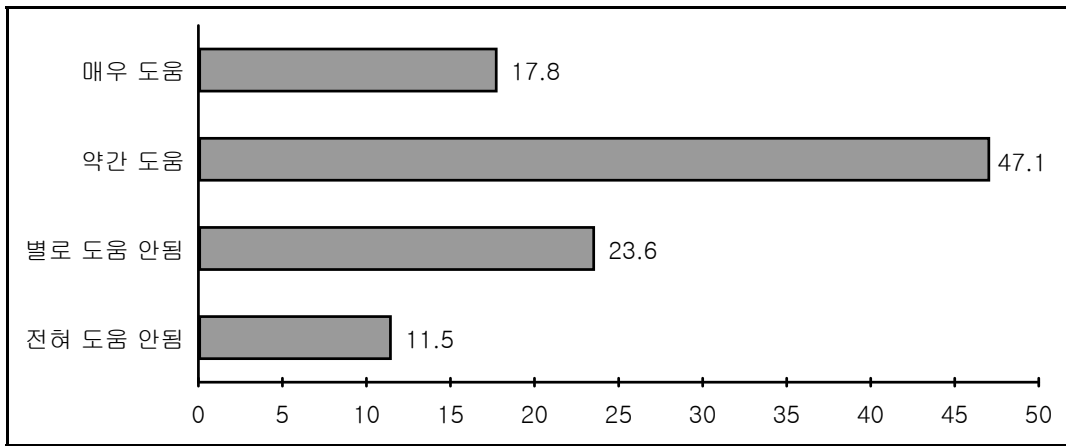
표 IV-66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횟수

(단위: %, 명)

구분		1-2회	3-4회	5회 이상	전체(N)	χ^2
교급	초	65.3	20.9	13.8	100(2596)	74.273***
	중	67.0	20.6	12.4	100(2434)	
	일반계고	75.5	15.8	8.7	100(1496)	
	전문계고	78.6	14.3	7.1	100(479)	
	전체	69.0	19.2	11.8	100(7005)	
지역 규모	대도시	67.0	19.5	13.5	100(2972)	19.196**
	중소도시	69.8	19.3	10.9	100(3080)	
	읍/면	72.6	18.2	9.2	100(953)	
	전체	69.0	19.2	11.8	100(7005)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받은 성교육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IV-35] 와 같이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6%, 매우 도움이 되었다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총 64.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도 상당한 바, 좀 더 현실성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IV-35】 성교육 도움 정도(%)

아동·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IV-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6.862, p<.001, \chi^2=1056.351, p<.001, \chi^2=32.964, p<.001, \chi^2=263.037, p<.001$).

성별에 따른 성교육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70.1%, 남학생의 60.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19.2%는 성교육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15.6%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82.5%, 중학교 59.6%, 전문계 고등학교 51.1%, 일반계 고등학교 47.5%가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성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3명 중 1명은 성교육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5명 중 1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대상 연령에 따라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79.9%, 양부모 가정 65.2%, 한부모 가정 56.8%의 순으로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73.2%, 중위층 63.7%, 하위층의 46.8%가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상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3-4명 중 1명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층의 경우 4-5명 중 1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성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대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7 성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N)	χ^2
성별	남	15.6	24.4	43.6	16.4	100(3596)	136.862***
	여	7.1	22.8	50.9	19.2	100(3327)	
	전체	11.5	23.6	47.1	17.8	100(6923)	
학교	초	5.1	12.5	48.3	34.2	100(2552)	1056.351***
	중	12.0	28.4	49.5	10.1	100(2422)	
	일반계고	20.4	32.2	41.5	6.0	100(1464)	
	전문계고	16.4	32.5	45.6	5.5	100 (486)	
	전체	11.5	23.6	47.1	17.8	100(6923)	
가족유형	양부모	11.3	23.5	47.4	17.8	100(6253)	32.964***
	한부모	15.5	27.7	43.3	13.5	100 (501)	
	조손가정	8.4	11.7	50.0	29.9	100 (58)	
	기타	10.9	17.8	43.6	27.7	100 (89)	
	전체	11.6	23.7	47.1	17.7	100(6901)	
경제수준	상	8.5	18.3	43.1	30.1	100(1430)	263.037***
	중	11.5	24.8	48.6	15.1	100(5127)	
	하	24.3	28.9	41.1	5.7	100 (331)	
	전체	11.5	23.6	47.1	17.8	100(6888)	

* $p < 0.05$, ** $p < 0.01$, *** $p < 0.001$

(3) 관련 정책 및 대안

아동·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을 터부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연령이나 욕구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 내에서는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이론적인 생물학 강의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해 배운다는 명목으로 아동·청소년들은 성인용 비디오 등의 성인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관념들을 갖게 되었고, 이는 청소년 임신 문제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모성 건강관리 차원으로 가임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감으로써,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⁴⁶⁾. 2007년에는 대학내 자율적 생식건강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고, 캠퍼스 생식건강 증진센터를 개설하여 커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학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성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청소년 산모들을 대상으로는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1년도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규사업을 마련하여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검사비 및 출산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 임신출산에 대한 산전관리가 미흡한 청소년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가임여성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임실천, 생명존중 인식제고를 위한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10대·20대 미디어 세대들이 간편하게 생리에정일·가임기간 등 자신의 생식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성생식건강관리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유아·초·중·고교 교사용 성교육 매뉴얼’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식건강 사업들은 모성건강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주로 가임기의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생식건강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 혹은 임신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로, 임신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들이 같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확립해나갈 수 있을 때,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과 출산에

46) 보건복지부(2011)에서 발간한 「2010 보건복지백서」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대한 교육 및 잘못된 성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성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로의 성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알아가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약물남용방지 대책

(1) 지표의 의미

약물남용방지 대책은 협약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당사국이 약물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이 담배와 술을 구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담배와 술, 약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흡연율’, ‘음주율’,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을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흡연율

청소년의 흡연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발표된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표 IV-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중·고등학생의 12.9%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흡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4.7%, 중학교 2학년 8.7%, 중학교 3학년 11.3%, 고등학교 1학년 16.0%, 고등학교 2학년 17.9%, 고등학교 3학년 18.6%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흡연율(17.5%)이 중학생의 흡연율(8.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증감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IV-68 현재 흡연을 추이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5	11.8	8.0	18.3	5.7	8.4	10.3	16.8	19.8	-
2006	12.8	7.7	18.7	5.0	7.5	10.7	16.6	19.4	20.3
2007	13.3	9.1	18.1	5.9	9.1	12.1	16.3	18.6	19.8
2008	12.8	8.0	17.8	5.4	8.3	10.4	16.6	17.8	19.2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 출처: 질병관리본부(2010),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1년 주기)

*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② 음주율

음주율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표 IV-69〉).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09년 기준으로 2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등학생의 흡연율보다 높은 수치로, 중·고등학생의 5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9.5%, 중학교 2학년 13.4%, 중학교 3학년 16.8%, 고등학교 1학년 24.6%, 고등학교 2학년 31.1%, 고등학교 3학년 31.8%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율이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음주율(29.2%)이 중학생의 음주율(13.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9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5	27.0	18.2	42.2	13.7	17.9	23.6	37.3	47.2	-
2006	28.6	18.2	40.8	14.3	17.9	22.2	35.0	44.1	43.6
2007	27.8	18.5	38.2	13.9	18.2	23.2	33.1	40.8	41.5
2008	24.5	15.1	34.5	10.7	14.9	19.6	30.1	36.6	37.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 출처: 질병관리본부(2010),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1년 주기)

*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③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

이 지표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최근 1년간 편의점 같은 곳에서 담배 구입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 시도한 적이 있다면 몇 번 시도했는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들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전체 중·고등학생의 9.7%가 담배 구입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82.881, p<.001, \chi^2=143.281, p<.001, \chi^2=23.153, p<.001, \chi^2=20.417, p<.001, \chi^2=26.575, p<.001$).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담배 구입 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10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간 담배를 구입하려는 시도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담배 구입 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5명 중 1명 이상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10명 중 1명 정도가 최근 1년간 담배 구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담배 구입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의 순으로 담배 구입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5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간 담배 구입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 상위층, 중위층의 순으로 담배 구입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하위층과 상위층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간 담배 구입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최근 1년간 담배 구입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담배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6] 과 같다.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담배 구입을 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5회 이상 시도했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2회로 27.1%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 구입을 성공한 정도를 보면, 대부분 성공한다가 37.8%, 대체로 성공한다가 29.2%로 나타나 담배 구입을 시도한 청소년의 67.0%가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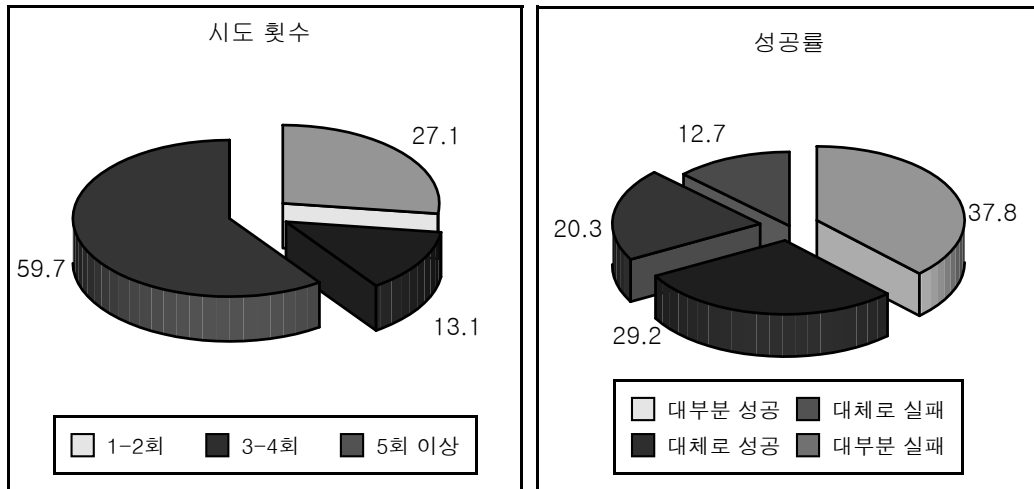
담배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을 변인별로 보면, 교급과 지역규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에 따른 담배 구입 시도 횟수는 중·고등학생 모두 5회 이상 시도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중 전문계 고등학생의 5회 이상 시도 비율이 중학생의 거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46.187, p<.001$). 담배 구입 성공률은, 고등학생의 경우 70% 이상, 중학생은 56.6%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담배 구입을 시도했을 때 구입을 달성하는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0.012, p<.001$).

표 IV-70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여부

(단위: %, 명)

구분		시도하였음	시도하지 않았음	전체(N)	χ^2
성별	남	12.9	87.1	100(3196)	82.881***
	여	5.8	94.2	100(2623)	
	전체	9.7	90.3	100(5819)	
교급	중	6.7	93.3	100(3033)	143.281***
	일반계고	10.1	89.9	100(2123)	
	전문계고	21.9	78.1	100 (663)	
	전체	9.7	90.3	100(5819)	
지역 규모	대도시	9.2	90.8	100(2537)	23.153***
	중소도시	8.7	91.3	100(2538)	
	읍/면	14.5	85.5	100 (744)	
	전체	9.7	90.3	100(5819)	
가족 유형	양부모	9.1	90.9	100(5143)	20.417***
	한부모	13.4	86.6	100 (543)	
	조손가정	20.7	79.3	100 (29)	
	기타	17.0	83.0	100 (88)	
	전체	9.7	90.3	100(5803)	
경제 수준	상	10.4	89.6	100 (626)	26.575***
	중	9.0	91.0	100(4734)	
	하	16.9	83.1	100 (409)	
	전체	9.7	90.3	100(5769)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IV-36】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도 담배 구입을 시도한 학생의 2명 중 1명 이상이 구입 가능했다는 결과는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시도 횟수를 살펴보면, 지역의 규모에 상관없이 5회 이상 시도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의 5회 이상 시도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chi^2=17.562$, $p<.01$). 담배 구입 성공률을 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78.5%가 성공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청소년보다 담배 구입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 지역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시도율, 횟수, 성공률이 높은 것은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청소년에 대한 담배 구입 제약이 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④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

이 지표는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편의점 같은 곳에서 주류 구입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 시도한 적이 있다면 몇 번 시도했는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들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주류 구입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청소년들의 9.5%가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 별로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chi^2=9.561$, $p<.01$, $\chi^2=266.989$, $p<.001$, $\chi^2=75.076$, $p<.001$, $\chi^2=16.156$, $p<.01$, $\chi^2=14.956$, $p<.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류 구입 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10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간 주류 구입을 시도해 온 경험이 있었다. 교급별로는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시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의 5명 중 1명 이상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주류 구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주류 구입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의 순으로 주류 구입 시도율이 높았다. 특히 조손가정의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간 주류 구입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 상위층, 중위층의 순으로 주류 구입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하위층과 상위층의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주류 구입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최근 1년간 주류 구입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류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7] 과 같다.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주류 구입을 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5회 이상 시도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류 구입을 성공한 정도를 보면, 대부분 성공한다가 41.0%, 대체로 성공한다가 30.8%로 나타나 주류 구입을 시도한 청소년의 71.8%가 주류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1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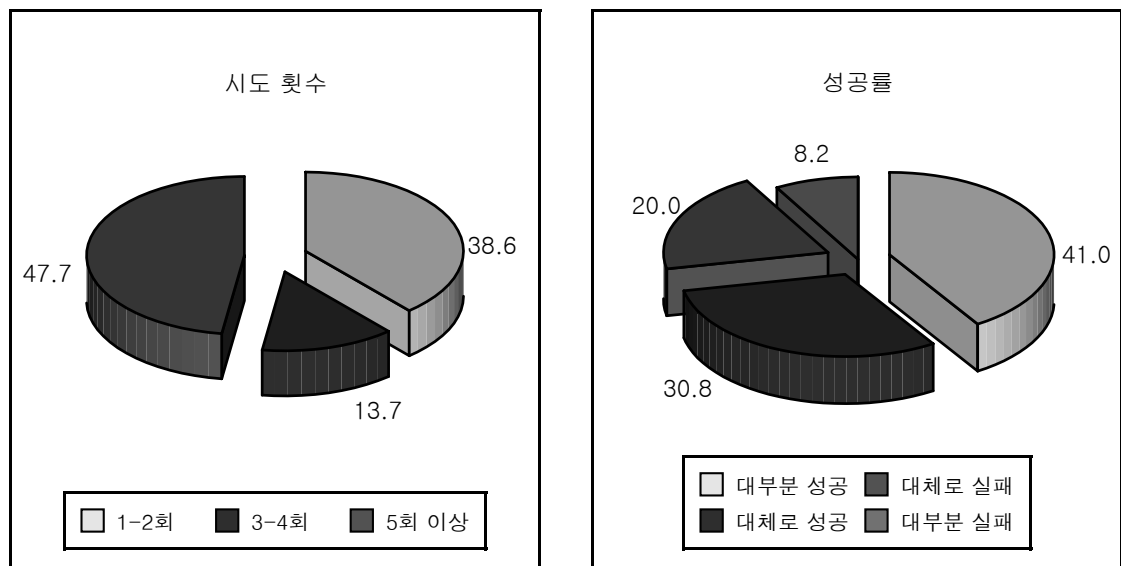
구분		시도하였음	시도하지 않았음	전체(N)	χ^2
성별	남	10.6	89.4	100(3195)	9.561**
	여	8.2	91.8	100(2625)	
	전체	9.5	90.5	100(5820)	
교급	중	4.2	95.8	100(3032)	266.989***
	일반계고	12.8	87.2	100(2124)	
	전문계고	23.1	76.9	100 (663)	
	전체	9.5	90.5	100(5819)	
지역 규모	대도시	8.4	91.6	100(2538)	75.076***
	중소도시	8.0	92.0	100(2538)	
	읍/면	18.2	81.8	100 (743)	
	전체	9.5	90.5	100(5819)	
가족 유형	양부모	8.9	91.1	100(5143)	16.156**
	한부모	13.4	86.6	100 (543)	
	조손가정	20.7	79.3	100 (29)	
	기타	10.2	89.8	100 (88)	
	전체	9.4	90.6	100(5803)	
경제 수준	상	10.7	89.3	100 (627)	14.956**
	중	8.8	91.2	100(4733)	
	하	14.4	85.6	100 (410)	
	전체	9.4	90.6	100(5770)	

* $p<0.05$, ** $p<0.01$, *** $p<0.001$

주류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은 성별과 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주류 구입 시도 횟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5회 이상이 54.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 1-2회가 44.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주류 구입 시도 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7.420$, $p<.001$). 이를 통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주류 구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주류 구입 성공률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75.1%, 남학생의 69.7%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주류 구입 성공률이 더 높았다($\chi^2=9.982, p<.05$).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시도는 적게 하지만, 시도했을 경우 주류를 구입한 비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교급에 따른 주류 구입 시도 횟수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최근 1년간 1-2회 시도했다는 응답율이 50.0%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5회 이상 시도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급에 따른 주류 구입 시도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3.527, p<.001$). 주류 구입 성공률을 보면, 고등학생들은 70% 이상이 구입 가능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59.3%가 구입 가능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구입 성공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1.986, p<.01$).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도 주류 구입을 시도한 학생의 2명 중 1명 이상은 주류 구입이 가능했다는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37】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⑤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술집(주점, 호프) 출입 시도 여부, 시도 횟수, 출입 성공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의 담배나 술과 같은 약물 구입과 이용이 이러한

업소에서 더 쉽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약물남용방지 대책」 영역에 배치하였다.

청소년의 술집 출입 시도 여부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표 IV-7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의 8.6%가 최근 1년간 술집 출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술집 출입 시도 여부는 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5.250, p<.001, \chi^2=262.445, p<.001, \chi^2=33.926, p<.001, \chi^2=22.903,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시도하였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해 최근 1년간 술집에 출입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라서는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술집 출입 시도율이 높았는데, 전문계 고등학생의 5명 중 1명 이상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술집 출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술집 출입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 상위층, 중위층 순으로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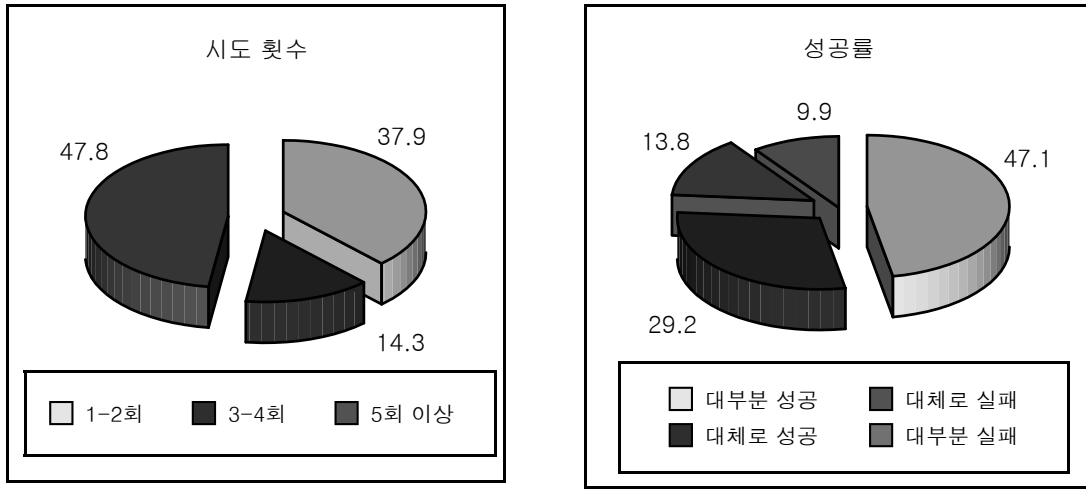
표 IV-72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여부

(단위: %, 명)

구분		시도하였음	시도하지 않았음	전체(N)	χ^2
성별	남	10.3	89.7	100(3193)	25.250***
	여	6.6	93.4	100(2622)	
	전체	8.6	91.4	100(5815)	
교급	중	3.9	96.1	100(3030)	262.445***
	일반계고	11.1	88.9	100(2123)	
	전문계고	22.4	77.6	100 (662)	
	전체	8.6	91.4	100(5815)	
지역 규모	대도시	8.1	91.9	100(2535)	33.926***
	중소도시	7.4	92.6	100(2537)	
	읍/면	14.1	85.9	100 (743)	
	전체	8.6	91.4	100(5815)	
경제 수준	상	11.6	88.4	100 (627)	22.903***
	중	7.8	92.2	100(4730)	
	하	13.4	86.6	100 (409)	
	전체	8.7	91.3	100(5766)	

* $p<0.05$, ** $p<0.01$, *** $p<0.001$

최근 1년간 술집 출입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술집 출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8] 과 같다.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술집 출입을 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5회 이상 시도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술집 출입을 시도한 청소년의 76.3%가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8]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술집 출입 횟수와 성공률에 대한 변인별 분석 결과, 술집 출입 횟수에 있어서는 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22.241, p<.001, \chi^2=16.487, p<.01$), 성공률에 있어서는 교급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7.337, p<.001$). 교급에 따른 술집 출입 시도 횟수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최근 1년간 1-2회 술집 출입을 시도했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은 최근 1년간 5회 이상의 술집 출입 시도를 했다는 응답을 각각 43.7%, 61.9%로 가장 많이 하였다. 이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자주 술집 출입을 시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술집 출입에의 성공률에서도 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80.4%가 술집 출입에 성공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의 성공률은 48.9%인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도 약 2명 중 1명꼴로 술집 출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 시도 횟수를 살펴보면, 술집 출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66.3%가 최근 1년 간 5회 이상 술집 출입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여,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청소년들보다 더 빈번하게 술집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술집 출입 성공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술집 출입 시도를 더 많이 더 빈번하게 했다는 결과는 읍·면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보다 술집 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⑥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이 금연 및 음주예방 교육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교육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중 66.5%가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1년간 1-2회 교육 받았다는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73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N)	χ^2
성별	남	65.2	34.8	100(4995)	7.588**
	여	68.0	32.0	100(4267)	
	전체	66.5	33.5	100(9262)	
교급	초	60.0	40.0	100(3366)	210.558***
	중	75.0	25.0	100(3077)	
	일반계고	61.7	38.3	100(2144)	
	전문계고	75.4	24.6	100(674)	
전체		66.5	33.5	100(9262)	
지역 규모	대도시	67.1	32.9	100(3917)	40.948***
	중소도시	63.8	36.2	100(4118)	
	읍/면	73.5	26.5	100(1226)	
	전체	66.5	33.5	100(9262)	
경제 수준	상	59.4	40.6	100(1937)	59.152***
	중	68.3	31.7	100(6813)	
	하	71.7	28.3	100(444)	
	전체	66.6	33.4	100(9194)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청소년의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률과 관련하여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표 IV-73>에 제시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7.588, $p<.01$, $\chi^2=210.558$, $p<.001$, $\chi^2=40.948$, $p<.001$, $\chi^2=59.152$,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이 많았으며,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이 많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횟수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IV-74>에 제시되어 있다.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횟수는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3.557$, $p<.001$, $\chi^2=26.018$, $p<.001$, $\chi^2=14.674$, $p<.01$). 교급별로 예방교육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모든 교급에서 최근 1년간 1-2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5회 이상 받았다는 응답이 각각 12.6%와 9.4%로 고등학생보다 높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교육 경험의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교육 경험 빈도가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 속한 아동·청소년일수록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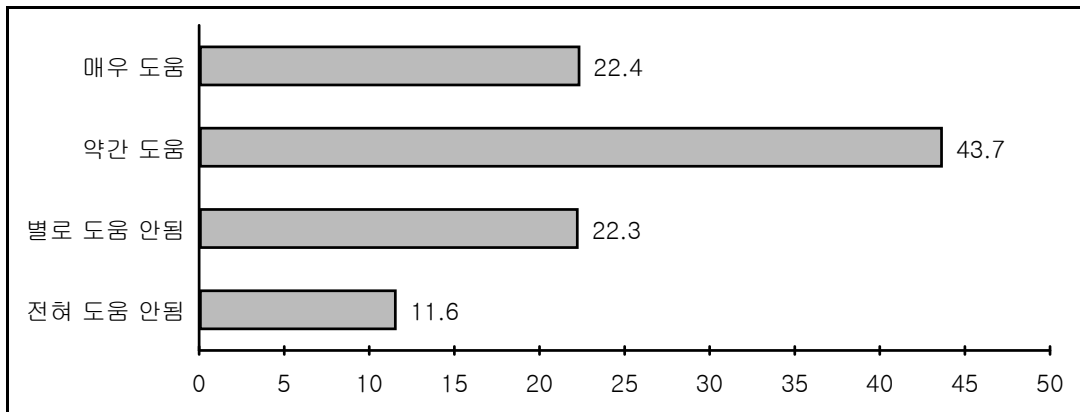
표 IV-74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횟수

(단위: %, 명)

구분		1-2회	3-4회	5회 이상	전체(N)	χ^2
교급	초	70.4	17.0	12.6	100(1995)	83.557***
	중	73.5	17.1	9.4	100(2248)	
	일반계고	82.3	11.4	6.3	100(1277)	
	전문계고	81.3	13.6	5.0	100 (485)	
	전체	75.0	15.6	9.4	100(6004)	
지역 규모	대도시	72.4	16.5	11.1	100(2554)	26.018***
	중소도시	76.3	14.8	8.9	100(2563)	
	읍/면	78.4	15.6	6.0	100 (887)	
	전체	75.0	15.6	9.4	100(6004)	
경제 수준	상	72.1	16.3	11.6	100(1121)	14.674**
	중	75.3	15.7	8.9	100(4533)	
	하	80.4	10.7	8.9	100 (311)	
	전체	75.0	15.6	9.4	100(5964)	

* $p<0.05$, ** $p<0.01$, *** $p<0.001$

아동·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간 받은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9] 와 같다.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 중 43.7%는 교육이 약간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6.1%의 아동·청소년들이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9】 약물남용예방교육 도움 정도(%)

아동·청소년들의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의 도움 정도는 <표 IV-7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3.933, p<.001, \chi^2=1139.410, p<.001, \chi^2=44.085, p<.001, \chi^2=280.839, p<.001$). 성별에 따른 예방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69.5%, 남학생의 63.2%가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일수록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96.0%, 중학생의 63.6%, 전문계 고등학생의 48.3%, 일반계 고등학생의 46.8%가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예방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에서, 교육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85.1%, 양부모 가정 66.9%, 한부모 가정 54.6%의 순으로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조손가정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37.1%나 차지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층 77.4%, 중위층 65.2%, 하위층 43.4%의 아동·청소년들이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일수록 교육의

도움 정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층의 경우 50% 이상이 예방교육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표 IV-75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N)	χ^2
성 별	남	15.6	21.2	39.9	23.3	100(3145)	123.933***
	여	7.0	23.5	48.0	21.5	100(2783)	
	전체	11.6	22.3	43.7	22.4	100(5928)	
교 급	초	4.7	9.3	40.9	45.1	100(1954)	1139.410***
	중	11.5	24.9	48.8	14.8	100(2225)	
	일반계고	19.6	33.7	40.2	6.6	100(1258)	
	전문계고	18.9	32.7	40.9	7.4	100(491)	
	전체	11.6	22.3	43.7	22.4	100(5928)	
가 족 유 형	양부모	11.3	21.8	44.2	22.7	100(5351)	44.085***
	한부모	15.7	29.7	39.0	15.6	100(445)	
	조손가정	6.1	8.8	48.0	37.1	100(44)	
	기타	13.1	19.9	33.2	33.8	100(72)	
	전체	11.6	22.3	43.7	22.4	100(5913)	
경 제 수 준	상	7.5	15.2	39.5	37.9	100(1103)	280.839***
	중	11.5	23.3	45.7	19.5	100(4475)	
	하	26.5	30.1	32.6	10.8	100(312)	
	전체	11.5	22.2	43.8	22.4	100(5889)	

* $p < 0.05$, ** $p < 0.01$, *** $p < 0.001$

(3) 관련 정책 및 대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약물남용방지 대책⁴⁷⁾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같은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사업과 대한보건협회와 금연운동협의회로 대표되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단체나 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47) 약물남용방지과 관련된 정책과 대안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에 실린, 「아동·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안」(김광기, 2011)을 재구성한 것임.

이들 사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위주의 프로그램이거나 약물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예방교육은 음주와 흡연의 해악에 관한 지식이나 부정적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생활기술(life skill)이나 보호요인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어서 효과가 미미하다.

교육적 접근 이외에 아동·청소년 약물사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주류 및 담배 구입 허용 연령 제한과 주류용기 및 담배갑에 청소년 유해물질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광고제한,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방지 정책과 교육 홍보 시행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제도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주류와 담배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은 단속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중매체에서 주류와 담배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등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한된 광고시간대에 방송되는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이 선호하여 오히려 광고금지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이 집중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여 주류광고 노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주류광고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이벤트 행사에서 주류나 담배회사의 마케팅이 아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약물예방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통합적, 체계적 및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차원의 범부처적 아동·청소년 약물예방 전략과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약물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없다는 데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약물사용을 예방하고 그 폐해를 감소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한 아동·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국가수준의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부처별로 분절적인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시행될 수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되 효과가 검증된 것만을 시행하는 근거기반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둘째, 교육 홍보와 광고 및 마케팅 규제와 같은 수요통제와 함께 담배와 주류가 아동·청소년에게 공급되는 경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약물예방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고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약물예방사업의 대상에 성인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은 결국 성인들이 흡연 음주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성인이기 때문이다. 담배 및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고 법 위반자에게는 이를 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동·청소년이 약물폐해가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육성하여 이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옹호와 업계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금까지 제안한 것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에 마련된 법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조직, 체계, 인력 및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대상 담배 및 주류 판매 제한 법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물론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지표의 의미

생활수준은 협약의 제27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당사국이 인정하고, 이러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보호자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의식주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협약 제26조와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6조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당사국은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호 「HIV/AIDS와 아동의 권리」(2003), 일반논평 제7호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2005), 일반논평 제9호 「장애 아동의 권리」(2006)에서도 아동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18조 3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활수준과 사회보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두 하위영역을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이 영역들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지표를 산출하고, 아동보호시설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2차년도(2012년) 연구에서 산출할 예정이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빈곤율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⁴⁸⁾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개별가구의 경제적인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대빈곤 상태(김미곤·김태완, 2004; 김미숙 외, 2008 재인용)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76 절대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도시근로자	전가구 기준
1999	9.3	-
2000	7.3	-
2001	5.9	-
2002	4.9	-
2003	5.6	9.0
2004	5.2	8.6
2005	6.2	9.5
2006	4.8	8.4
2007	4.4	7.9
2008	4.4	7.8
2009	4.8	7.7

* 출처: 김문길 외(2010),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 주: 1)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2) 경상소득 기준

3)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표 IV-76〉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 아동·청소년의 절대빈곤율은 전가구 기준으로 7.7%이고,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는 4.8%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속한 전체 가구의 13가구 중

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빈곤통계연보」는 자료의 공신력, 표본의 적절성, 시계열의 풍부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산출함.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가구 및 가구원 중 9,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 면접조사원 기입식,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여 가구의 가계수지 상태를 파악함.

1가구 정도가,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20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 수준에 있는 절대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가구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가구 기준 절대빈곤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4% 중후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빈곤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이상으로 나누어 보면 <표 IV-77>과 같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차상위 계층 아동·청소년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있는 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 기준으로 빈곤층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7.8%에 달하며, 농어촌에 빈곤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2-18세가 빈곤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1%), 그 다음으로 9-11세(7.9%), 6-8세(6.3%) 순으로 빈곤율이 높았다.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4.2%였으며, 차상위계층도 농어촌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2세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연령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제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빈곤도 심각한 실정이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12.0%에 해당하고, 이는 10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IV-77 지역별 아동청소년 빈곤율 현황

(단위: %)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0-2세	5.9	4.9	6.4	8.6	4.6	4.1	4.0	10.4	89.5	91.0	89.6	81.0
3-5세	4.7	2.6	5.3	11.6	3.7	2.8	4.5	3.5	91.6	94.6	90.2	84.9
6-8세	6.3	5.6	6.9	6.1	4.3	3.4	4.6	7.0	89.4	91.0	88.5	86.9
9-11세	7.9	7.2	7.9	12.2	4.1	2.9	4.0	11.0	87.9	89.9	88.1	76.8
12-18세	9.1	6.4	11.1	13.8	4.4	2.5	5.6	7.9	86.5	91.1	83.3	78.3
전체	7.8	5.9	8.8	11.7	4.2	2.8	4.9	7.7	88.0	91.3	86.3	80.6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⁴⁹⁾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에서 1년 주기로 발표하는 복지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총 445,080명으로 이는 총 수급자의 30.5%에 해당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3명 중 1명 정도가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명)

연도	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001	1,345,526	456,616	44,108	82,092	114,807	161,365	54,244
2002	1,275,625	413,802	28,907	76,370	111,018	145,616	51,891
2003	1,292,690	416,139	29,005	79,047	116,314	140,089	51,684
2004	1,337,71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2005	1,425,684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2006	1,449,832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2007	1,463,140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2008	1,444,010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2009	1,482,71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2010	1,458,198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4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2008년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별 총화할당 후 연령별 유의할당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차상위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 명부에 포함된 만 0~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6,923가구를 표본으로 함.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면접원이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0~8세 아동까지는 부모를 통해 정보 수집 및 심층 조사, 9~18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와 아동청소년용 설문지를 통해 각각 조사함.

표 IV-7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단위: %)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001	33.9	3.3	6.1	8.5	12.0	4.0
2002	32.4	2.3	6.0	8.7	11.4	4.1
2003	32.2	2.2	6.1	9.0	10.8	4.0
2004	32.3	2.3	6.2	9.5	10.6	3.8
2005	32.6	2.2	6.1	10.0	10.6	3.6
2006	32.5	2.1	5.9	10.2	10.9	3.4
2007	32.0	2.0	5.4	9.9	11.3	3.4
2008	31.7	1.9	4.9	9.6	11.8	3.6
2009	31.5	1.9	4.4	9.1	12.1	3.9
2010	30.5	1.9	3.8	8.6	12.1	4.2

*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③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최근 1년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식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표 IV-8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의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기 중의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방학이나 주말 등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기 때문에, 결식률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결식 빈도를 살펴보면, 하루에 1끼 이상 결식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실제 결식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상당히 빈번하게 식사를 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과 빈도를 변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교급, 가족유형,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0.776, p<.001, \chi^2=84.082, p<.001, \chi^2=136.620, p<.001$). 교급에 따른 결식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4.4%, 전문계 고등학생 3.6%, 중학생 1.8%, 일반계 고등학생 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에 1끼 이상 결식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아동·청소년의 2.4%로, 이를 결식을 경험한 초등학생의 비율로 환산해보면 54.5%에 해당한다. 즉, 초등학생 중 결식을 경험한 아동의 2명 중 1명 이상은 하루에 1끼 이상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이들의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 7.4%, 한부모 가정 4.9%, 양부모 가정 2.5% 순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이 높았다. 특히 결식을 경험한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67.6%와 한부모 가정의 40.8%는 하루에 1끼니 이상 결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는 한쪽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와 사는 아동·청소년들로 가정에서 이들의 식사를 책임질 성인이 부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 가정에 대한 가정 봉사 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 10.9%, 상위층 3.1%, 중위층의 2.3%가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결식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결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3명 중 1명 이상은 하루에 1끼 이상의 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더 많이, 더 자주 결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아동의 결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상당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표 IV-80 최근 1년간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 여부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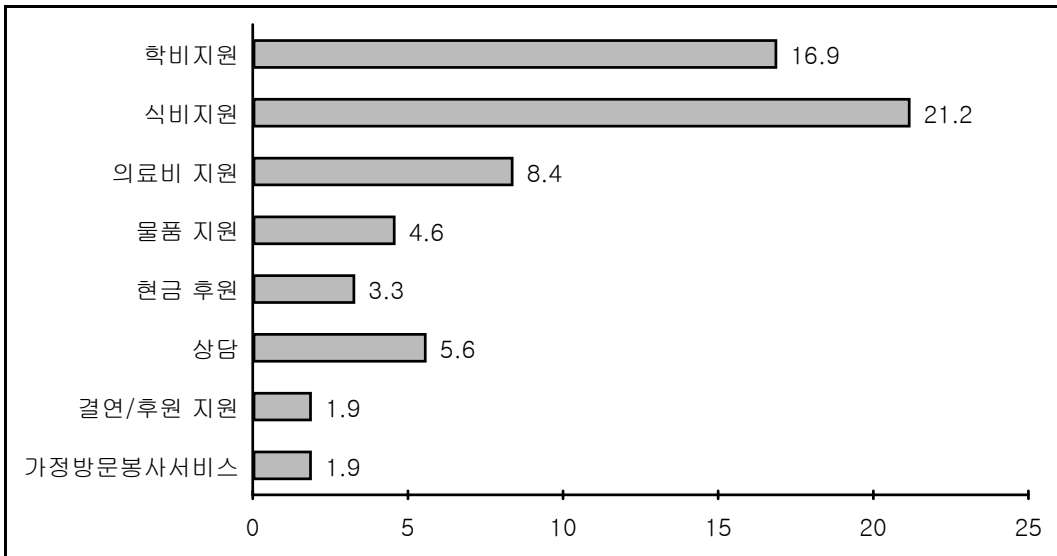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없다	일주일 1-2끼니	일주일 3-5끼니	하루에 1끼니 이상	전체(N)	χ^2
교급	초	95.6	1.4	0.6	2.4	100(3345)	60.776***
	중	98.2	0.8	0.3	0.7	100(3068)	
	일반계고	98.3	0.6	0.4	0.7	100(2136)	
	전문계고	96.4	1.6	0.5	1.5	100 (672)	
	전체	97.1	1.0	0.4	1.4	100(9222)	
가족 유형	양부모	97.5	0.9	0.4	1.3	100(8295)	84.082***
	한부모	95.1	2.0	1.0	2.0	100 (681)	
	조손가정	92.6	0.5	1.9	5.0	100 (74)	
	기타	89.4	7.5	0.5	2.6	100(132)	
	전체	97.1	1.0	0.5	1.4	100(9183)	
경제 수준	상	96.9	0.9	0.5	1.8	100(1936)	136.620***
	중	97.7	0.9	0.3	1.1	100(6774)	
	하	89.1	4.0	2.9	4.0	100 (444)	
	전체	97.1	1.0	0.5	1.4	100(9154)	

* $p < 0.05$, ** $p < 0.01$, *** $p < 0.001$

④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아동·청소년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 동안 국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과 같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학비(학교 수업료나 등록금) 지원,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의료비 지원(병원 치료비, 약 처방 비용),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 현금 후원, 상담(고민, 갈등 등의 정서적 문제 관련), 결연·후원 지원, 가정 방문 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IV-40] 과 같이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21.2%)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학비(16.9%), 의료비(8.4%) 순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자체단체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40】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아동·청소년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이 교급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표 IV-81>), 학비 지원,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현금 후원, 상담, 결연 및 후원 서비스, 가정 방문 봉사 서비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570.051, p<.001, \chi^2=357.988, p<.001, \chi^2=124.621, p<.001, \chi^2=116.340, p<.001, \chi^2=48.991, p<.001, \chi^2=29.638, p<.001, \chi^2=52.961, p<.001, \chi^2=106.166, p<.001$). 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므로 제외하고 중·고등학교의 수혜율을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49.3%, 일반계 고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9.3%가 최근 1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학비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 수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문계 고등학생 44.8%, 초등학생 25.4%, 중학생 16.2%, 일반계 고등학생 14.3%의 순으로 식비 지원을 받은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의 식비 지원 수준이 높은 것은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원은 전문계 고등학생 19.5%, 일반계 고등학생 9.1%, 초등학생 7.6%, 중학생 6.3%의 순으로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물품지원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생 11.9%, 초등학생 5.5%, 중학생 3.3%, 일반계 고등학생 2.60%의 순으로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고, 현금후원의 경우는 전문계 고등학생 7.8%, 초등학생 3.4%, 일반계 고등학생 2.9%, 중학생 2.4%의 순으로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물품지원 및 현금후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물품지원 수혜율이 현금후원 수혜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 등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품지원을 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물품지원과 현금지원 수혜율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교육비 등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연령이나 교급 등에 따라 물품 지원이나 현금 지원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과 관련해서는, 전문계 고등학생 8.8%, 중학생 6.0%, 초등학생 5.9%, 일반계 고등학생 3.6%의 순으로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약 50%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담 서비스 수혜율은 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학업이나 진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상담 서비스 수혜율은 이들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연 및 후원 지원은 전문계 고등학생 4.0%, 초등학생 2.8%,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1.0%의 순으로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연이나 후원 지원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좀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게 결연 및 후원 지원을 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좀 더 어린 연령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방문봉사서비스는 초등학생 3.8%, 전문계 고등학생 2.5%, 중학생 0.8%, 일반계 고등학생 0.5%의 순으로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수혜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서비스 대상의 아동이나 그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해 가사일과 관련된 서비스가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81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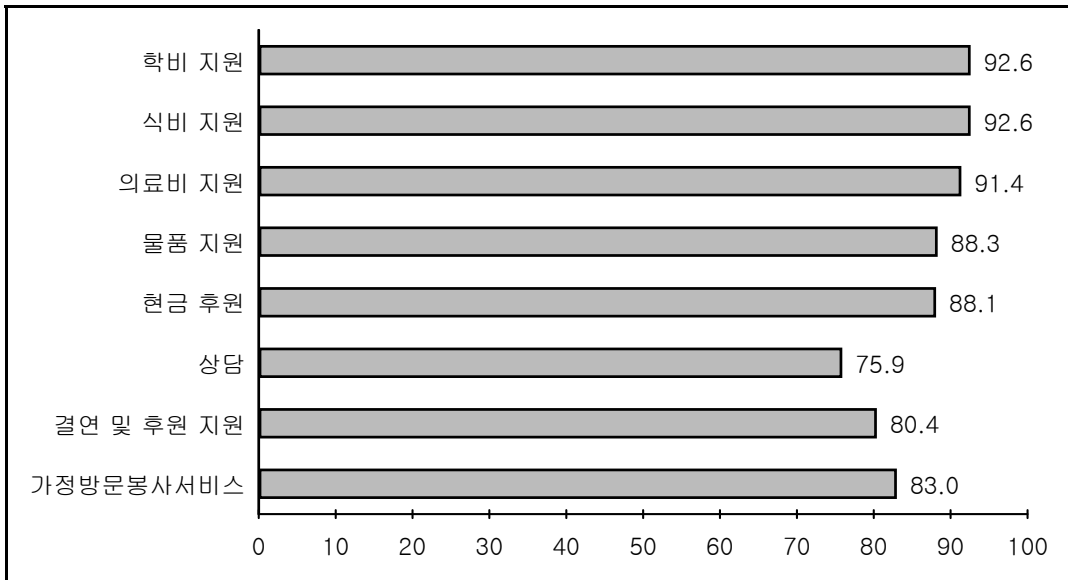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학비지원	중	9.3	90.7	100 (2809)	570.051***
	일반계고	17.7	82.3	100 (1936)	
	전문계고	49.3	50.7	100 (609)	
	전체	16.9	83.1	100 (5354)	
식비지원	초	25.4	74.6	100 (3335)	357.988***
	중	16.2	83.8	100 (3022)	
	일반계고	14.3	85.7	100 (2102)	
	전문계고	44.8	55.2	100 (649)	
의료비지원	전체	21.2	78.8	100 (9108)	124.621***
	초	7.6	92.4	100 (3334)	
	중	6.3	93.7	100 (3019)	
	일반계고	9.1	90.9	100 (2099)	
물품지원	전문계고	19.5	80.5	100 (647)	116.340***
	전체	8.4	91.6	100 (9099)	
	초	5.5	94.5	100 (3330)	
	중	3.3	96.7	100 (3016)	
현금후원	일반계고	2.6	97.4	100 (2097)	48.991***
	전문계고	11.9	88.1	100 (647)	
	전체	4.6	95.4	100 (9090)	
	초	3.4	96.6	100 (3331)	
상담	중	2.4	97.6	100 (3018)	29.638***
	일반계고	2.9	97.1	100 (2033)	
	전문계고	7.8	92.2	100 (645)	
	전체	3.3	96.7	100 (9088)	
결연/후원 지원	초	5.9	94.1	100 (3331)	52.961***
	중	6.0	94.0	100 (3016)	
	일반계고	3.6	96.4	100 (2094)	
	전문계고	8.8	91.2	100 (645)	
가정방문 봉사서비스	전체	5.6	94.4	100 (9086)	106.166***
	초	2.8	97.2	100 (3331)	
	중	1.0	99.0	100 (3015)	
	일반계고	1.0	99.0	100 (2095)	
	전문계고	4.0	96.0	100 (646)	
	전체	1.9	98.1	100 (9087)	
	초	3.8	96.2	100 (3335)	
	중	0.8	99.2	100 (3018)	
	일반계고	0.5	99.5	100 (2095)	
	전문계고	2.5	97.5	100 (646)	
	전체	1.9	98.1	100 (9094)	

* $p < 0.05$, ** $p < 0.01$, *** $p < 0.001$

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년 동안 국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과 같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학비(학교 수업료나 등록금) 지원,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의료비 지원(병원 치료비, 약 처방 비용),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 현금 후원, 상담(고민, 갈등 등의 정서적 문제 관련), 결연·후원 지원, 가정 방문 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IV-41] 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86.5%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도 31.0%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아동·청소년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종류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학비 지원과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지원과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서비스는 수혜율 면에서도 다른 서비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가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담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가 70% 후반대로 다른 서비스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IV-41】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표 IV-82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전체(N)	χ^2
식비 지원	초	2.6	5.0	46.3	46.1	100 (843)	64.560***
	중	2.3	6.8	61.4	29.5	100 (485)	
	일반계고	0.7	5.3	59.3	34.7	100 (300)	
	전문계고	3.1	2.8	65.5	28.6	100 (290)	
	전체	2.3	5.2	55.1	37.5	100(1919)	
물품 지원	초	2.2	7.1	54.9	35.7	100 (182)	24.012**
	중	3.2	6.3	64.2	26.3	100 (95)	
	일반계고	5.4	17.9	51.8	25.0	100 (56)	
	전문계고	5.3	6.6	75.0	13.2	100 (76)	
	전체	3.4	8.3	60.4	27.9	100 (409)	
상담	초	6.2	14.9	46.2	32.8	100 (195)	32.720***
	중	4.6	15.5	61.5	18.4	100 (174)	
	일반계고	8.3	27.8	58.3	5.6	100 (72)	
	전문계고	6.9	24.1	50.0	19.0	100 (58)	
	전체	6.0	18.0	53.7	22.2	100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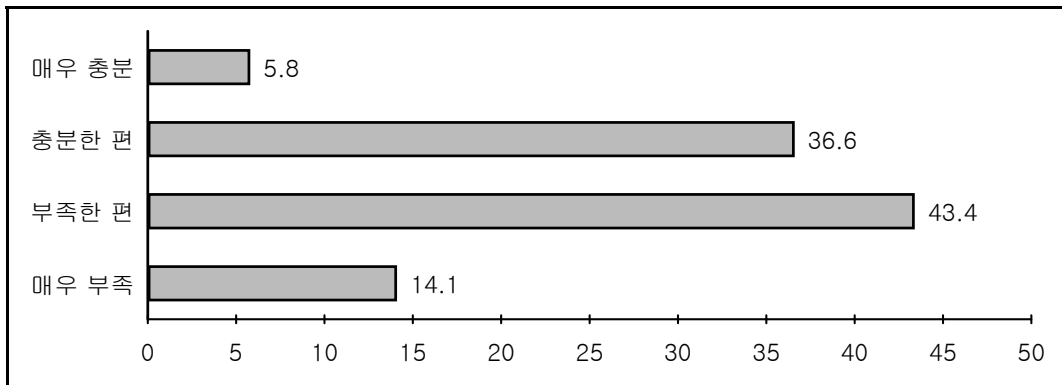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물품지원, 상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64.560$, $p < .001$, $\chi^2=24.012$, $p < .01$, $\chi^2=32.720$, $p < .001$).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만족도는 전문계 고등학생 94.1%, 일반계 고등학생 94.0%, 초등학생 92.4%, 중학생 90.9%의 순으로 높았으나, 교급에 상관없이 식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의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 면제 및 점심식사 지원 서비스 수혜율에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만족도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고,

초등학생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식비 지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품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90% 초반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전문계 고등학생은 88.2%, 일반계 고등학생은 76.8%의 만족도를 보였다. 상담 만족도는 중학생 79.9%, 초등학생 79.0%, 전문계 고등학생 69.0%, 일반계 고등학생 63.9%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고민이나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⑥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예, 학비, 급식비, 의료비, 물품, 상담, 후원 등)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그 결과는 [그림 IV-42] 와 같다. 아동·청소년들의 57.5%는 정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2】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83>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수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은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06.386, p<.001, \chi^2=374.982, p<.001$).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78.2%, 전문계 고등학생의 70.8%, 중학생의

64.1%, 초등학생의 35.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4-5명 중 1명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의 71.5%, 중위층의 60.6%, 상위층의 43.6%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의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층의 경우 3-4명 중 1명은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83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N)	χ^2
교 급	초	7.0	28.7	53.6	10.7	100(3358)	1206.386***
	중	15.0	49.1	31.8	4.1	100(3067)	
	일반계고	22.9	55.3	19.7	2.0	100(2137)	
	전문계고	17.7	53.1	27.4	1.9	100 (674)	
	전체	14.1	43.4	36.6	5.8	100(9236)	
경 제 수 준	상	11.6	32.0	44.2	12.3	100(1934)	374.982***
	중	13.9	46.7	35.2	4.2	100(6789)	
	하	28.7	42.8	25.3	3.1	100 (445)	
	전체	14.1	43.4	36.6	5.8	100(9168)	

* $p < 0.05$, ** $p < 0.01$, *** $p < 0.001$

(3) 관련 정책 및 대안

이 절에서는 생활수준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관련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도 이 두 하위영역을 포괄하여 논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두 영역의 정책과 대안을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빈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김미숙, 2011).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지원급여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급여는 제12조의 교육급여 조항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드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대체로 빈곤 계층에 속한 이들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의 각종 복지급여 및 다양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들 법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빈곤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급식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CDA),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이 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청소년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중·석식 중 특성에 맞는 급식형태를 지원하는 식비 지원사업이며, 디딤씨앗통장(CDA)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장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현금후원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로, 저소득 아동 혹은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호, 보건, 복지, 보육·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 및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서비스이다.

이상과 같이 빈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 등 한 영역에만 치중되어 통합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내용이 비슷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며,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좀 더 다각적이고 폭넓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광혁, 2011; 김미숙, 2011). 첫째,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빈곤 정책 및 서비스의 대상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소수의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발생하므로, 급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보다 더 많은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보육료, 사교육비, 교재비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현금지원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를 하는 등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아동·청소년 빈곤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법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들은 각기 분리된 기관에서 관리·감독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연령 혹은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들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 및 이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한 생태체계별 아동·청소년 빈곤정책 수립 및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빈곤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계획 및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이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관을 통해 총괄적인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 및 추적조사(패널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계획 및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의 개발 및 예산의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간의 격차가 빈곤 아동·청소년 간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간 격차가 사업 및 그 실행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지역적 특성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및 종사자 보수교육 체계화, 프로그램 전문화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빈곤 및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의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설종사자와 관리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부모양육훈련,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부모의 사업참여 등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빈곤한 아동·청소년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8) 소결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방지 대책,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생활수준의 7개 하위 영역, 39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장애아 통합교육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대한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배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정원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통합교육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장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친구로 사귄 의향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동·청소년들에게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장애 아동·청소년들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동·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같이 생활함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단지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함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충분히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사고 및 사망률과 관련하여 아동보다 청소년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사망원인의 1순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자살 혹은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 성적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성적 혹은 학업으로 인한 문제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아플 때의 대처방식, 수면부족, 아침식사 결식률도 실제로는 학업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학업을 위해 아파도 참고 견디며 학교에 남아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을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수면부족으로 인해 입맛이 없다거나 학교에 일찍 가야한다는 이유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과중한 학업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과열된 교육열을 하루아침에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흡연과 음주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흡연의 경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1명이, 음주의 경우 5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나 주류 구입도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주류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판매금지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가 부족하여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선망하는 연예인 등을 광고 모델로 기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30%의 이상의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예방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약물 경험률이 높은 고등학생,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예방교육의 효과가 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에게 약물을 판매하는 성인에 대한 약물남용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빈곤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13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 수준에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였을 때 10명 중 1명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급식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상당히 빈번하게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빈곤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빈곤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들이 발생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이 식비 및 학비 지원, 인지 발달 위주의 서비스에 치우쳐 있는바 보다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범죄 피해건수, 학교 내 인권 침해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하위내용은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표(제29조),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남·녀 고등학교 진학 비율’, ‘학교 현황’,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급별 진학률’,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중·고등학교 학업중단률’, ‘특수학교 현황’,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문화기반시설 수,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 시간’ 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기존 지표체계의 발달권·참여권 영역에 속해 있었던 내용이므로 관련지표는 2차년도(2012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5.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의 하위내용은 크게 ‘법적 분쟁상의 아동’ 과 ‘착취 상황하의 아동’ 으로 나뉜다. ‘법적 분쟁상의 아동’ 은 난민아동(제22조),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소년사법(제40조),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2항, 4항), 사회복지지원(제39조)으로 구성되고, ‘착취 상황하의 아동’ 은 경제적 착취(제32조), 마약(제33조), 성적착취 및 학대(제34조),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법적 분쟁상의 아동’ 중 소년사법과 ‘착취 상황하의 아동’ 중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및 학대 관련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1) 소년사법

(1) 지표의 의미

소년사법은 협약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은 범죄를 범한 아동이 그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아기부터 그 인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조화로운 성장이나 사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비행소년의 실정을 근거로 규정되었다. 2항에서는 소년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권리 보장은 타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존중하는 주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년사법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비행을 주시하고 스스로가 비행을 극복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과정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아동의 권리」(2007)를 통해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구체화하였다. 소년사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소년의 재활, 나아가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喜多 외, 2009b).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률’, ‘소년범죄 처리 현황’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지표를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이 지표는 소년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수는 총 89,776명이었으며, 재산범 40,478명(44.1%), 폭력범 23,276명(25.9%), 교통사범 13,842명(15.4%)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년범죄자의 수를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8년도에는 증가율이 급등하였고, 2009년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범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범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은 2008년도에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도에 소년범죄가 증가한 원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소년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5,443명으로 총 소년범죄자의 6.1%에 해당한다. 또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52,685명(58.7%)으로 소년범죄의 처리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보호사건으로 결정 내리는 처분인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 보호조치 소년범죄자는 30,163명으로 전체 소년범죄자의 33.6%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소년범죄자 중 6.1%만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소년범죄자들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소를 당한 소년범죄자의 수는 청소년범죄자 수에 대비하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기소 처분이나 보호처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년범죄자를 처벌하는 대신 '선도조건 부기소유예제도' 등을 활용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표 IV-84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67,478	69,211	88,104	134,992	113,022	89,776
강력범	소계	1,549	1,857	1,928	3,016	3,182	3,106
	흉악범	797	878	1,094	1,427	1,608	999
	성폭력	752	979	834	1,589	1,574	2,107
폭력범	소계	21,009	18,104	23,275	34,067	29,488	23,276
	공갈	238	405	562	1,046	1,495	1,422
	폭행·상해 등	20,771	17,699	22,713	33,021	27,993	21,854
재산범	소계	26,848	29,506	33,659	39,688	45,774	40,478
	절도	22,068	24,842	28,839	33,073	38,494	33,534
	횡령 등	705	997	1,167	1,855	1,664	1,483
	장물	173	222	271	571	820	722
	사기	3,902	3,445	3,382	4,189	4,796	4,739
교통사범		15,000	15,517	21,893	27,666	18,138	13,842
저작권법 위반		-	-	2,338	20,272	7,720	275
기타		3,072	4,227	5,011	10,283	8,720	8,799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백서.

원자료: 대검찰청(2010), 범죄분석.

2010년 자료는 대검찰청(2011), 범죄분석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 주: (1)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2) 흉악범: 살인, 강도, 방화

(3) 폭행·상해 등: 폭행·상해의 죄, 폭력행위등 처벌법(공갈죄 제외), 기타

(4) 횡령 등: 횡령, 배임, 손괴

(5) 교통사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표 IV-85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 송치	가정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조치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2005	67,478 (100)	11,350 (16.8)	40,486 (60.0)	13,555 (20.1)	10 (0.0)	-	109 (0.2)	1,968 (2.9)
2006	69,211 (100)	9,315 (13.5)	43,495 (62.8)	14,105 (20.4)	20 (0.0)	10 (0.0)	103 (0.1)	2,163 (3.1)
2007	88,104 (100)	10,367 (11.8)	54,424 (61.8)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88,932 (65.9)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	113,022 (100)	7,795 (6.9)	71,100 (62.9)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백서
 원자료: 대검찰청(2010), 범죄분석
 2010년 자료는 대검찰청(2011), 범죄분석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3) 관련 정책 및 대안

소년사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들은 소년사법실행체계 및 절차, 소년사법에 대한 특별처우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⁵⁰⁾.

먼저, 소년사법실행체계 및 절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소년사법의 운영을 위한 조직을 따로 설립하고 있어, 소년범죄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 등을 이유로 소년사건처리절차에 개입하여 그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인 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판사, 보호관찰관, 소년조사관 등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년사건대상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소년법대상 상한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 형사책임연령의 설정 및 상한연령의 제한 등의 국제준칙과 규약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50) 소년사법과 관련된 정책과 대안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 제 발굴 자료집에 실린, 「비행 및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안」(김지선, 2011)을 재구성한 것임.

소년이 아니라 지위비행을 저질렀거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소년인 우범소년도 소년사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우범소년을 소년사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받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비행사건을 전건 송치 받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에의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포함)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미성년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소년법의 인권이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에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선의주의를 고수하되 결정전 조사제도를 신설하여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지만,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활용이 임의규정이고, 전체 소년사건의 수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결정전 조사제도는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년사범에 대한 특별처우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한 신체의 자유제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실무 처리과정에서 소년법의 미결구금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검사에 의해서 형사처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구속기소된 소년 중 형사재판의 1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년부에 송치되는 소년의 경우,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교도소의 미결수용실 그리고 대용감방 등에 미결구금되어 있다가 소년부 송치결정과 함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데, 이 때 절차의 지연과 중복이 반복되어 소년범에게 지나친 부담과 피해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소년사건 절차를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로, 관할을 소년법원(소년부)과 형사법원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년법에는 소년범죄자들에게 최종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범들의 생활 환경, 범죄가 행해진 상황을 적절하게 조사함으로써, 소년범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년법원에서 법원조사관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조사,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현행 소년에 대한 조사제도는 조사라는 유사한 기능을 경찰, 검찰,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기관별로 별도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예산과 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과정이 지연되고, 계속되는 조사의 과정에서 소년범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조사인력의 전문화와 조사기법의 과학화를 통해 조사 과정을 간결하게 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년범들을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하기보다는 그 중간단계에서 적절한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로 돌려보냄으로써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와 탈사회화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이버전(diversion)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이버전이 경찰과 검찰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법적으로 규정된 다이버전은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불과하고,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다이버전된 소년의 선도조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입형 다이버전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이버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에 몇 가지 대안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소년사법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년사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전담자를 배치하고, 보직이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소년법에서 삭제하거나 소년법상으로는 우범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규정된 소년복지기관으로의 위탁규정만을 두고, 우범소년에 대한 처우는 사법기관이 아닌 소년복지기관에서 담당케 함으로써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외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소년법원의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법원선의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건처리 절차 및 미결구금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소년법원을 설치하여 여기에 형사부와 소년부를 함께 두어 소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함께 관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결정전 사회조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보호관찰소, 분류심사원 등 각 기관이 상호연계하여 기관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분류심사관, 법원조사관, 소년조사전담 보호관찰관 등 조사전담요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적인 접근방식에 기초한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조사도구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이버전의 효과적이고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현재 경찰실무상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훈방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이버전의 한 형태로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형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소년사법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소년사법기관과 지역사회 민간기관간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기관들 간에 효과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착취

(1) 지표의 의미

경제적 착취는 협약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최저고용연령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저고용연령과 관련하여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73년에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 138호)」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1999년에 비준하였다. 이는 아동 노동의 철폐를 보장하고, 취업의 최저연령을 아동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으로, 특히 취업 최저연령을 의무교육 종료 연령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이 영역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근로 시간’,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 ‘근로여건 만족도’,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지표를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평균 근로 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평균 근로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IV-86>에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제시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근로일수는 한 달 평균 21.2일이었으며, 20~24세 청소년들의 평균 근로일수는 22.6일이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일수인 22.8일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근로시간은 한 달 평균 182.1시간이었으며, 20~24세 청소년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93.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194.8시간보다 낮은 수치이다.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근로일수 대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5시간이었으며, 19세 미만과 20~24세 미만은 모두 8.6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근로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반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소근로자의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되어 있는 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법정기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6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일, 시간)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02	전체	23.5	201.8	23.5	204.3	23.7	195.9
	19세 이하	24.0	208.0	24.2	216.4	23.9	203.9
	20~24세	23.7	199.5	24.0	212.3	23.6	193.4
2003	전체	23.5	201.8	23.4	204.7	23.6	195.2
	19세 이하	23.5	202.3	23.8	211.7	23.4	197.8
	20~24세	23.6	198.9	23.7	212.0	23.5	192.8
2004	전체	24.4	209.5	24.3	212.1	24.7	203.5
	19세 이하	24.5	208.4	24.6	215.1	24.5	204.5
	20~24세	24.6	207.5	24.7	220.3	24.6	200.8
2005	전체	23.2	201.4	23.1	204.3	23.5	194.8
	19세 이하	23.4	198.9	23.5	203.9	23.3	196.4
	20~24세	23.5	198.8	23.8	211.9	23.3	192.1
2006	전체	22.9	198.0	22.9	200.3	23.0	192.8
	19세 이하	23.3	196.8	22.9	200.3	23.4	195.5
	20~24세	23.1	197.0	23.6	209.5	22.8	190.9
2007	전체	22.3	191.5	22.2	194.0	22.3	186.2
	19세 이하	22.6	200.2	23.1	204.4	22.3	198.4
	20~24세	22.4	193.0	23.0	205.8	22.1	186.8
2008	전체	22.0	189.0	22.0	192.0	22.0	183.0
	19세 이하	22.0	186.0	21.0	177.0	22.0	192.0
	20~24세	22.0	189.0	22.0	205.0	22.0	181.0
2009	전체	22.8	194.8	22.7	197.2	22.8	189.6
	19세 이하	21.2	182.1	21.2	186.9	21.2	179.9
	20~24세	22.6	193.9	22.7	205.9	22.6	188.5

* 출처: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각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19세 미만은 하루 평균 8.82시간, 20~24세는 9.0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19세 미만 8.49시간, 20~24세는 8.3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일수 대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남자 아동·청소년들이 여자 아동·청소년들보다 매년 평균 근로시간이 높았다.

②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

근로 아동·청소년의 최저임금미보장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IV-8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9년 기준으로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월평균 급여는 1,10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 청소년의 월평균 급여는 1,38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시간당 급여로 환산해 본다면, 19세 미만의 경우 6,074원이며, 20~24세 미만의 경우 7,122원 이었다. 이는 2009년도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을 웃도는 것으로, 근로 아동·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IV-8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천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2001	792	877	10.8	5.3
2002	874	978	10.4	11.5
2003	903	1,047	3.3	7.1
2004	973	1,112	7.8	6.2
2005	1,059	1,200	8.8	7.9
2006	1,167	1,285	10.2	7.1
2007	1,197	1,324	2.6	3.1
2008	1,166	1,378	-2.6	4.0
2009	1,106	1,381	-5.2	0.3

* 출처: 여성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각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표 IV-88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단위: 개소, 건)

연도	대상 (연소자 고용사업장)	법위반 업체수		법위반 유형별 건수							
		건	개소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사용 금지	연소자 증명서	근로 계약	근로 시간	야업 금지	최저 임금	기타
2001	331	176	110	-	-	78	-	34	22	4	38
2002	524	369	206	9	-	119	-	55	63	5	118
2003	907	839	431	10	-	262	-	64	79	33	391
2004	1,241	1,485	727	8	-	354	-	73	136	60	854
2005	913	1,093	544	7	-	250	-	34	89	36	677
2006	1,502	1,718	876	4	-	450	583	76	198	151	256
2007	1,343	1,672	901	3	-	447	-	63	120	155	884

* 출처: 여성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원자료: 노동부(2007)

연도별 임금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경우,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수준과 비교해볼 때, 평균적으로 근로 아동·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정액이 얼마인지, 초과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 아동·청소년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표 IV-88>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소자고용사업장 중 근로시간, 야업금지,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위반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1,343곳이었으며, 이들 중 901개소(67.1%)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고, 법위반 건수는 1,672건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건수가 법위반 업체수보다 많다는 것은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법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위반 건수 중 근로시간, 야업금지, 최저임금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위반은 63건(3.8%), 야업금지는 120건(7.2%), 최저임금 155건(9.3%)으로 나타났다. 즉,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 10건 중 대략 1건이 최저임금 위반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실제 불법으로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유해업소 등지의 사례까지 추가하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위반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근로시간과 야업금지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위기로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연소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일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근로여건 만족도

청소년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조사에 실린 노동·근로여건 만족도를 분석해보았다. 근로여건은 하는 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직장에서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근로시간, 성희롱 방지노력, 전반적인 근로여건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V-89>에 제시되어 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근로여건 만족도는 15~19세의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가 57.9%로 가장 높았고, 불만족 27.0%, 만족 1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9세의 경우, 보통 54.6%, 만족 28.0%, 불만족 17.5%의 순으로 나타나, 20~29세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여건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15~19세의 청소년들이 근로여건 중 만족감을 나타내는 항목은 인간관계(32.1%), 직장 내의 성희롱 방지 노력(25.3%), 하는 일(22.7%)의 순이었으며,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는 임금(53.4%), 복리후생(41.4%), 직장에서의 장래성(35.4%)의 순이었다. 또한, 20~29세의 경우, 만족감을 나타내는 항목은 인간관계(40.2%), 하는 일(37.1%), 근무환경(31.7%)의 순이었으며, 불만족스러운 항목은 임금(42.7%), 근로시간(29.1%), 복리후생(29.0%)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근로여건 중 인간관계와 하는 일에 있어서 15~19세와 20~29세의 청소년들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은 직장 내에서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 모든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꼽고 있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15~19세의 청소년들은 복리후생이나 직장에서의 장래성에 대해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이들 청소년들의 일이 단순한 노무직이거나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20~29세 청소년들은 근로시간과 복리후생이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는데, 임금과 근로시간 모두가 불만족이라는 것은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이 좋지 않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연도별로 이들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2009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근로여건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89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연도	근로여건	15~19세						20~29세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모르 겠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모르 겠음
2002	하는 일	5.7	19.0	49.3	19.8	5.4	0.9	8.1	26.8	48.5	12.8	3.4	0.4
	인사관리	2.9	6.1	54.6	22.0	5.7	8.8	3.6	11.6	53.2	20.3	6.2	5.1
	임금	3.9	10.4	37.5	35.5	10.5	2.1	2.9	13.8	39.5	31.6	11.7	0.5
	복리후생	3.2	6.7	46.2	23.3	8.9	11.6	2.2	11.9	44.0	25.1	12.6	4.1
	직장에서 장래성	5.8	9.9	30.4	23.0	19.4	11.6	3.7	15.2	42.6	21.7	11.9	5.0
	근무환경	5.9	13.6	50.3	20.1	6.4	3.6	5.1	20.2	48.2	18.2	7.4	0.9
	인간관계	9.0	27.0	49.5	9.8	2.5	2.2	9.6	30.9	47.0	8.9	3.0	0.7
	근로시간	4.9	13.7	45.2	24.5	10.6	1.0	5.4	16.0	41.8	24.9	11.3	0.6
	성희롱 방지노력	7.7	6.8	50.8	7.1	2.8	24.8	9.7	13.7	52.6	6.5	2.2	15.3
2006	하는 일	7.4	16.7	58.9	13.6	2.2	1.1	9.7	28.1	47.5	11.6	2.9	0.2
	인사관리	4.6	7.7	51.1	9.6	4.4	22.5	4.9	15.1	54.0	15.9	5.6	4.5
	임금	4.0	8.0	49.4	33.4	4.3	0.8	4.0	15.6	42.0	28.0	10.1	0.3
	복리후생	3.1	4.8	52.5	18.3	6.2	15.0	5.1	15.4	45.2	21.1	10.3	2.9
	직장에서 장래성	2.2	5.2	35.4	23.6	13.5	20.1	5.7	16.9	42.5	19.2	11.0	4.7
	근무환경	4.8	11.4	58.9	19.1	2.9	2.9	8.2	21.5	48.7	15.3	5.4	0.8
	인간관계	9.5	21.1	58.8	6.6	1.6	2.3	12.3	31.4	46.1	7.5	2.1	0.6
	근로시간	4.7	13.8	57.2	19.0	4.7	0.6	8.1	18.3	42.9	21.1	9.3	0.3
	성희롱 방지노력	10.8	7.5	44.7	6.6	1.9	28.5	16.5	17.0	46.5	4.6	1.3	14.2
2009	하는 일	6.2	16.5	58.5	13.9	4.9	-	6.1	31.0	49.7	10.1	2.7	0.4
	인사관리	1.6	6.3	61.0	22.1	3.0	5.9	2.8	12.0	59.6	17.2	5.6	2.7
	임금	1.9	11.0	33.7	41.2	12.2	-	2.5	13.5	40.9	30.8	11.9	0.3
	복리후생	1.3	6.5	46.4	35.4	5.7	4.6	2.9	17.8	48.7	20.2	8.8	1.7
	직장에서 장래성	1.3	9.3	43.9	24.6	10.8	10.1	3.5	20.7	44.6	18.8	8.7	3.6
	근무환경	4.5	13.9	58.8	14.1	4.8	3.9	5.7	26.0	48.0	14.3	5.3	0.7
	인간관계	6.7	25.4	55.5	8.1	1.1	3.1	8.9	31.3	48.0	8.5	2.7	0.5
	근로시간	5.8	14.3	58.1	17.7	3.8	0.4	5.5	17.8	47.3	21.0	8.1	0.3
	성희롱 방지노력	14.9	10.4	43.9	10.4	-	20.3	12.0	19.2	46.7	5.4	1.9	14.9
	전반적인 근로여건	2.0	13.2	57.9	25.2	1.8	-	2.4	25.6	54.6	15.9	1.6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노동·근로여건 만족도" 재구성

④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과 관련하여,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임금 체불이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초과근무나 약속한 일과 다른 일 수행, 부당해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 폭언 등의 인격모독, 구타나 폭행,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 최저임금미보장 등을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13.7%는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률은 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31.783, p<.001, \chi^2=99.589, p<.001, \chi^2=44.660, p<.001, \chi^2=115.319, p<.001$). 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44.5%, 일반계 고등학생의 15.8%, 중학생의 5.4%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생,

표 IV-90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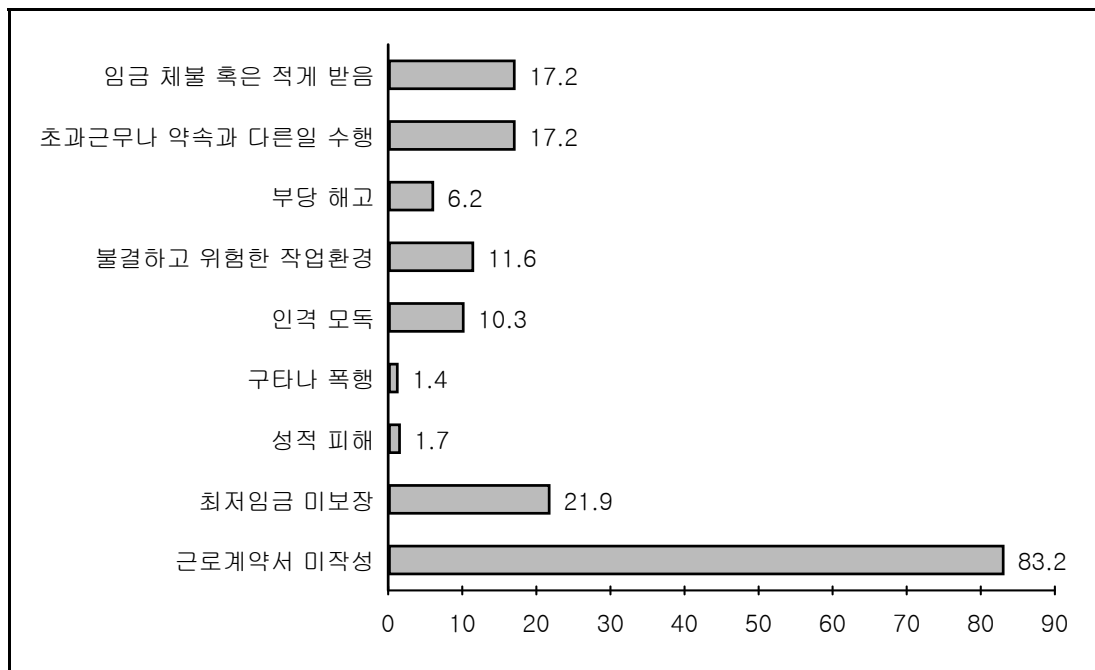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교급	중	5.4	94.6	100(3083)	731.783***
	일반계고	15.8	84.2	100(2147)	
	전문계고	44.5	55.5	100 (676)	
	전체	13.7	86.3	100(5906)	
지역 규모	대도시	10.4	89.6	100(2586)	99.589***
	중소도시	13.7	86.3	100(2568)	
	읍/면	24.6	75.4	100 (752)	
	전체	13.7	86.3	100(5906)	
가족 유형	양부모	12.6	87.4	100(5214)	44.660***
	한부모	22.7	77.3	100 (551)	
	조손가정	19.4	80.6	100 (31)	
	기타	17.2	82.8	100 (93)	
	전체	13.7	86.3	100(5889)	
경제수준	상	11.6	88.4	100 (644)	115.319***
	중	12.5	87.5	100(4799)	
	하	31.2	68.8	100 (414)	
	전체	13.7	86.3	100(5857)	

* $p<0.05$, ** $p<0.01$, *** $p<0.001$

중학생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2-3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24.6%, 중소도시의 13.7%, 대도시의 10.4%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지역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22.7%, 조손가정 19.4%, 양부모가정 12.6%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상위층이나 중위층의 청소년들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43] 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의 83.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21.9%,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률,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률이 각각 17.2%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한 처우 유형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모두 임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3명 중 1명 이상이 임금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타나 폭행, 성적 피해와 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경험률은 각각 1.4%와 1.7%였다.



【그림 IV-43】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표 IV-91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교급별)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초과근무나 약속과 다른일 수행	중	90.5	8.3	1.2	100(168)	28.318***
	일반계고	82.3	15.3	2.4	100(339)	
	전문계고	79.1	11.6	9.3	100(301)	
	전체	82.8	12.5	4.7	100(808)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함	중	92.9	6.5	0.6	100(168)	30.255***
	일반계고	90.6	8.6	0.9	100(339)	
	전문계고	83.4	8.6	8.0	100(301)	
	전체	88.4	8.2	3.5	100(808)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받음	중	87.4	10.8	1.8	100(167)	19.379**
	일반계고	74.9	19.8	5.3	100(339)	
	전문계고	76.4	14.3	9.3	100(301)	
	전체	78.1	15.9	6.1	100(807)	
근로계약서 작성	중	91.1	7.7	1.2	100(168)	16.385**
	일반계고	83.8	12.7	3.5	100(339)	
	전문계고	78.1	19.6	2.3	100(301)	
	전체	83.2	14.2	2.6	100(808)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교급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초과 근무 혹은 다른 종류의 일을 함,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함, 최저임금미보장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8.318, p<.001, \chi^2=30.255, p<.001, \chi^2=19.379, p<.01$). 교급에 따라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시 초과 근무 혹은 다른 종류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문계 고등학생 20.9%, 일반계 고등학생 17.7%, 중학생 9.5%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초과 근무나 약속과 다른 종류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이러한 종류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 해 본 경험률을 교급별로 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16.6%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아본 경험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25.1%, 전문계 고등학생의 23.6%, 중학생의 12.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에 3회 이상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교급별 차이를 보였는데($\chi^2=16.385, p<.0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전문계 고등학생은 21.9%, 일반계 고등학생은 16.2%, 중학생은 8.9%로 어린 학생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근로계약서는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시작이므로 반드시 작성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3) 관련 정책 및 대안

여기서는 근로청소년의 특별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관련 사업과 그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청소년 특별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의 5장에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⁵¹⁾ 이 규정의 62조에는 근로청소년의 최저연령과 취직인허가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인 자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15세 미만인 자에게 취직인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63조의 사용금지 규정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들에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64조의 연소자 증명서 비치 조항, 제65조의 근로계약의 조항, 제66조의 임금청구 조항, 제67조의 근로시간 조항, 제70조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근로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실제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자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는 바 있다.

그러나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법에 대한 홍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비정기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연소자를 고용하고

51) 근로청소년의 법적 보호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아동·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08)에 실린 근로청소년 특별보호(pp.330-334)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있는 업소나 사업장에서 근로청소년의 노동 상황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법을 어길 경우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소자를 고용한 업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을 어긴 것으로 적발된 업소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청소년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근로청소년 보호 조치와 관련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근로 환경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약 근로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등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성적착취 및 학대

(1) 지표의 의미

성적 착취 및 학대는 협약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거나, 외설스러운 공연 등에 착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 간, 다국 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보완하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4년에 비준하였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 ‘성매매 경험률’, ‘성피해 경험률’ 지표를 산출하였다.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①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

경찰청의 집계에 따른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은 <표 IV-9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된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은 경찰청에서 집계한 검거 건수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기준으로 청소년 성매매 발생으로 검거된 건수는 총 815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총 2,182명이었다. 이 중 성매매 행위자는 1,543명이며, 성매매 업주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264명,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3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검거된 사람 중 구속된 사람은 125명으로 검거된 사람의 5.7%에 불과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아직 미성년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 죄질이 더 심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검거인 중 구속된 인원이 5.7%에 그쳤다는 것은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며, 이는 청소년 성매매의 비율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검거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검거인원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검거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대상청소년의 증가비율이 매우 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매매 대상청소년 교육수강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2006년 6월 30일)에 따라 대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지침 때문에 성매매 대상청소년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10). 검거 인원 중 구속된 사람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검거인원 대비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1.5%이던 것이 2006년에 8.5%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표 IV-92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2007	839	2,582	1,835	242	505	126	2,456
2008	850	2,112	1,464	196	452	81	2,031
2009	815	2,182	1,543	264	375	125	2,057
2010.7	209	440	335	8	24	22	418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백서.
원자료: 경찰청(2010.7).

② 성매매 경험률

청소년들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의 경험률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의 청소년 조건만남 경험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IV-93〉). 2010년 기준으로 일반청소년의 조건만남 경험률은 0.4%인 반면, 위기청소년의 조건만남 경험률은 4.8%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청소년들의 경험률이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경험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들이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점점 성매매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표 IV-93 조건만남 경험

(단위: %)

	조건만남 경험률	조건만남 제안 경험 및 경로								
		없다	채팅	전화방	친구나 선후배	유흥업소	부킹	기타	무응답	
일반	2009	0.3	94.6	2.7	0.2	0.6	0.2	0.6	1.5	-
	2010	0.4	92.6	1.3	0.1	0.2	0.1	0.2	0.3	5.2
위기	2009	2.1	84.2	8.1	0.3	3.1	1.7	2.9	2.6	-
	2010	4.8	82.1	7.0	-	2.5	0.4	0.9	0.4	6.7

* 출처: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조건만남 경로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모두 인터넷을 통한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③ 성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성피해 경험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률과 성적 피해 후의 아동·청소년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피해 후 대처방법으로는 부모 혹은 경찰에 알렸는지의 여부와 주된 의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표 IV-94〉), 전체 아동·청소년의 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경험률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규모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chi^2=10.960$, $p<.01$, $\chi^2=31.310$, $p<.001$),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4.8%), 대도시(3.4%), 중소도시(2.9%)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순으로 성적인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층의 아동·청소년(7.8%)이 상위층(3.5%)이나 중위층(3.0%)의 아동·청소년보다 성적인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94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3.4	96.6	100(3923)	10.960**
	중소도시	2.9	97.1	100(4125)	
	읍/면	4.8	95.2	100(1229)	
	전체	3.4	96.6	100(9277)	
경제 수준	상	3.5	96.5	100(1944)	31.310***
	중	3.0	97.0	100(6819)	
	하	7.8	92.2	100 (447)	
	전체	3.3	96.7	100(9209)	

* $p<0.05$, ** $p<0.01$, *** $p<0.001$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95〉에 제시되어 있다. 성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중 보호자에게 이를 알린 경우는 전체의 37.5%인 것으로 나타나 성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피해 경험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4.594$, $p<.05$, $\chi^2=64.199$, $p<.001$, $\chi^2=11.304$, $p<.01$), 이를 종합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급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성피해 경험을 부모에게 알리는 비율이 높았다. 성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0%로 성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1명 정도만이 경찰에 신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고율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chi^2=9.127, p<.05$), 하위층, 상위층, 중위층의 순으로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층의 경우, 하위층의 신고율의 약 1/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위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감추려는 경향이 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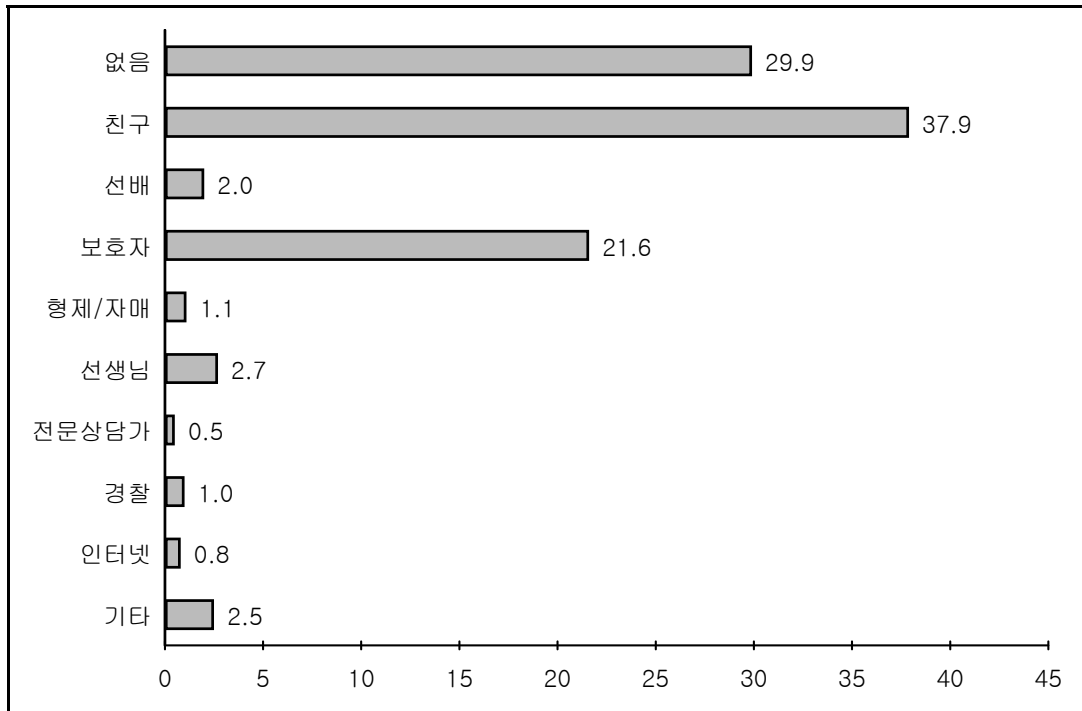
표 IV-95 성피해 보호자 인지율 및 경찰 신고율

(단위: %, 명)

구 분		인지/신고	비인지/미신고	전체(N)	χ^2	
보호자 인지율	성별	남	31.7	68.3	100(157)	4.594*
		여	43.4	56.6	100(156)	
		전체	37.5	62.5	100(313)	
	교급	초	64.7	35.3	100(113)	64.199***
		중	33.5	66.5	100(91)	
		일반계고	12.4	87.6	100(86)	
		전문계고	13.0	87.0	100(23)	
	지역 규모	전체	37.5	62.5	100(313)	11.304**
		대도시	42.7	57.3	100(133)	
		중소도시	41.0	59.0	100(121)	
		읍/면	19.0	81.0	100(60)	
	경찰 신고율	경제 수준	전체	37.5	62.5	100(313)
상			15.4	84.6	100(67)	
중			7.3	92.7	100(200)	
하			24.3	75.7	100(35)	
		전체	11.0	89.0	100(302)	

* $p<0.05$, ** $p<0.01$, *** $p<0.001$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로 의논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44]와 같이, 친구가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음이 29.9%, 부모님(보호자)이 21.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피해 아동·청소년 중 29.9%가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3-4명 중 1명은 성적인 피해로 오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으로, 성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수치심이나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44】 성피해 의논 대상(%)

(3) 관련 정책 및 대안

아동·청소년의 성적착취 및 학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경우 이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주도 하에 성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사업, 성보호제도 등의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있다⁵²⁾.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향후 20년간 성명, 사진, 나이, 주소, 직업,

52) 여성가족부의 성보호정책 가이드(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1.jsp)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범죄경력 등이 등록 관리되고, 형 집행 종류 후 향후 5-10년간은 열람을 제공하여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성범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거리낌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외에도 성범죄 예방 사업의 하나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보호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업제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연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홍보가 부족하고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 결과로 성범죄자들이 관련 교육 기관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의 피해 및 가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인지행동치료교육 등 선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매수 피해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전문가가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진로탐색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알선영업행위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약한 수위의 처벌로 인해 형 집행을 마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 중에는 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후에도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형태의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성범죄자들이 행한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가했을 경우 형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했을 당시에 심신이 바르지 못한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률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이 범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나 심리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학대 상황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들의 정신적·심리적 황폐화를 촉진시킨다. 실제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사나 심리 과정에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인권과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가해 아동·청소년들 및 부모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해 아동·청소년들과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들이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소년사범, 경제적 착취, 성적착취 및 학대의 3개 하위 영역, 8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소년사범의 지표는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비율’이며, 경제적 착취의 지표는 ‘평균 근로 시간’,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 ‘근로여건 만족도’,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이고, 성적착취 및 학대의 지표는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 ‘성매매 경험률’, ‘성피해 경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직인허가증 제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등의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연소근로자로 일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임금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근로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임금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행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연소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근로에 참여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연소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적 착취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 실제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검거된 사람 중 구속된 사람은 해마다 5~10%에 불과하고, 성적 학대나 추행 등을 행하여 구속된 사람들의 형량도 5년 이하이며, 그마저도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로부터 이후 어떤 보복을 당할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이 피해 입은 사실을 오히려 감추고 성적인 피해로 오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결과, 성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2-3명 중 1명만이 부모에게 알리고, 10명 중 1명만이 경찰에 신고하며, 3-4명 중 1명은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뒤따르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정 책 제 언

1. 정책과제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체계도
3. 정책의 우선순위

제 5 장 정 책 제 언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른 클러스터 체계로 영역 분류하고 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인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영역 분류되어 있는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⁵³⁾을 개선하고자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영역별로 관련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모니터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주로 중앙부처의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책들이며,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다.

1. 정책과제

1)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의 수립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행동계획(NAP)」이 수립되어야 한다⁵⁴⁾. 「국가행동계획」에 대해서는 1990년 세계아동정상회담과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UNGASS)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청소년정책기본계

53)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영역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개념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영역에 속해있는 개별지표들이 상호 배타적일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54) 여기서 말하는 「국가행동계획(NAP)」이란 법무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는 별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만을 다루는 계획을 의미함.

획)과 같은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본계획들은 「국가행동계획」과 연동되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거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국가행동계획」과 각 중앙부처의 기본계획들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2)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의 기능 강화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총괄·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동·청소년정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괄·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보다는 사안별로 실무협의회를 활발히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부처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사안들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해 간다면 실효성 있는 총괄·조정 업무가 가능할 것이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조정이 어렵지만, 실무적인 조정만 이루어져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사안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를 통한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거나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관계정립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 두 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지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향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할 시기(2008-2009)에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구상되었던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기구의 기능 강화

공공의 아동 권리 모니터링 기구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설립·운영해 오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2011년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청소년희망센터」가 있다. 그러나 두 기구 모두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2011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예산은 1억원이고, 「청소년희망센터」 예산은 1억2천만원에 불과하다. 향후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두 기구 간의 연계협력도 시급하다. 만일 각 부처의 정책만을 모니터링 한다면 협력의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의 정책으로 여러 부처의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조정 범위 내에서의 모니터링 대상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기구의 연계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연계협력의 방안은 정책과제 2)항에서 제시한 두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적인 상설기구화를 위해서는 행정, 입법,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기구가 필요하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을 갖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바대로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보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기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지역거점의 운영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거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청소년권리센터가 광주 YMCA, 흥사단,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월드 비전에서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지역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08년에 실시된 「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특정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그 실효성을 검토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갈 필요가 있다. 그밖에 아동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UNCRC

NPO 연대, 세이브더칠드런의 권리옹호부,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민변 등 민간의 모니터링 활동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옴부즈퍼슨 제도의 개선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옴부즈퍼슨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옴부즈퍼슨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권리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발생된 문제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의견표명을 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옴부즈퍼슨이 조사권을 가지는 독립된 제3의 기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만일 중앙차원에서 옴부즈퍼슨 제도가 운영되기 어렵다면 지역별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역에서 옴부즈퍼슨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8년 12월 효고현 카와니시시에서 「카와니시시 아동·청소년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가 아닌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 또는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喜多 외, 2009a). 조례 제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옴부즈퍼슨 제도는 4)항의 지역거점 운영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아동·청소년 친화지수의 개발

아동·청소년 친화지수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 친화지수 개발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친화지수가 개발되어 매년 지역별로 아동·청소년 친화지수를 비교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아동·청소년 친화지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전 모니터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9월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8차 회기 우리 정부의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이 도입될 때에는 반드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도 이 연구에서 산출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차세대)위원회의 역할은 일종의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이지만,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넘어 광범위하게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8)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전국에서 선발된 대표청소년들(480명)이 청소년정책의 대안을 발굴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청소년특별회의」, 2010년 5월 현재 176개 지자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지역에 따라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아동총회」와 같은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활동이 권리 모니터링 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기구들의 주된 활동은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권리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핀란드의 「청소년의 목소리」가 좋은 사례이다.⁵⁵⁾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이외의 채널도 마련되어야 한다.

55)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는, 매년 3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초·중·고 학생대표들이 참석하는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가 열린다. 참석한 학생들이 학교별로 발표를 하면, 토론을 거쳐 예산배당을 투표로 확정한다. 회의에는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대표나 기자들도 초대되어 방청할 수 있다
(<http://blog.daum.net/hakbumosangdam/5809056>, 검색일=2011년10월22일)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여부를 아동·청소년 친화지수에 반영하고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게 되면,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인권교육의 수단으로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9) 학부모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단의 운영

학부모에 의한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각종 학부모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대안을 찾음으로써 다른 유형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 온라인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지원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니터링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모바일 또는 웹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나 「청소년희망센터」에 둘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SNS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정책과제 11)항의 권리 모니터링 활동 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되면,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11)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곧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지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이나 학부모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지표는 적절히 재가공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물은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안내서나 매뉴얼 같은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자료들은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자료들은 아동·청소년의 연령발달에 맞춰 수준별로 개발되어야 한다. 취학 전 어린이용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용 및 초등학교 고학년용과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성인용과 같이 학교급이나 연령발달에 맞는 교육 자료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표 또는 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되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종사자들이 인권의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 등의 평가지표에 자체 인권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여부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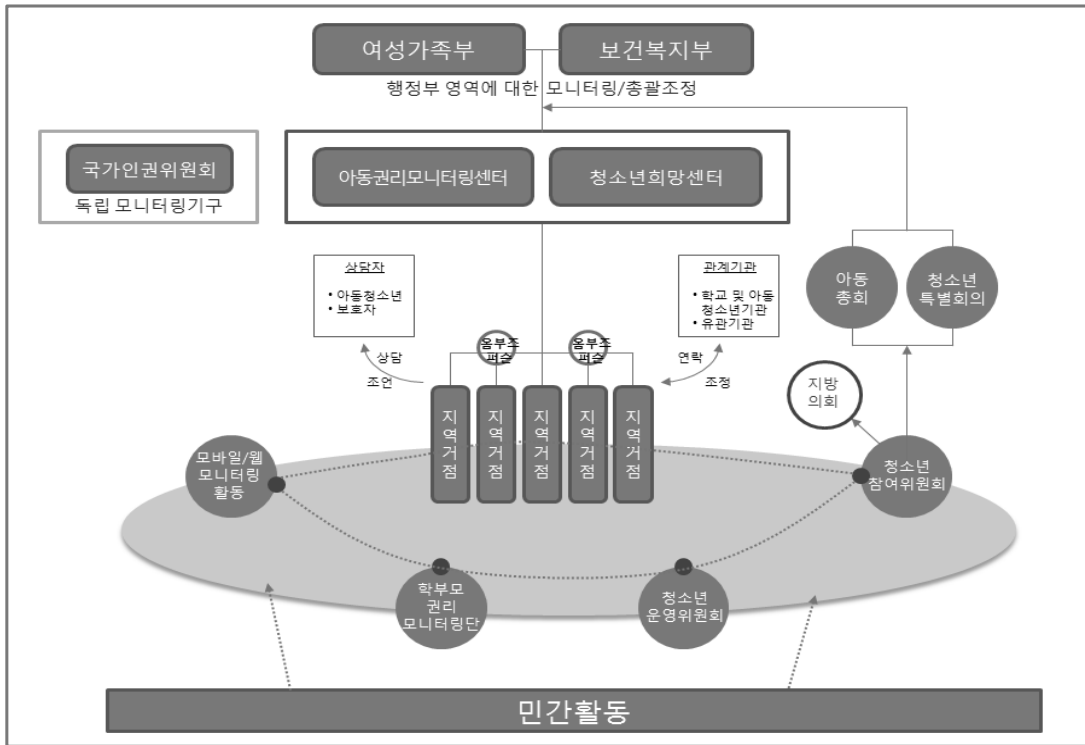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제언대로 추진된다면,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은 [그림 V-1]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학부모에 의한 권리 모니터링 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아동·청소년에 의한 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민간단체의 권리 모니터링 활동과 연계될 것이며, 그 결과는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지역거점을 통하여 수집될 것이다.

둘째, 지역거점에 ombudsman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조언이 이루어지고, 관계기관과 연락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사항들이 조정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결과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되고,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요구가 전달될 것이며, 각 지역의 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대한민국아동총회」 및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하여 정부에 건의되거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지역거점으로부터 수집된 권리 모니터링 활동 결과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나 「청소년희망센터」를 통하여 종합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가 총괄·조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부서를 두어 독립적인 상설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것이다.



【그림 V-1】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3. 정책의 우선순위

앞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표 V-1>과 같다. 우선순위는 크게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다음과 같다.

1) 단기 추진 과제

- (1)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이 자료는 모든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며 단기에 개발이 가능하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교재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워크북과 같은 형태의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권리 모니터링 활동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해서 시급히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2) 학부모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단 운영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조직에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되는 것만으로도 모니터링 활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의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학부모 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학부모 조직을 활용한다면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와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와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연계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모니터링 활동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공유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유엔의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온라인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기반 구축

권리 모니터링 교육 자료가 개발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온라인 권리 모니터링 활동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권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일은 여러 주체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상설 권리 모니터링 기구로서 가장 적절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2) 중장기 추진 과제

(1)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의 수립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모든 아동·청소년 정책이 잘 조율되고, 부처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지역거점 운영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지역거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8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했던 것과 같은 시범사업의 단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이다.

(3) 아동·청소년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옴부즈퍼슨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등 가시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지역거점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할 중장기적 과제이다.

(4) 아동·청소년 인권지수(친화지수) 개발

아동·청소년 인권지수 또는 친화지수의 개발은 중요하지만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생산한 인권지표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이 체계화되고 안정화되더라도 각 지표들을 지수화 하는 과정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이를 위한 학문적인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정책적 활용성을 갖춘 지수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 도입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제반의 제도와 아동·청소년 친화지수 개발 작업 등이 연동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옴부즈퍼슨 제도와 연동하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 도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지자체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방식의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6)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의 연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의 연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단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총괄조정기구 간의 연계 등을 포함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전반의 조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중장기적 과제이기도 하다.

(7) 아동정책조정위원회-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연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연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두 기구의 연계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이나, 아동·청소년 정책 이외에도 많은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V-1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정책 일람

정책과제	단기	중장기	담당부처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와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모바일/웹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기반 구축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학부모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단 운영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법무부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지역거점 운영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개선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지수(친화지수) 개발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 도입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의 연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연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은정(2011).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pp.1-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unSc.do?menuId=10&pageIndex=2§ion=licLmst&dicClsCd=&query=%EC%95%84%EB%8F%99>(2011. 9. 26).
-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입양특례법.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C%9E%85%EC%96%91#A_JAX(2011. 9. 26).
-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55#0000>(2011. 9. 26).
-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C%9E%85%EC%96%91#liBgcolor0>(2011. 9. 26).
- 국가인권위원회(2011).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487&page=2(2011. 10. 20).
- 국가인권위원회(2008). 과도한 두발, 복장 검사 없앤다-각 시·도 교육청, 학생체벌 금지, 과도한 두발·복장 검사 금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키로.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57388&page=1(2011. 10. 21).

- 국가인권위원회(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인권교육 경험 많으나 교육 내용 보완 필요-.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602709&page=1(2011. 10. 6).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광기(2011). 아동·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pp.117-12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대유(2011).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pp.73-8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선(2011).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pp.105-1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기(2011). 학생 체벌 금지와 그 대안 모색.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20주년,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자료집, pp.17-37.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문길·김태완·전지현(2010). 2010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김태완(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미숙·조애저·양심영·배화옥·김효진·양현화(2008). 아동청소년 복지수요 추계 연구 I.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박세경·황옥경·장보현·이건우(2007).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2006. 4-2007. 3).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김승권(200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의 개념 및 방향과 통합 법률체계 재편방향.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1차 종합토론회 자료집, pp.1-2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승권·김형욱·정수진(2008).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2007. 4 - 2008. 3).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영(201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정립.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 자료집, pp.2-1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김경준·이혜연·김세진·김형욱·박진·배경내·이용교·이중섭·황옥경(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나(201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비판적 검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 자료집, pp.21-2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우(2011).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pp.35-4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검찰청(2009). 범죄분석.
- 대검찰청(2010). 범죄분석.
- 대검찰청(2011). 범죄분석.
- 대한민국정부(1994).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 대한민국정부(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정부(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Ⅴ: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김희진(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정량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9). 2009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 보건복지부(2010).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1). 2010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2011). 2011 아동분야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0). 200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
- 서문희·안현애(2003). 정책분석: 아동권리지표의 생산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주미(2003).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이념의 방향과 과제-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pp.171-194.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1.jsp(2010. 10. 25).
- 오선영(2011). 요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pp.85-10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UNICEF(2001).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1.
- UNICEF(2011). 2011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주요내용: 청소년기의 중요성 기회와 투자의 시기.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일반논평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일반논평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5). 일반논평 7: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unicef.or.kr/crc>(2011. 5. 16).
- 이경선(2011).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 pp.15-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호(2008).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에 대한 제언-생애 주기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재설계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제2호, pp.49-7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8(2011. 10. 26).
- 이봉주 · 이숙 · 황옥경 · 김혜란 · 박현선 · 김경륜 · 윤선화 · 이호균(2006). 2006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소희 · 김민정(2000). 청소년 문화복지지표체계개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권 제2호, pp.61-83.
- 이소희 · 김민정 · 김혜영(1999). 청소년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권 제2호, pp.27-46.
- 이양희(2011).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20주년,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자료집, pp.3-13.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용교(2008).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4호, pp.183-201.
- 이용교 · 박창남 · 이중섭(2007).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II: 청소년 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재연 · 안동현 · 황옥경(2007). 아동과 권리. 서울: 창지사.
- 이재연 · 이용교 · 강현아 · 김덕순 · 김영지 · 노경주 · 손병덕 · 연홍숙 · 황혜원(2006).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종원 · 장근영 · 김형주(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수(2011).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대안.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전문가 워크숍: 아동 · 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 자료집, pp.45-6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연 · 김영지 · 김신영(2009). 아동 · 청소년 권리지수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박형란 · 구현경(2009).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 년정책연구원.
- 장화정(2011). 2001-2010년 주요 통계로 보는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현황보고세미나(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 자료집, pp.5-34. 서울: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정영순(1997). 아동복지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정책수립을 위한 문제파악과 서비스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제11호, pp.337-376.
- 조남훈, 사은령, 손숙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연구(1): 총괄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명환·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질병관리본부(2010).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통계청(2010).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11). 2010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11). 청소년 통계.
- 표시열(2008).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체벌·징계절차·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pp.151-172.
- 한국아동권리학회(2001).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 홍영오(2008).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uer, R. A.(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 Child and Youth Welfare Association(2010). *First children and young people's report on UN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Germany: A report card for children's rights in Germany 2010*.
- Children's Defense Fund(2010).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10*.
- Children's Defense Fund(2011).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11*.
- Chinyangara, I., Chokuwenga, I. Dete, R. G., Dube, L. Kembo, J., Moyo, P., and Nkomo, R. S.(1997). Indicators for children's rights: Zimbabwe country case study, 1997

- report. http://child-abuse.com/childhouse/childwatch/cwi/projects/indicators/Zimbabwe/ind_zimbabwe.html(2011. 2. 10).
- Dalkey, N. C., and Roureke, D. L.(1973). The delphi procedure and rating quality of life factors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quality of life concept*.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http://www.childstats.gov>(2011. 2. 10).
- National Sleep Foundation(2011). How much sleep do we really need?. <http://www.sleepfoundation.org/article/how-sleep-works/how-much-sleep-do-we-really-need>(2011. 8. 30).
- Moore, W. E., and Sheldon, E. B.(1968).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ment*. NY: Russell Sage Foundation.
- Save the Children(2011). *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11*.
- The Annie E. Casey Foundation(2010). *2010 kids count data book*.
- The Children's Rights Alliance(2011). *Report card 2011: Is the government keeping its promises to children?* Ireland.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2006).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9.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General Comment No. 10.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2010). Harmonized treaty specific reporting guidelines. CRC/C/58/Rev,2.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2011).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UNICEF(2007).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喜田明人・森田明美・荒牧重人・李在然・安東賢・李亮喜(2009a). **子どもの権利**. 東京: 日本評論社.
- 喜田明人・森田明美・広沢明・荒牧重人(2009b). **子どもの権利条約**. 東京: 日本評論社.



부 록



아동권리협약

배포: 일반
2011년 10월 6일

사전미편집본

원본: 영어

아동권리위원회

제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 - 2011년 10월 7일

협약 제44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1.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에 열린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와 CRC/C/SR.1645 참조)에서 대한민국의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고 2011년 10월 7일에 열린 1668차 회의(CRC/C/SR.1668 참조)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I.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 지침에 따라 제출된 당사국의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와 사전질의목록에 대한 서면답변(CRC/C/KOR/Q/3-4/Add.1)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성격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부대표단과 나눈 건설적인 대화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II.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와 진전사항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의 채택을 환영한다.
 - (a)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 (b) 2011년 9월 민법 개정
 - (c)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d) 2011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정
 - (e) 2010년 3월 가사소송법 개정
 - (f)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g)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 (h)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4. 또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비준 및 가입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CRPD)
 -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5.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III.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

A.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제4조, 제42조 및 제44조 6항)

•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6. 위원회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SC/KOR/CO/1, 2008)와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AC/KOR/CO/1, 2008)에 대한 최초 보고서와 당사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의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 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에 대해 당사국이 수행한 노력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 사항의 일부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7. 위원회는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 포함된 권고사항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소위원회의 설치, 체벌의 포괄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의 학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검토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협약에 대한 유보사항

8. 위원회는 2008년 10월 협약의 제9조 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보철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자격이 있고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이 허가되도록 보장한 조항인 제21조 (a)항과 당사국의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를 받고 있거나 고발당한 모든 아동이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의해 심의 받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인 제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9.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을 방해하는 제21조 (a)항 및 제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입법

10. 위원회는 당사국의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에는 국내법이 충분치 않으며 법원이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협소하게 규정된 예외 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이 임신한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임신한 청소년을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 학업의 강제 중단, 입양을 목적으로 한 자녀와의 강제 분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임신한 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적 결정에 적절하게 적용될 있도록 관련 법안의 확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청소년 비혼모가 안전하게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고 불법 낙태와 강제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낙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조정

12.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당사국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CPCC)가 2008년 이후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약의 이행조정의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당사국의 아동 및 청소년정책이 개별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 이행되고 있기에 야기될 수 있는 정책의 분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의 설립을 주목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의 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하고 강화시키거나, 충분한 권한과 적절한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적합한 기구를 설립한다.
 - b)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 간, 관련된 국가, 지역 및 지자체 단체들 간의 관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2007년 5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에 존중을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다루는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 기반의 국가행동계획의 결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현재 계획의 종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후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협약의 전 분야를 다루고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함께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허용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시민 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완전한 협의를 통하여 2011년 이후의 추후 국가행동계획의 준비를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유엔아동특별총회의 결과 문서인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과 그 중간 점검 보고서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

• 독립적인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 이하 모니터링센터)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 권리옴부즈퍼슨 제도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니터링센터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모니터링센터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통제하는 예산에 종속되어 있다.
 - 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퍼슨 시스템이 아동권리 침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진정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모니터링센터의 권한이 당사국이 수행하는 연례 성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3월 21% 축소되었으며, 위원회의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협약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퍼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독립적인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 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독립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아동권리의 전문화를 위한 적절한 지위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자원 배분

18. 위원회는 사회 부문의 이행을 위해 배분된 재정 자원의 증가를 환영한다(2008년도에 비해 16.5% 증가). 하지만 위원회는 당사국의 향상된 경제 발전 상태의 맥락에서, 가용 자원에 비례하여 현재 재정 자원 배분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09 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향상된 당사국의 경제 발전 상태와 OECD 수준에 보다 근접하도록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수준을 재검토하고 증가시킨다.
- b) 아동 권리의 적절한 실현을 보장하고 각 지자체 및/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중앙 및 지자체 수준에서 재정 자원 할당을 평가한다. 이러한 취지로 부문 및 지자체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지표에서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할당한다.
- c) 예산 전반에 걸쳐 아동을 위한 자원의 할당 및 사용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여 아동에 대한 투자에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동 권리 접근법을 활용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추적 시스템이 소녀 및 소년에게 끼친 이러한 투자의 상이한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어떤 부문의 투자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영향 평가에 사용될 것을 촉구한다.
- d) 가능하다면, 자원 할당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성과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라는 UN의 권고를 따른다.
- e) 대중, 특히 아동과의 대화를 통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예산 편성을 보장한다.
- f)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적 조치가 필요한 불리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예: 난민 또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전략적 예산 수준을 정하고 경제 위기, 자연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 상황에서도 이러한 예산 수준이 보장되게 한다.

- g) "아동권리를 위한 자원 - 당사국의 책임(Resourc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Responsibility of States)"에 관한 2007년 일반 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 채택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

• 통계 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통계자료 수집 과정에 방법론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분야에 관한 분산된(민족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배경별)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상대적 빈곤 및 극빈 상태의 아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빈곤 아동에 관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지방 정부의 예산 및 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2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이 민족, 성, 연령,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협약의 전 분야를 다루는 분산된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자료에 나타난 경향과 관련하여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보금, 인식 증진 및 교육

22.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과 과정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혹은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의 협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한다.
23.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과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포함시킨다.
 - b)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혹은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한다.

c) 협약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 국제 협력

24.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대된 것을 인정하지만, 당사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의 수준은 약 0.13%로서, 이는 2015년까지 도달하겠다고 약속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GNP의 0.7%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대해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GNP의 0.7%를 달성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초과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개발도상국과 맺은 국제협력협정의 최우선 사항으로 아동 권리 실현을 넣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수혜국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아동 권리 및 비즈니스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국가 중의 하나인 당사국의 비즈니스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 현재로서는 오로지 환경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 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근로 기준과 최저 임금을 주로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나 해외에서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가 없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a) 당사국은 아동 강제노동으로 ILO와 유럽 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에 연루되고 있다.
- b) 당사국이 발주한 사업들이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과 주거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주는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
- c) 당사국이 체결하였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 영향 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위원회는 보고서 "보호, 존중 및 구제"를 채택한 2008년 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이 문제의 후속 조치를 위한 새로운 실무 그룹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모색할 때 아동의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에게 공급망이나 협력 업체를 통해 국내외 기업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인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 모델 채택을 증진시킨다. 보고에 아동권리지표 및 변수들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요청한다.
- b) 아동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고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에 아동의 노동력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요구하는 해당 무역 협정 및 국가 법률을 적용하여 제품의 반입을 모니터링한다.
- c) 당사국의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고,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사전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과정에 따라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d)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B. 일반 원칙 (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적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문화 또는 이주 배경을 가지거나 탈북한 아동, 난민 아동, 장애 아동, 비혼모(특히 10대 청소년)에 대한 국가지원조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협약의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한다.
 - b) 인식 제고 및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c) 십대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자살예방 기본계획(2004)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임하는 당사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수준의 자살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31. 위원회는 아동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체계 내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 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의 지침으로 사용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자살 위험이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지원하는 예방 조치와 후속 절차를 포함한 정책 및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

32. 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된 당사국의 법률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아동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법적 판결 및 행정적 결정에서 이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뿐 아니라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절하게 통합되고 일관되게 적용될 것을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사법적, 행정적 판단과 결정에 대한 법적인 논의도 이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아동 견해에 대한 존중

34.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이 조직한 회의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법적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아동(특히 15세 이하의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한다.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게 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이 협약 제12조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 내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b)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아동이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할 권리에 관해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c) 정기적으로 어린이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 (d)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한다.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제7조, 제8조, 제13-17조, 제19조, 제37조 (a)항)

•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 출생등록 신고를 하기에는 당사국의 현행 법률과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서, 십대 비혼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난민, 망명 신청 또는 불법 이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나 일관된 방법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7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출생등록 시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증할 것도 촉구한다.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에서 강제적인 종교 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단체에서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자발적으로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조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적절하게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제14조 3항에 따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식사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한 특정 종교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제한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허용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는 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표현,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사항(CRC/C/15/Add.197, 37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학교 밖 아동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제12-17조의 관점에 따라 (i) 학교 내 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주도하고, (ii)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미있는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교 안팎에서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당사국이 법률과 교육부 지침 및 학교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양육환경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전의 권고(CRC/C/15/Add.197, 38항)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한다.
- b)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공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의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한다.
- c) 체벌의 희생자인 아동이 관련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러한 학대를 보고할 법적 의무가 좁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왕따)의 빈도와 심각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에 대해 환영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 및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대 및 방임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과 재활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가 적절하게 고려된 학대 및 방임 신고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괴롭힘(왕따) 행위를 포함한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시키고 확대한다.
- b) 지역 수준에서 더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 방임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과 재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보호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할당한다.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를 고려한다.

46. 위원회는 아동 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연구(A/61/299)를 참조하여, 당사국이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a) 특히 성(gender)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동 폭력에 관한 유엔 연구의 권고 사항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을 최우선시 한다.
 - b)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유엔 연구의 권고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보고관이 강조한 내용을 포함한다. 즉:
 -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의 개발
 - (ii)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관한 국내법의 명백한 금지 도입
 - (iii) 아동 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보급 및 연구 의제를 다루는 국가 시스템 강화
 - c) 아동 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보고관, 유엔아동기금(UNICEF),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관들, 특히 세계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HCH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하고 이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요구한다.

D.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협약 제5조, 제18조 1-2항, 제9-11조, 제19-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

•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 아동에게 가족 형태의 돌봄을 제공하고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시설을 설치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양육 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의 행정 관리만을 평가하고 양육의 질, 실무자의 기술 및 교육, 제공되는 처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 또는 방임 사례를 다루기 위한 진정 절차에 관한 정보의 부족에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 시스템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협약 제25조에 따라 대안양육을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양육의 질, 아동 권리에 대한 것을 포함한 관련 실무자의 정기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유형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보장한다.

- b) 대안양육 환경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하여 진정 접수,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한다. 또한,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 절차, 상담, 치료 및 기타 적절한 재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c) 대안양육 환경에 있는 아동이 부모와 접촉하고,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 d)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 입양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특례법과 민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입양 시 가정 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였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언급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아동의 입양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 a) 입양에 관한 규제 감독을 명확하게 위임받은 중앙 당국의 부재와 국가 간의 입양 절차에 개입할 당사국의 소관 당국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
 - b) 입양될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의 의견청취 부재
 - c) 십대 비혼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대다수가 입양되고, 십대 비혼모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비혼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위해 아동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점
 - d) 입양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부족, 특히 자신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언어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항 등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
 -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관련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1993)에 가입하지 않은 점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에 언급한 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하는 입양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조항(특히, 협약 제21조와 다음 사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해외 입양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 a) 해외로 입양되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중앙입양정보원(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과 같은 시설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입양 후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헤이그 협약 제6조에 따라 중앙입양정보원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의 지원과 함께 명확한 권한을 규정한다.

- b) 입양 과정에서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한다.
- c) 입양을 보내기 위해 아동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십대 비혼모의 동의를 필수로 하며, 십대 비혼모의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의 강요나 실제적인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된 상황을 제공한다.
- d) 해외 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한다.
- e) 해외 입양과 관련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1993)의 기준을 고려한다.

E.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협약 제6조, 제18조 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1-3항)

• 장애 아동

-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및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소득 가정에만 제공되며 물리적 치료와 직업 훈련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아동, 특히 여성 장애아동이 특수 교육 교사와 감독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장애아동의 대다수가 장애가 없는 아동과 분리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2006년에 채택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 (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a)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 b)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교사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장애아동의 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 감독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 c) 무엇보다도 적절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 d) 가능하면 항상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건강 및 보건 서비스

- 53. 위원회는 당사국의 건강관리 예산 및 건강보험 제공을 위한 특별 예산의 할당이 증가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영유아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공금 연캠페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건강관리 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형의료센터와 비교적 작은 지역병원 간의 소아과 진료 및 응급 진료의 이용성과 품질의 격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 54. 위원회는 건강에 할당되는 재정자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체계를 수립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이전의 권고 사항(CRC/C/15/Add.197, 49 (a)항)을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전국적으로 소아과 진료 및 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 기술 및 인적 자원을 늘리고 이를 중소규모 지역병원에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정신건강

- 55. 위원회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특히 전국적으로 32개의 정신보건 센터를 설립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아동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과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자살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진단 도구의 도입은 인정하지만, 이 진단 도구가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한다.
-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살 행위 특히 소녀들 사이에서의

자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활동, 외래 및 입원 환자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의 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을 공공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가능한 삼갈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자살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이 이 진단 도구가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및 적절하게 진찰 받을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신보건 접근법에 부가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에 대안적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및 가족 요인의 조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다.

• 청소년 건강

57.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텔레비전의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대에 다과류를 생산, 가공,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건강에 해로운 영양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기 비만과 기타 건강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 아동과 십대 청소년의 흡연률 및 음주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과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58. 또한 위원회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십대 청소년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십대 청소년의 임신중절률이 높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 술 및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및 교육 캠페인을 증가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은 이러한 캠페인이 십대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장려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소비 패턴을 습득하는 데 기여하며,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한 마케팅을 규제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의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당사국의 시도를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헌법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6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재정 할당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의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F.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28조, 제29조, 제31조)

• 직업훈련과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 당사국이 아동의 놀이, 오락 및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 시스템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이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에 등록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아동이 심각한 과잉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교육의 비용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사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괴롭힘(왕따)의 심각도와 빈도가 증가하고(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에 대하여) 이러한 괴롭힘(왕따)를 행하는 데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사용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와 협약 제29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현재의 교육 시스템 및 관련 시험제도들을 평가한다.
 - b) 교육과정 외의 사교육에 폭넓게 의존하는 것과 그 결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려는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 c) 협약의 제31조에 따라,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 d)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통합학교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평등을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괴롭힘(왕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괴롭힘(왕따)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나 온라인 가상 만남을 포함한 교실이나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왕따)도 다루어야 한다.

G. 특별 보호 조치

(협약 제22조, 제30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37조 (b)-(d)항, 제32-36조)

• 망명신청자 및 난민 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망명을 요청한 아동에게 시민의 자격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망명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자녀들의 취약한 상황이 그들의 부모가 노동 시장에 접근하기 힘들고 생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과 망명신청자의 자녀의 입학이 부모의 이주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난민이나 망명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65.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과 망명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등록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망명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가족에게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 특히 난민이나 망명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에게 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 망명 및 동반자가 없는 아동이 당사국의 이민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금이 발생할 경우, 구금이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고 송환 명령의 집행이 지연될 때 법적인 시한이 없는 이러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재심을 보장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67.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 망명 또는 동반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본국으로 송환시킬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가능한 최대한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며 시기적절한 정기적 재심과 명확하게 규정된 시한을 따르는 시설에 수용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

68.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채택과 불법 이주민의 아동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부모가 자녀의 초·중등 교육 이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당사국의 법률이 자국민이 아닌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당사국이 불법 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그 협약의 조항을 준수하게 할 것도 권고한다.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의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의 수립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 a) 근로 아동의 수 증가
 - b) 만15세 이상 아동의 야간 근무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례가 흔한 점

- c)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지 않는 등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부족
- d) 부적절한 근로 감독
-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 및 성적인 학대 및 폭력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노동 아동의 문제
- f) 연예인 및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 노동을 야기시키는 근원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b) 최저임금과 야간 근무 금지에 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을 포함하여, 만18세 이하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추가로 제정한다.
- d) 작업 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 감독을 개선한다.
- e) 작업 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제공되게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추적하고 재발을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성적 착취

72. 위원회는 아동의 성착취에 관한 정기적인 자료 수집과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긴급 생활 지원, 법적, 의료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08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대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윈스톱지원 센터의 설립과 아동 성적 착취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 a) 당사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음란물의 높은 소비율
-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성, 소년 그리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희생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의 부족
- d) 이러한 학대 발생 비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및 희생자 지원을 위한 예산 할당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 정서의 제2조와 제3조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b)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동을 제공하거나, 인도하거나, 받아들이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 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인다.
 - c)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고, 그러한 제재가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d)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e)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많은 출신 국가들을 고려하여, 다국어 체제를 포함하여 소녀뿐만 아니라 소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이 성착취와 강제 노동을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당사국을 경유하여, 또는 당사국 내에서 계속해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낮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75. 위원회는 아동매매, 인신매매 및 유괴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을 보완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에서 선택의정서의 제2조와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위법행위가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30항). 또한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의 부재(35항)로 인해 아동에 대한 매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희생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때, 선택의정서의 제3조 1항과 관련된 위반에 관한 치외법권의 재판권을 확립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38항).

7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반복한다.

- a) 국내법이 선택의정서의 제2조와 제3조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b)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선택의정서에서 언급한 위반을 했거나 희생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때 이러한 위반에 대한 치외법권의 재판권이 확립되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한다(CRC/C/OPSC/KOR/CO/1, 39항).

•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만18세 미만자의 강제 징집 또는 적대 행위에의 관여를 범죄화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12항).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적대 행위에 아동을 징집하거나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된 선택의정서 조항의 위반에 대해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한다.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한다(CRC/C/OPAC/KOR/CO/1).
- c) 모든 군대의 규정, 편람, 그리고 그 밖의 군사 지침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정신에 일치되게 한다(CRC/C/OPAC/KOR/CO/1, 13항).

• 소년사법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재범을 포함한 범죄율이 높고 청소년 비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조치가 아동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조치 대신 성인이 수용되어 있는 유치시설에 이러한 아동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근본 원인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처벌조치에 치중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청소년 전담 검사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소년사법을 다루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가 협약 특히,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와 일치하고, 소년사법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의 예방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형사사법제도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비엔나 지침, 그리고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하는 기타 관련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a) 당사국 전역에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전문화된 소년법원을 설립한다.
 - b) 형법을 위반하여 고발된 아동에게 소송절차의 초기 단계와 법적 절차 전체에 걸쳐 적절한 법적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한다.
 -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재활센터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을 절대로 성인범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아동 배려적인 환경에 있게 하며, 정기적으로 가족과 만나게 하고 음식,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게 한다.
 -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e)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다이버전(훈방처리 등),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또는 집행 유예와 같은 자유의 박탈에 대한 대안적인 조치를 증진시킨다.
 - f)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여, 그 구성원들과 유엔 소년사법 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이 개발한 기술지원 수단을 사용하고, 패널의 구성원들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 지원을 구한다.

• 증인과 범죄 피해자의 보호

8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만16세 미만의 피해아동이나 증인이 비디오 녹화를 이용하여 진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상태로 남아 있다.

- a) 공무원이 기록(녹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증인이 증언을 자주 반복해야 한다.
- b) 법원이 비디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c) 피해자와 증인이 충분히 배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신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자와의 조정 요청을 받는다.
- e)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부적절하다.
- f) 의료인과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이 피해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 g) 피해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의료 또는 법 집행 전문가가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83. 위원회는 추가로 아동친화적인 절차상의 규칙을 개발하고 아동 피해자가 사생활 보호 및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존중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이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하여 학대, 가정 폭력, 성 및 경제적 착취, 유괴 및 인신매매 등과 같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이자/또는 증인인 아동에게 협약에서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에 첨부)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H.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보호협약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당사국과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 내에서의 본 협약과 기타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 조치 및 배포

8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재의 권고사항을 정부,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정부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적절하고 충분한 고려 및 실천을 통해 권고사항이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또한 위원회는 협약과 그 이행에 관한 논의와 인식증진을 위해 당사국이 제출한 제3·4차 정기보고서 및 추가답변서와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을 일반대중, 시민사회 조직, 청소년단체, 전문가집단 및 아동이 인터넷이나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언어로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7년 6월 19일까지 제5·6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그 보고서에 현재의 최종견해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2010년 10월 1일에 채택된 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2)을 유념할 것과 차기보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60쪽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사국에게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을 넘어서는 보고서가 제출된다면 당사국은 위에서 언급한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재검토한 뒤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약 본문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objective data that can show the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onitoring mechanism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conditions.

First of all, we modified the indicator system based on the clusters system of UNCRC. Among the 8 clusters, this study defined 5 clusters for 「civil rights and freedoms」,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s the scope of the new indicator system.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by the new indicator system and we suggested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policy.

This study consists of 2 reports: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 and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 : 2011 statistics of the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 youths」. The first report analyzed the indicators and the second report presented result tables of 「The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 youths」(National Statistics, No. 40201).

We articulated policy recommendation on how to implement future monitoring to promot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They are dealing with children's and youth's rights monitoring system, including central government's role of directing and coordinating the policy.

Key Words: indicators for children's and youth's rights,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 youths, children's and youth's rights monitoring system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 교수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 교수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 교수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
김광기 인제대학교 · 교수
김광혁 전주대학교 · 교수
김대유 서문여자중학교 · 교사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 사무국장
김봉채 성균관대학교 · 교수
김승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센터장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 교수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 교수
김인숙 유엔아동권리협약 NPO연대 · 사무국장
김재우 무지개청소년센터 · 팀장

(계속)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 교수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김형욱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김화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류은숙 인권연구소「창」 · 활동가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 교수
신승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전임연구원
양돈규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원장
오선영 세이브더칠드런 · 팀장
이경선 한국생활안전연합 · 국장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이민희 평택대학교 ·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 교수

(계속)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이정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사무관
이중섭 전북발전연구원·부연구위원
이필우 내서여자고등학교·교사
이현수 영동대학교·교수
이호균 굿네이버스·부회장
임영식 중앙대학교·교수
정유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주무관
조아미 명지대학교·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
최신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주무관
최윤진 중앙대학교·교수
허화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주무관
홍경표 한국YMCA전국연맹·국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교수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운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운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소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고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명환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해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재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68-4(93330)

978-89-7816-967-7(세트)